

관공번호	검수 연월일	장 기 종 류	건 수	장 기 사 상	사 건 명	의 뢰 처	도 별	부 품 차	관 공 일	장 기 종 류	과 목	장 기 종 류	비 고
6130	"	1.가.검수용(명세서) 10여 2.검수용 10여	2	1.가. 2.의 "	한양	서대문서	서울	검정용	7. 29	검정용	이동여부, 명세서, 부품	3	
6149	7. 23	1.가.검수용(명세서) 10여 2.검수용 10여	2	1.가. 2.의 "	한양	서대문서	서울	검정용	7. 30	검정용	이동여부, 명세서, 부품	3	
6150	"	1.가.검수용(명세서) 10여 2.검수용 10여	2	1.가. 2.의 "	한양	서대문서	서울	검정용	7. 29	검정용	이동여부, 명세서, 부품	3	
6152	"	1.가.검수용(명세서) 10여 2.검수용 10여	2	1.가. 2.의 "	한양	서대문서	서울	검정용	7. 30	검정용	이동여부, 명세서, 부품	3	
6190	7. 24	1.가.검수용(명세서) 10여 2.검수용 10여	7	1.가. 2.의 "	한양	서대문서	서울	검정용	7. 31	검정용	이동여부, 명세서, 부품	3	
6191	"	1.가.검수용(명세서) 10여 2.검수용 10여	11	1.가. 2.의 "	한양	서대문서	서울	검정용	7. 31	검정용	이동여부, 명세서, 부품	3	
6239	7. 26	1.가.검수용(명세서) 10여 2.검수용 10여	1	1.가. 2.의 "	한양	서대문서	서울	검정용	7. 29	검정용	이동여부, 명세서, 부품	3	
6239	"	1.가.검수용(명세서) 10여 2.검수용 10여	1	1.가. 2.의 "	한양	서대문서	서울	검정용	7. 29	검정용	이동여부, 명세서, 부품	3	
6239	"	1.가.검수용(명세서) 10여 2.검수용 10여	1	1.가. 2.의 "	한양	서대문서	서울	검정용	7. 29	검정용	이동여부, 명세서, 부품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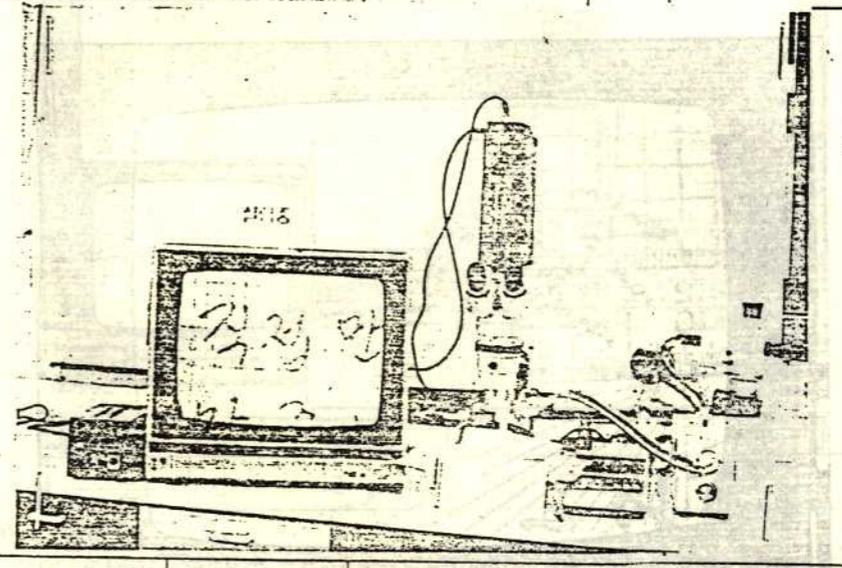
검정 (의뢰 시험) 접수처리부

자료 다-2-44 (공판기록 3249~325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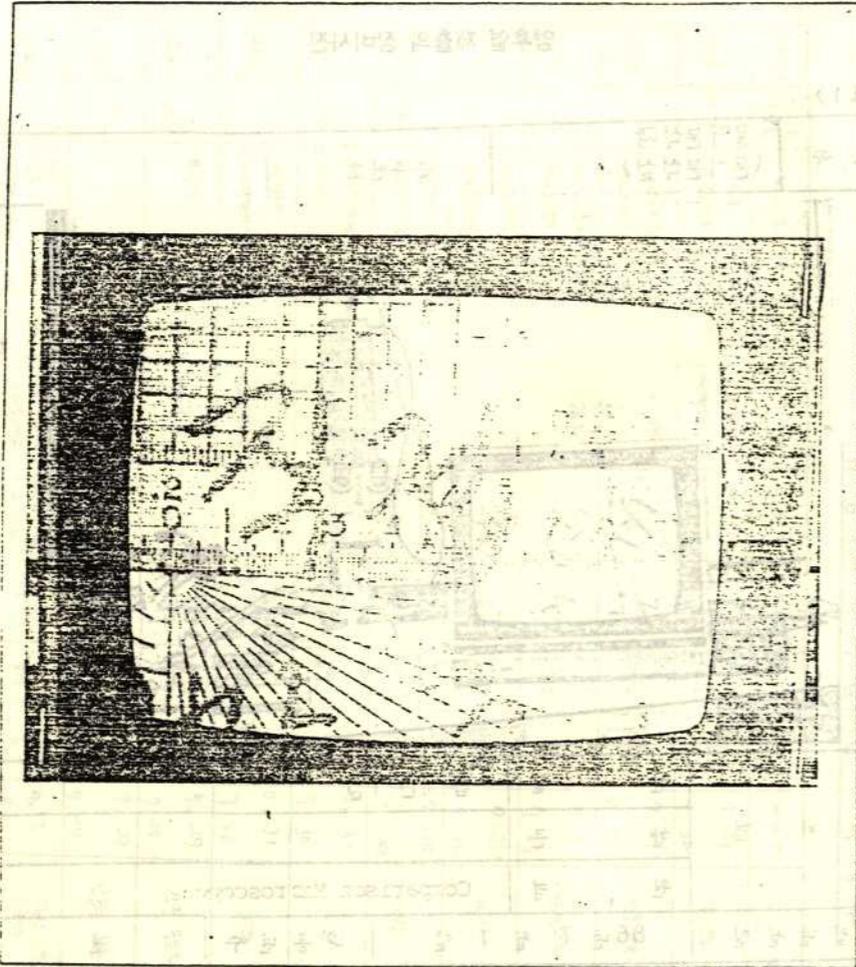
양후열 제출의 장비사진

<필드 1>

소 수	장 기 종 류	관 공 일	장 기 종 류	관 공 일	장 기 종 류	관 공 일	장 기 종 류	관 공 일	비 고
1	1.가.검수용(명세서) 10여 2.검수용 10여	7. 29	3						
2	1.가.검수용(명세서) 10여 2.검수용 10여	7. 30	3						
3	1.가.검수용(명세서) 10여 2.검수용 10여	7. 31	3						



(사진계 호)



필적등을 입체현미경으로 분석하여 모니터에서 나타나는 상태를 촬영한 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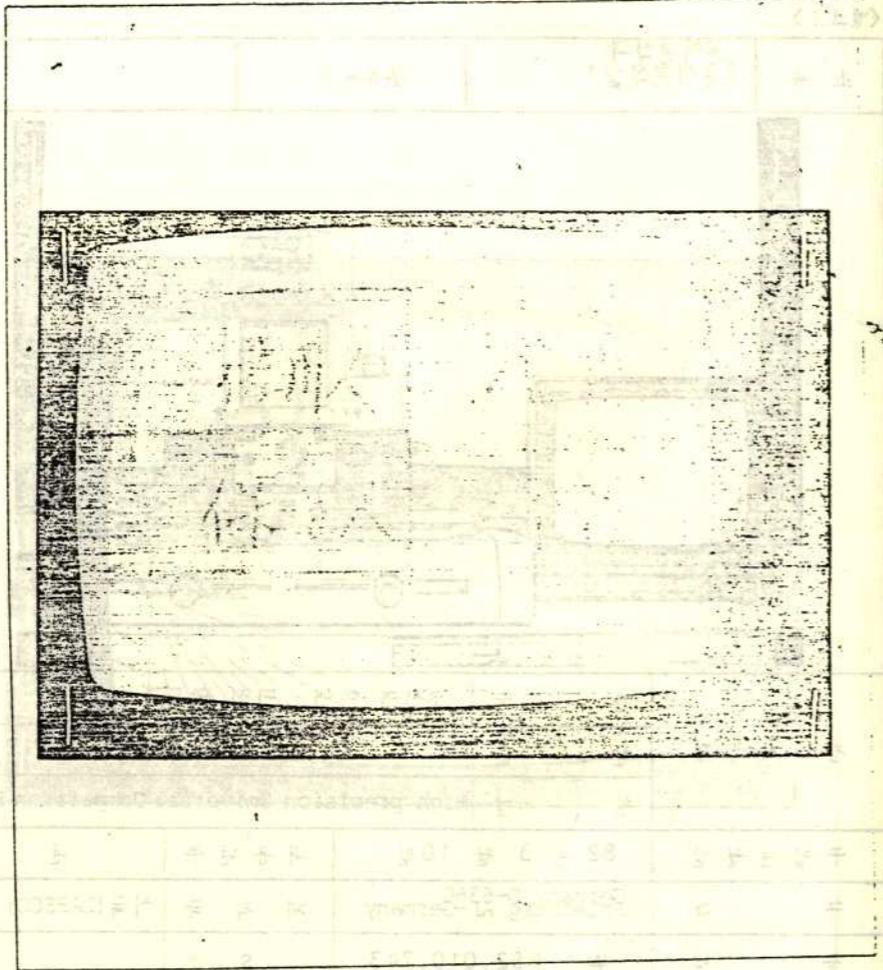
국립과학수사연구소

3315

<별표 i>

소속	물리분석과 (문서분석실)	분류번호	
장비명	한글	고정밀 인영, 필적 판독기	
	한글		
	원형	High precision Universal Comparison Projector	
구입년월일	82년 3월 10일	내용년수	년
규격	Germany D-6360 Friedberg AI Germany	제작국	서독(LFESCO)
금액	₩ 52,010,743	S	
용도	필적, 인영의 특징 비교확대검사 적외선필터를 이용한 필기구색소 분석시험 사진장치		
주요부품			
비고			

(사진계 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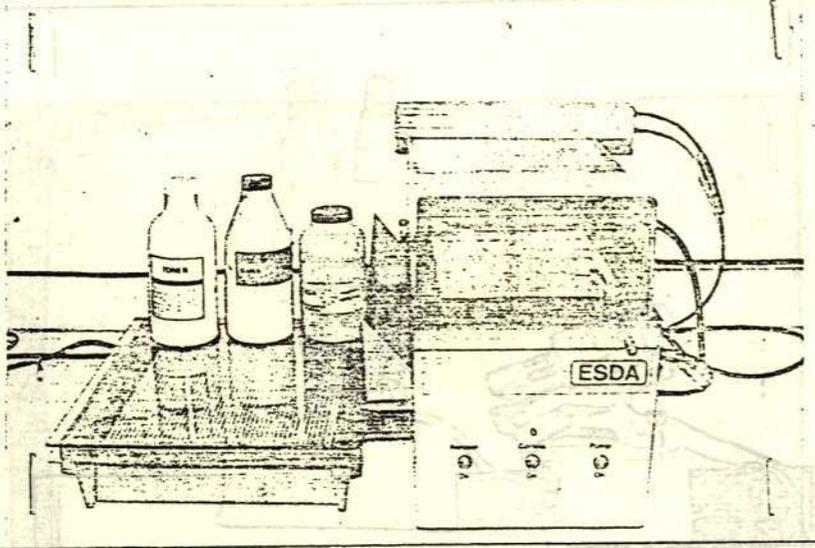
필적등을 모자이크로 인공필적판 제작기로 분석하여 모니터에서 나타나는 상태를 촬영한 사진.

국립과학수사연구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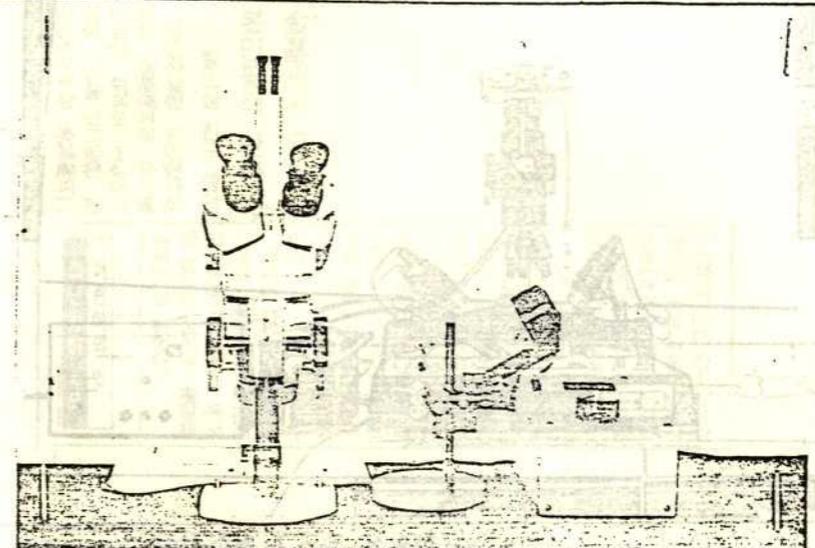
<번호 1>

소 수	(정장필적판) (정장필적판)	식별기
장 비 명	정장필적판 식별기	
	정장필적판	
	정장필적판 Stereo Microscope	
구 입 연월일	83년 7월 26일	의용관수
구 입 조	국, 0# 3311 - 1	제 작 차
대 목	₩ 2,498,936	S
용 비	필적, 인공필적판 검사	
주 요 부 품 명	최소배율 : 10 배 최대배율 : 120 배	
비 보	3.3.27	

<별표 1>

소속	법리분석과 (민사분석실)	기타사항	
			
장비명	한글	필흔검출기	
	한문		
	원명	Electrostatic Detection Apparatus	
구입년월일	83년 2월 19일	납입년수	년
구적	FOSTER & FREEMAN LTD	제작국	영국
금액	₩ 3,049,800	S	
용도	필흔재생 시험		
주요부품명			
비고			

<별표 1>

소속	법리분석과 (민사분석실)	기타사항	
			
장비명	한글	입체현미경 (OLYMPUS)	
	한문		
	원명	Stereoscopic Microscope	
구입년월일	84년 5월 7일	납입년수	년
구적	일제올림пус S1 - 11	제작국	일본
금액	₩ 767,850	S	
용도	필진, 인영의 신품의 입체현미경 검사		
주요부품명			
비고	최소배율: 7x 최대배율: 60x		

☐자료 다-3-1 (공판기록 3258~3259)

서울고등법원 공판 조서	
제 3 회	
사 건 92 노 401 자살방조 등	기 일 1992. 3. 30. 14:00
재판장 판사 임 대 화	장 소 제 309 호 법정
판사 윤 석 중	법정의 공개여부 공 개
판사 부 구 옥	고지된 다음 기일 1992. 4. 2. 14:00
법원 사무관 최 인 기	출 석
피 고 인 강 기 훈	각 출 석
검 사 신상규, 윤석만, 송명석	각 출 석
변호인 변호사 유현석, 김창국, 박연철, 이석태	각 출 석
증 인 안혜정, 양후열, 김형영	각 출 석
재판장 전회 공판심리에 관한 주요 사항의 요지를 공판조서에 의하여 고지.	
소송관계인 변경하거나 이의할 점이 없다고 각 진술	
재판장 출석한 증인들 별지조서와 같이 신문 증거관계 별지와 감음(검사, 피고인 및 변호인)	
재판장 증거조사 결과에 대한 의견 물음.	
피고인 및 변호인 피고인과 관련된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은 허위이며 이와 관련하여 증언한 김형영, 양후열의 증언은 거짓이라고 진술하고 그 외의 증거조사에는 별 의견 없다고 진술.	
재판장 변론 속행	
1992. 3. 30.	
법원 사무관 최 인 기 재판장 판사 임 대 화	

☐자료 다-3-2 (공판기록 3260~3296)

서울고등법원 증인신문조서 (제 3 회 공판조서의 일부)	
사 건 92 노 401 자살방조 등	
증 인 안 혜 정	
생 년 월 일 1965. 8. 15.생	
주민등록번호	
직 업 경찰공무원	
주 거 서울	
재판장은 증인에게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가의 여부를 물어 이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인정하고 위증의 벌을 경고한 후 별지 선서서와 같이 선서를 하게 하였다. 다음에 신문할 증인은 재정하지 아니하였다.	

검사 신상규

증인에게

문 : 증인은 1981년 봄 경기도 파주에 있는 광탄중학교를 졸업했지요.

답 : 예.

문 : 증인은 1991. 5. 8 서강대학교에서 사망한 김기설과 동기동창생이고 중학교에 다닐 때에 약 1시간 가량 버스를 타고 같이 통학했지요.

답 : 예.

문 : 김기설은 1981. 여름 광탄상고를 1학년 중퇴하고 서울로 올라가서 큰누나 집에 살았으며 그 당시 마포에 있는 교회에 다녔지요.

답 : 예.

문 : 증인은 1984 봄 파주여자종합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85에는 대입준비를 하다가 1985. 9. 경찰종합학교를 들어갔지요.

답 : 예.

문 : 한편 김기설은 서울에 올라와 있다가 1984에서 1985 사이에는 서울 서대문에 있는 상록학원에 다

니면서 김정고시 준비를 하였지요.

답 : 예.

문 : 그후 증인이 85. 9부터 86. 2까지 부평에 있는 경찰종합학교에서 교육을 받고 있을 때 김기설이 자주 면회를 오고 또 편지를 보낸 일이 있는가요.

답 : 예, 그렇습니다.

문 : 김기설은 1985. 12 군에 입대하여 1988. 6. 제대하였는데, 증인도 수차 김기설을 면회하러 갔었고 편지 왕래도 있었지요.

답 : 예.

문 : 증인은 위와같이 김기설과 가까운 친구로서 김기설로부터 1985년부터 1988. 사이에 받은 편지는 몇 통이나 되는가요.

답 : 약 10통 넘게 받았을 겁니다.

문 : 증인이 알고 있는 김기설의 성격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한두 가지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답 : 굉장히 착하고 마음이 여립니다.

문 : 증인은 김기설의 어머니가 김기설이 어렸을 때 사망하였고, 그후 김기설이 자신의 생모나 계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별로 듣지 못했지요.

답 : 예, 듣지 못하였습니다.

문 : 김기설은 자신의 계모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어머니'라고 부르지도 않았다는 말이 있는데, 여기에 관하여 이것이 사실인지 아는 것이 있으면 말해 주십시오.

답 : 예, 기설이는 한 번도 자기 어머니에 대해서 '엄마'라는 이야기를 해 본 적이 없었고, 딱 한 번 자기 엄마 산소에 같이 가자는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문 : 그것은 생모의 산소를 뜻하는 것이지요.

답 : 예.

문 : 계모에 대해서는 얘기한 적이 있나요.

답 :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문 : 계모를 엄마 또는 '어머니'라고 호칭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있나요.

답 : 없습니다.

문 : 1985. 11.경 김기설이 군에 입대하기 전에 자신이 가지고 있던 사회과학 서적 등을 여러 친구에게 군에 가면서 분산 보관시켰다는데 증인에게도 책을

말긴 사실이 있나요
 답 : 예, 있습니다.
 문 : 몇권이나 맡겼습니까.
 답 : 제가 확실히 기억하는 것은 2권 뿐입니다.
 문 : 무슨 책입니까.
 답 : '전환시대의 논리'와 '들어라 역사의 외침'입니다.
 문 : 증인 이외에 또 책을 몇 권씩 보관해준 친구가 있습니까.
 답 : 예, 친했던 친구들 여러명에서 서너권씩 맡아 가지고 갔습니다.
 문 : 1982년부터 김기설은 같은 교회에 다니는 임근재라는 사람을 만나 그 영향을 받아 그후 계속해서 운동권에서 일해 왔는데 증인도 임근재에 대해서 알고 있나요
 답 : 예, 조금은 알고 있습니다.
 문 : 평소 김기설은 임근재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했으며 증인은 김기설과 임근재의 사이가 언제부터 어떠한 정도인지 알고 있는대로 이야기해 주십시오
 답 :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제가 경찰학교에 있을 때 기설이가 면회와서 남자친구를 소개시켜 준다면서 항상 '우리 근재형' 하면서 임근재라는 사람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문 : 김기설은 '우리 근재형'이라고 호칭하면서 그의 말이라면 죽는 시늉까지 할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는데, 그런 일이 있었는지 이야기해 주십시오
 답 : 그냥 보통 부를 때면 '근재형' 그랬어도 되는데, 기설이는 항상 '우리 근재형'이라 불렀습니다.
 문 : 근재형이라는 사람으로부터 운동권에 참여하라는 권유를 받았든지 사회과학 서적교육을 받았든지 또는 이러한 일이 있었다는데 대해서 들은 적이 있습니까.
 답 : 그런 이야기는 한 적이 없습니다.
 문 : 증인은 1988. 12. 청주에서 결혼했지요
 답 : 예.
 문 : 그때 김기설은 마포에 있는 인쇄소에 근무한 다면서 증인의 청첩장을 인쇄해 주었다는데 사실인가요
 답 : 예, 있습니다.

문 : 청주에서의 결혼식에 김기설이 왔었는가요
 답 : 오지 않았습니니다.
 문 : 증인의 친구중 한송흙이 진술한 바에 의하면 김기설은 88. 12. 증인이 결혼할 때 청주까지 결혼식 참석차 내려갔었다고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간 적이 없습니까.
 답 : 예, 없습니다.
 문 : 증인은 1990. 9.부터 서울 서부경찰서 수사과에 근무하고 있지요
 답 : 1990. 9.이 아니고 1986. 5. 1.부터 서부서 수사과에 근무하기 시작했습니다.
 문 : 그 후에 다른 곳에 전근갔다 왔지요
 답 : 예.
 문 : 다시 돌아 온 것이 90. 9.인가요
 답 : 예.
 문 : 수사과에 근무하면서 김기설과 통화도 하고 만나기도 했었지요
 답 : 예.
 문 : 증인이 김기설과 마지막 통화를 한 것은 언제인가요
 답 : 91. 4 초입니다.
 문 : 그 당시 김기설이 전화를 하였나요, 아니면 증인이 전화를 하였나요
 답 : 기설이가 했습니다.
 문 : 어디로 했습니다.
 답 : 저의 사무실로 했습니다.
 문 : 사무실이라는 것은 서부경찰서 수사과 사무실을 이야기하는가요
 답 : 예.
 문 : 91. 4 초경 김기설이 증인에게 자기 여자친구가 생겼든지, 결혼할 계획이 생겼다는 이야기를 한 일이 있는가요
 답 : 아니요, 그런 이야기를 듣지 못했습니다.
 문 : 그러면 김기설의 가족이나 친구들로부터 그런 이야기를 들은 일이 있는가요
 답 : 예, 친구한테 들었습니다.
 문 : 어느 친구에게 들었나요
 답 : 같은 중학교 동창인 조원혁에게 들었습니다.
 문 : 김기설이 죽기 전이었나요

답 : 예, 3월 말경 원혁이가 그러더군요, '기설이가 자기 여자친구가 생겼다고 되게 좋아하면서 막 친구들에게 자랑했다'고
 문 : 증인은 김기설의 사망소식을 언제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이야기해 보세요
 답 : 91. 5. 8. 9시뉴스에서 알았습니다.
 문 : 증인은 화면에 방영된 김기설 명의의 유서를 보고 그것이 김기설의 글씨라고 생각하였나요
 답 : 아니요
 문 : 아니라고 생각했나요
 답 : 아니라고 생각 못했고, 그렇다고도 생각 못했고, 유서가 나왔고, 기설이 사진이 나왔고 해가지고 그냥 친구가 죽었다는데 더 정신이 없었습니다. 유서가 기설이 글씨인지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문 : 김기설의 사망소식을 처음 들었을 때 증인은 어떤 생각이 들었나요
 답 : 기설이는 분신할만한 사람이 못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문 : 왜 그런가요
 답 : 평소 기설이와 1-2년 만난 친구도 아니고 약 10여년 정도 알고 있던 친구였기 때문에, 그 자라는 성장과정서부터 생각해 가지고 그런 것을 알았기 때문에 혼자서 분신자살할 만큼 그런 예는 못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문 : 증인은 1991. 5. 9. 아침 출근길에 연세대 영안실에 들러 분향하고 빈소에서 김기설의 아버지를 위로한 사실이 있는가요
 답 : 예, 있습니다.
 문 : 그 자리에서 김기설의 아버지는 증인에게 김기설 명의의 사본을 보여주면서 기설이 글씨가 아닌 것 같다며 증인에게 '이게 기설이 글씨가 맞느냐'고 묻은 사실이 있지요
 답 : 예, 있습니다.
 문 : 그때 증인은 뭐라고 대답을 하였나요
 답 : 아버님은 지금 아들이 죽어 아무 경황이 없는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제가 막말은 못하겠더라고요 '이게 기설이 글씨다, 아니다.'라는 말을 못하고, 아버님에게 '저도 이것 하나 주십시오' 하고 집에 가져

왔습니다.
 문 : 증인은 그곳에서 유서 사본 1매를 가지고 나와 다음날인 5. 10. 저녁 파주에 있는 친정집에 가서 김기설로부터 받은 편지를 찾아내어 유서 사본의 글씨와 대조해본 사실이 있지요
 답 : 예, 있습니다.
 문 : 대조해본 결과, 증인이 가지고 있던 김기설의 편지와 유서의 글씨가 같던가요
 답 : 아니요, 달랐습니다.
 문 : 증인은 유서가 김기설의 글씨가 아니라는 판단을 하고 남편에게 그와 같은 말을 하였으나, 증인의 남편은 일에 나서는 것을 반대하여 처음에는 어떻게 해야 될지 망설이고 있었지요
 답 : 예, 망설였습니다.
 문 : 그러던 중 1991. 5. 19.부터 유서가 대필되었다는 보도를 보고 증인도 가만히 있을 수 없어 1991. 5. 21. 서울지방검찰청에 찾아와 그와 같은 사정을 밝히게 되었지요
 답 : 예.
 문 : 이것이 증인이 검찰에 제출한 것으로서 김기설로부터 받은 편지와 카드이지요
 이때 검사는 증인에게 증제13-1, 2호 카드, 편지³³⁹⁾를 제시하다
 답 : 예.
 문 : 이것을 받은 것이 언제인가요
 답 : 87. 겨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 : 증인은 1991. 5. 21. 위와 같은 사실을 검찰청에 찾아와 알려주고 나서 증인은 결혼한 여자이고 경찰공무원의 신분이기 때문에 되도록 증인이 나서는 것보다 김기설과 친구인 증인의 광탄중학교 동창생들에게 연락하여 증인의 생각을 말하고 다른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편지나 글씨를 제출했으면 하고 연락했으나 수집이 안돼 1991. 5. 23. 위 카드, 편지를 정식으로 검찰에 제출하게 되었지요
 답 : 예.
 문 : 5. 21.과 5. 22. 증인이 연락한 친구중 한송흙, 조원혁, 정은경 등은 모두 편지나 글씨가 남아 있는 것이 없다고 하였지요

339) 총자료집 I 책 229쪽 참조.

답 : 예, 없다고 했습니다.

문 : 그때 5. 21.경과 5. 22경 한송흙은 친구가 죽어서 김기설의 편지 등을 모두 태워버렸으며 김기설 명의의 유서가 김기설의 글씨인지에 대해서는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모르겠다'고 대답했었지요

답 : 예, 송흙이가 잘 모르겠다고 그랬어요

문 : 또 친구중 조원혁과 정은경에게도 그 당시 유서필적이 김기설의 글씨인지에 대하여 물었을 때 조원혁은 모르겠다고 했지요

답 : 예,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문 : 정은경은 어떠했나요

답 : 은경이도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문 : 정은경은 모르겠다고 하면서도 아닌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하는데 그런가요

답 : 예, 은경이는 저와 같이 정자체 글씨 쓴 것만 보았지 흘림체 글씨는 못본 것 같다고 했습니다.

문 : 한송흙이 김기설 명의의 유서에 대하여 '한 눈에 알아봤다' 든지 '김기설의 글씨가 틀림없다' 든지 '기설의 편지는 군대에 있을 때 받으면 2-3일 내에 모두 없애버렸다' 라고 말하는 것은 그 당시 증인이 한송흙에게 들은 내용과는 다른 것이지요

답 : 예,

문 : 거기에 보면 증인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고 그 옆에 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으며, 또 전화번호 위에 서부서 정보과라는 기재가 있는데, 증인의 소속과 전화번호가 맞는가요

답 : 아닙니다, 틀립니다.

문 : 어떻게 틀린가요

답 : 저는 정보과에 한번도 근무한 적이 없고, 서부서 수사계에만 지금까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전화번호는 1986. 5. 1. 발령받을 때부터 아직까지 386-3766이었지 2776은 아니었습니다.

문 : 386-2776이 다른 과 또는 다른 계의 전화번호는 아닌가요

답 : 아닙니다, 처음보는 전화번호입니다.

문 : 증인이 서울 서부서에 근무하면서 김기설에게 소속과 전화번호를 알려준 것이 언제인가요

답 : 86. 발령받으면서 바로 알려주었습니다. 아마

5 초였을 것입니다

문 : 그후에 전근을 갔다가 90에 다시 서부서로 돌아왔지요

답 : 예,

문 : 그때도 다시 알려주었나요

답 : 아니요, 알려줄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 전화번호를 계속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문 : 계속 사용했다는 것은 증인이 그 전화번호의 사무실에서 계속 근무하며 사용했다는 이야기인지 아니면 증인과 김기설 특히 김기설이 그 번호로 증인에게 전화를 했었다는 이야기인가요

답 : 김기설이 으로 계속 전화를 했었습니다.

문 : 그렇다면 90. 9.에 다시 알려줄 필요는 없었던 얘기군요

답 : 예,

문 : 그러면 그 수첩에 있는 전화번호가 아니고 증인이 알려주었다는 1 번호로 증인이 마지막으로 전화를 받았다는 1991. 4 초순에 김기설이 증인에게 전화하였나요

답 : 예, 으로 전화했습니다.

문 : 그때 증인이 김기설에게 전화한 것이 아니고 김기설이 증인에게 사무실로 전화한 것이 틀림없는가요

답 : 예, 경북구역이라고 하면서 전화했습니다.

문 : 평소에 두 사람이 통화할 때는 김기설이 증인에게 위 사무실 번호로 전화를 하는가요, 아니면 증인이 김기설의 집이나 사무실로 전화를 하는가요

답 : 기설이가 저에게 합니다. 기설이는 주거가 일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의 전화번호 같은 것을 알려주지 않고, '여기 성남이다', '여기 동대문이다' 라는 식으로밖에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문 : 주거가 일정하지 않았고, 김기설이 증인에게 사무실로 전화를 하는 것이 늘 있었던 일이라는 말인가요

답 : 예,

문 : 그렇다면 지금 보고 있는, 증인이 알려준 전화번호와 다른 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그 수첩은 김기설의 수첩이 아닐 가능성이 있네요

답 : 예, 이 전화번호호로는 한번도 통화해 본 적이 없습니다.

문 : 이 유서의 글씨가 평소 증인이 알고 있는 김기설의 글씨인가요, 아니면 증인이 알고 있는 김기설의 글씨와는 다른가요

답 : 아니요, 알려줄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 전화번호를 계속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문 : 계속 사용했다는 것은 증인이 그 전화번호의 사무실에서 계속 근무하며 사용했다는 이야기인지 아니면 증인과 김기설 특히 김기설이 그 번호로 증인에게 전화를 했었다는 이야기인가요

답 : 김기설이 으로 계속 전화를 했었습니다.

문 : 그렇다면 90. 9.에 다시 알려줄 필요는 없었던 얘기군요

답 : 예,

문 : 그러면 그 수첩에 있는 전화번호가 아니고 증인이 알려주었다는 1 번호로 증인이 마지막으로 전화를 받았다는 1991. 4 초순에 김기설이 증인에게 전화하였나요

답 : 예, 으로 전화했습니다.

문 : 그때 증인이 김기설에게 전화한 것이 아니고 김기설이 증인에게 사무실로 전화한 것이 틀림없는가요

답 : 예, 경북구역이라고 하면서 전화했습니다.

문 : 평소에 두 사람이 통화할 때는 김기설이 증인에게 위 사무실 번호로 전화를 하는가요, 아니면 증인이 김기설의 집이나 사무실로 전화를 하는가요

답 : 기설이가 저에게 합니다. 기설이는 주거가 일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의 전화번호 같은 것을 알려주지 않고, '여기 성남이다', '여기 동대문이다' 라는 식으로밖에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문 : 주거가 일정하지 않았고, 김기설이 증인에게 사무실로 전화를 하는 것이 늘 있었던 일이라는 말인가요

답 : 예,

문 : 그렇다면 지금 보고 있는, 증인이 알려준 전화번호와 다른 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그 수첩은 김기설의 수첩이 아닐 가능성이 있네요

이야기를 들은 것 같습니다.

문 : 파주의 같은 고향에 살 때는 무엇을 하셨나요
답 : 아버지는 농사졌던 분이고, 서울에 이사와서는 노동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변호인 박연철

증인에게

문 : 증인과 김기설, 한송흙 등은 모두 경기도 파주군 소재 광탄중학교 동기동창생이지요

답 : 예,

문 : 증인과 김기설, 한송흙 등은 어느 정도로 친근하게 지내던 친구들인지 가능하면 상세히 말해줄 수 있는가요

답 : 송흙이네 집에서 같이 모여 점심 저녁 해먹으면서 놀고하던 그런 사이입니다.

재판장

증인에게

문 : 언제적 이야기인가요, 학교 다닐 때 그랬다는 것인가요

답 : 아닙니다. 84부터 일입니다.

문 : 증인이 결혼하기 전까지인가요

답 : 예, 고등학교를 졸업한 이후에도, 84년부터 결혼하기 전까지입니다.

변호인 박연철

증인에게

문 : 증인이 겪고 알고 있는 바 한송흙은 어떤 사람인가요

답 : 굉장히 착하고 자기주장을 솔직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문 : 김기설보다는 좀더 외향적인 사람인가요

답 : 아니요, 둘다 비슷했어요, 정에 약하고,

문 : 성실하고 정직하며, 마음은 따뜻한 편에 속하는가요

답 : 예,

문 : 증인은 경찰종합행정학교를 진학하였고, 다른 친구들도 학교에 진학하였으며, 김기설만 혼자 낙오되어 대학을 못한 입장인데, 청년시절의 김기설을 볼 때

김기설은 어떤 사람이었는지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줄 수 있는가요

답 : 기설이는 착해가지고, 제가 경찰종합학교에 있을 때 많게는 일주일에 3번 정도 적게는 일주일에 한번 정도는 꼭 왔었습니다.

문 : 증인에게 굉장히 친밀감을 표시하는 동창이었군요

답 : 예.

문 : 증인은 중학교를 졸업한 이후, 각각 다른 고등학교를 졸업한 이후에도 대단히 자주 대화를 나누는 사이였나요

답 : 예, 그런 편이었습니다.

문 : 김기설은 증인이 결혼한 이후에도 증인을 찾아와서 만난 일이 있었나요

답 : 예.

문 : 그 빈도는 어느 정도 되는가요

답 : 기설이가 좀 바빠졌는지 전화만 오고 많이는 못 만났습니다. 그냥 '잘있다. 걱정하지 마라'면서 '너도 결혼생활 잘하지' 그런 식으로 안부를 전하면서 한달에 두 세번 정도 왔습니다.

문 : 직접 볼 수 있는 기회는 어떻게 되는가요, 많지는 않지요

답 : 마지막으로 본 것이 88. 여름에 사무실로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문 : 증인은 88. 12. 25 크리스마스날에 결혼했다고 했지요

답 : 예.

문 : 한송흙은 지난번에 증인으로 나와, 자기는 결혼식에 가지 못했는데 김기설은 증인의 결혼식에 갔었다고 하였는데, 증인은 아니라고 알고 있는가요

답 : 예, 12. 19. 제가 얻어놓은 전세방에서 만났고,

문 : 결혼식 당일에는 김기설은 참석하지 못했나요

답 : 예, 안 왔습니다.

문 : 그러면 결혼식 이전에 증인이 집을 마련할 때에는 같이 왔었나요

답 : 예, 12. 19. 저의 살림집을 얻을 때 집에 왔었습니다.

문 : 그러면 한송흙은 그것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지도 모르겠군요, 증인이 결혼할 때 청주까지 내

려갔던 사실을 오히려 기억하고 있는지 모르겠군요

답 : ...

문 : 결혼식 당일에 누구누구 왔는지 기억하는가요

답 : 예.

문 : 증인이 김기설을 최후로 만났던 것이 88. 여름이라고 했지요

답 : 예.

문 : 서부경찰서 어디로 찾아온 것이지요

답 : 서부경찰서 정문으로 왔었습니다.

문 : 김기설의 가장 친한 남자친구는 누구인가요

답 : 송흙이, 원혁이, 대만이, 길성이, 그런 사람들입니다.

문 : 그중에서도 송흙씨와 친한 편인가요

답 : 예, 많이 친했습니다.

문 : 증인은 김기설의 필적을 어떤 경로로 얼마나 자주 대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군대시절에 10통이 넘게 받은 일이 있다고 했는데, 그 이전이나 그 이후에는 어떠했나요

답 : 그 이후에 받은 것이 88. 제 결혼식할 때 청철장 해주면서 결혼해서 잘 살라고 하면서 편지 써준 것이 마지막이었습니다.

문 : 증인이 검찰에 제출한 김기설의 편지, 카드는 아까 87. 11.경이라고 했었나요

답 : 11.에서 12.경일 것입니다.

문 : 카드와 편지가 거의 동시적으로 왔었던 것인가요

답 : 아니요, 편지가 좀 먼저 왔습니다.

문 : 이 편지의 내용을 보니까, 김기설이 그 당시 증인에게 편지를 쓰는 것을 자주 미루다가 대단히 오랫동안 쓴 편지로 보이는데 맞는가요

답 : 예.

문 : 그러면 얼마만에 보냈던 편지였나요

답 : 그해 봄에 보내고 그때 보낸 것일 겁니다.

문 : 그 동안에 공백이 있었군요

답 : 그때는 다 전화통화했었습니다. 기설이가 군목이라 자주 나왔거든요.

문 : 군중사병이라서요

답 : 예, 그래가지고 항상 전화로 많이 왔었습니다.

문 : '여기 포천 어디인데' 하면서 '그냥 심심해서 전화했

어, 잘 있었니' 하면서, 그런 식으로 전화를 자주 했습니다.

문 : 군대 시절에 이것이 최후의 편지였나요, 아니면 그 이후에도 또 왔었나요

답 : 더 왔었을 겁니다.

문 : 증인이 편지를 계속 보관해온 이유를 말해줄 수 있는가요

답 : 그것은 우연이었어요. 여자가 결혼할 때는 다 정리한다고 해가지고, 저도 남자들의 편지를 다 태웠고 여자친구 편지들만 남겼는데, 그 속에 편지 2개가 끼워 있었던 것입니다.

문 : 우연히 남아 있었던 것이라는 얘기인가요

답 : 예.

문 : 김기설은 전역한 이후에는 증인에게 편지를 보낸 일이 없었나요

답 : 결혼할 때 써준 외에는 없었습니다.

문 : 증인은 김기설이 근무하던 성남 민청련, 전민련 사무실을 직접 방문해본 일이 있는가요

답 : 없습니다.

문 : 한 번도 없지요

답 : 예.

문 : 증인은 김기설의 분신을 91. 5. 8 티브이 뉴스에서 본 것이인가요

답 : 예.

문 : 사무실에서 보셨겠군요

답 : 아니요, 티브이 뉴스에서 봤습니다. 동생이 전화를 해서 기설이오빠...

문 : 그러니까 사무실 티브이에서요

답 : 아니요, 저녁 9시 뉴스였어요. 집에서 봤어요

문 : 그러니까 5. 8. 오전 9시가 아니라 저녁 9시예요

답 : 예, 21:00예요.

문 : 그래서 그날 가지 못하고 다음날 새벽같이 연대 세브란스 병원에 갔었군요

답 : 밤에는 그걸 확인하느라고 친구들에게 다 전화를 했었는데, 전화통화가 된 친구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문 : 어느어느 친구들에게 전화를 했었나요

답 : 원혁이, 송흙이, 그리고 중학교 동창애들에게

해보니 다 집에 없었습니다.

문 : 그 시간에 다들 영안실에 가 있다고 그러지 않던가요

답 : 예.

문 : 증인이 김기설의 유서글씨를 처음 본 것은 언제였나요

답 : 영안실에서였습니다.

문 : 티브이에서는 보지를 못하였나요

답 : 아니요, 티브이에서도 봤어요

문 : 티브이에서 스쳐가는 영상을 보았고, 영안실에서도 사본을 보았나요

답 : 예.

문 : 증인은 어떤 동창친구들을 만났나요

답 : 하나도 못 만났습니다.

문 : 너무 일러서 그런가요

답 : 예, 제가 6시 반쯤에 갔거든요.

문 : 증인은 동창친구들과 유서글씨가 김기설이 정말로 쓴 것이냐에 대하여 의견을 표시하고 의견을 나누어본 일이 있었나요

답 : 예.

문 : 증인은 한송흙과도 유서글씨에 대하여 의견을 물어본 일이 있지요

답 : 예.

문 : 최초로 물어본 곳은 언제였나요

답 : 21. 제가 검찰청에 왔다가고 나서 물어보았습니다.

문 : 5. 21. 그전에는 안 물어보았나요

답 : 예.

문 : 그전에는 왜 안 물어보았나요

답 : 연락이 안 됐었습니다. 전화를 계속해도 연락이 안 됐어요.

문 : 한송흙이 '친구가 죽어서 김기설의 편지들을 모두 태워버렸다' 라고 대답하였다고 했지요

답 : 예.

문 : 정확하게 대답해주세요. 편지를 태운 이유가 '친구가 죽어서' 편지를 태웠다고 그랬나요

답 : 그냥 태워버렸다고 그랬지 '친구가 죽어서' 그런 소리는...

문 : '친구가 죽어서' 라는 얘기는 안 한것 같지요

답 : '친구가 죽어서' 라는 얘기는 안 한것 같지요.

답 : 태워버렸다고 그랬어요.
 문 : 그러면 그 편지들을 언제 태워버렸는지, 왜 태워버렸는지에 대해서는 이유를 얘기했었나요?
 답 : 안했습니다.
 문 : 동창친구라면 친구가 죽었을 경우에 편지가 남아 있으면 그것을 보관하는 것이 맞지, 친구가 죽었다고 편지를 태우는 일은 없는 것이지요?
 답 :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문 : 증인이 한송흠에게 전화를 했을 때, 한송흠이 김기설 명의의 유서가 '김기설의 글씨인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하였나요, '김기설의 글씨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고요.
 답 : 통화했던 친구들이 모두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문 : 증인은 동창들에게 김기설의 필적이 있으면 한테 모아보라고 연락을 했다고 했지요?
 답 : 예.
 문 : 그 시기는 언제였나요?
 답 : 5. 21. 이후였습니다.
 문 : 그런데 모아진 필적이 없었다고 그랬습니까?
 답 : 예, 친구들이 다 없다고 그랬습니다.
 문 : 없는 이유는 어떤 것이었나요?
 답 : 송흠이는 태워버렸다고 했고, 원혁이는 서울로 이사하면서 다 정리했으므로 없다고 했고, 은경이라는 친구는 어디다 두었는지 모르겠고 '어느 책에다 끼워 놓았는데 못 찾겠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문 : 증인이 검찰에 이 사건 편지, 카드를 제출한 것은 김기설의 유서가 다른 사람에 의하여 씌여졌다고 생각하여 증인이 자발적으로 한 것인가요, 검찰의 요청과 연락을 받고 묵은 짐을 풀어 찾아본 것인가요?
 답 : 제가 자발적으로 했습니다.
 문 : 자발적으로 했는데, 아까 친정에 가서 찾아본 게 5. 10.이라고 했지요?
 답 : 예.
 문 : 그러면 5. 10.에서 5. 21. 사이에는 열하루가 있었는데, 그때까지 못 거른 것은 남편이 개입하지 말라고 그래서인가요?
 답 : 또 대필문제를 가지고 제가 신문에서 보고 그런 게 15. 후였을 거예요, 저도 기설이 글씨가 아닌

것 같아서 그 편지를 본 거였고, 그리고나서 이런 말에 대해서 없었기 때문에 그냥 있었습니다.
 문 : 증인은 검찰에 다녀온 후에야 비로소 한송흠과 유서에 관한 의견을 교환했다고 했지요?
 답 : 예.
 문 : 증인이 그렇게 의견 교환을 해 본 것은 검찰에서 유서가 대필되었다고 강한 확신을 표시하니 그때서야 비로소 의심을 해서 그런 것 아닌가요?
 답 : 아니요, 마스크에서...
 문 : 마스크에서, 5. 18.이후에 마스크에서 하는...
 답 : 예, 제 친구의 일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서...
 문 : 예, 좋습니다. 증인은 김기설의 유서에 씌여진 글씨가 증인이 받아본 글씨와 다르다고 생각된다고 했는데, '김기설의 글씨는 절대로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가요?
 답 : 아니요, 그런 글씨는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문 : 증인은 김기설의 이런 글씨를 볼 수 없었다는 것이지, 과연 김기설이 이런 글씨를 절대로 쓰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은 아니지요?
 답 : 본 적이 없습니다.
 문 : 증인은 한송흠의 인격으로 보아서 이 사건 유서가 김기설의 글씨가 아닌 데도, 그러니까 김기설의 글씨가 아니라고 마음속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데도 김기설의 글씨라고 거짓 진술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지요?
 답 : 예, 송흠이의 인격으로 봐서 그런 생각을 안하고 있습니다.
 문 : 증인은 검찰로부터 증인으로 출석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한송흠에게 전화한 사실이 있지요?
 답 : 예, 있습니다.
 문 : 증인은 한송흠에게 검찰의 요청을 받은 사실을 말했다고, 한송흠이 증언하지 않으면 증인도 만나갈 수 있을 것이지만, 한송흠이 증언하게 되면 증인은 증언을 거부할 수 없게 될 것이라는 말을 하였는데, 맞는가요?
 답 : 예, 송흠이의 반대증인이 저였기 때문에...
 문 : 그러니까 변호인측 신청증인이 있으면 검찰측 신청증인이 있어야 된다는 말인가요?

답 : 예, 검사님이 그러셨거든요, 송흠이의 반대증인이 저라고요.
 문 : 한송흠은 그가 이 사건 유서가 김기설의 글씨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오히려 증인보다도 다른 누구보다도 적극적으로 이 유서는 대필되었다고 주장할 그런 사람이지요?
 답 : 예, 송흠이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문 : 김기설이 자신의 계모를 어머니라고 부르지도 않았다고 했는데, 이것은 조금 뉘앙스가 있는 얘기인데, 어머니라고 부르지도 않았다면, 김기설이 자신의 계모를 달리 비하하거나 또는 혐오해서 어떤 이름을 부른 적이 있었나요?
 답 : 아니요, 한번도 엄마 이야기를 해 본 적이 없습니다.
 문 : 증인과 자기엄마의 산소에 가보라고 했지요?
 답 : 예.
 문 : 엄마의 산소가 어디 있는지 아는지요?
 답 : 아니요, 멀리 있다는 것은 이야기했어요.
 변호인 이석태
 증인에게
 문 : 증인은 과거에 김기설의 수첩을 본 일이 없지요?
 답 : 예, 이런 수첩을 본 적이 없습니다.
 문 : 그러니까 혹시 전화번호 기재내용이 있다면 그것이 1년전에 적은 것인지 또는 분신직전에 적은 것인지 이런 것 증인은 잘 모르지요?
 답 : 예, 모릅니다.
 재판장
 증인에게
 문 : 증인은 아까 85. 9.에 경찰종합학교에 들어갔다고 했는데 그때부터 현재까지 경찰관으로 복무하고 있는 것인가요?
 답 : 예.
 문 : 종합학교를 졸업하면 무엇으로 임관되는가요?
 답 : 순경으로 임관됩니다.
 문 : 그때부터 어디어디 근무했나요?
 답 : 서부경찰서 수사계, 그 다음에 인천 동부경찰

서 대공1계, 그 다음에 서부경찰서 수사계, 그 다음에 여자형사기동대, 지금은 은평경찰서 수사계에 근무합니다.
 문 : 전화번호가 다르다는 것은 경찰서내에 그 전화번호가 없다는 이야기인가요?
 답 : 예, 제가 알고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도 그런 전화번호를 본 적이 없거든요.
 문 : 보통 어떤 기관에 전화할 때 잘 모르면 대표 전화를 해가지고 어느 계나 과를 바꾸어 달라고 통화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온 것은 아닌가요?
 답 : 저희는 대표전화기 없어 서부서 수사과하면 저희 '386-3766'이 대표전화였습니다.
 문 : 그 전화로 온 것이 틀림없다는 것인가요?
 답 : 예, 저희는 교환을 안 거처거든요.
 문 : 편지를 10여차례 이상 받았다고 했는데, 그 외에 다른 필적을 본 일이 있는가요?
 답 : 없습니다.
 문 : 광탄상고 1년을 중퇴하고 서울로 올라온 것은 안다고 했는데, 그후에 고등학교를 졸업했는지 어떤지를 아는지요?
 답 : 검정고시를 본다고 상록학원에 다닌다는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문 : 그후에 졸업했는지 어떤지는 모르나요?
 답 : 예.
 문 : 중학교 다닐 때에 김기설의 아버지를 만나거나 계모를 본 일이 있는가요?
 답 : 계모는 본 일이 없고, 시골 집은 갔었습니다.
 문 : 집에는 놀러갔는데, 아버지는...
 답 : 안 계셨습니다. 그런데 오다가다 하면서 기설이가 '우리 아버지야' 하면서 인사시키고 했기 때문에 아버님은 압니다.
 문 : 어디서 만났는가요?
 답 : 그냥 기설이하고 지나가다보면, 광탄시내라든지.
 문 : 학교 다닐 때 이야기인가요?
 답 : 아니요, 중학교 다닐 때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문 : 그러니까 언제 어디에서인가요?
 답 : 기설이가 서울로 올라온 후로 오다가다 길에

서 만나가지고 기설이의 소개로 만난 적이 있습니다.

문 : 증인과 김기설 사이에 편지도 받고 종합학교에 면회오고 한 것이 단순히 동창으로서 한 것인가요, 연정도 느낀 것인가요

답 : 그냥 동창이고, 제가 기설이에게 여자친구를 소개시켜 주었거든요. 저한테 여자친구를 더 소개받으려고 많이 면회를 왔었고, 또 자기가 군대가면은 '내가 면회는 것만큼 너도 면회와 주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문 : 둘 사이에 직접적인 어떤 연정관계가 개입될 여지는 없었다는 얘기인가요

답 : 예, 전혀 없었습니다.

문 : 아까 남편에게 이야기했다고 했는데, 잘못하면 남편이 오해할지도 모르지 않는가요

답 : 아니에요, 기설이가 청첩장 줄 때 남편과 같이 앉아서 밤 늦게까지 술 마시고 그랬습니다. 남편도 기설이라는 친구를 알았고, 제 친구들을 다 알고 있습니다.

문 : 그것은 스스로 없이 남편에게 상의한 것이라는 취지인가요

답 : 예.

검사 신상규

증인에게 문 : 먼저 김기설이 청주 결혼식에 온 적이 없다고 답변했고, 변호인 반대신문때는 결혼식에 온 것이 아니고 결혼식 전에 집에 온 적이 있었다고 했지요

답 : 예, 청첩장 즐러고

문 : 그때 왔다는 집이 아까 마치 청주에 차려놓은 살림집으로 왔다는 것 같이 들렸는데, 청주인가요, 아니면 결혼식전에 서울에 있던 곳인가요

답 : 서울도 아니고 청주도 아니고 경기도 고양군 고양리였습니다.

문 : 결혼식은 물론이고, 결혼식전에도 청첩을 주러 갔다는 곳이 청주는 아니지요

답 : 예, 고양리였습니다.

문 : 결혼식이나 그전에 청주에 온 것은 아니지요

답 : 예.

문 : 증인이 유서의 사본을 보고 그후에 파주에 있는 친정에 가서 편지 글씨를 찾아냈고, 또 남편이 만

류해서 망설이고 있다가 5. 18, 5. 19에 신문에 유서가 대필되었다는 보도가 되니까 5. 21에 이것을 검찰에 제출하게 되었는데, 결국 증인은 이 유서가 증인이 알고 있는 김기설의 글씨가 아니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파주에 가서 확인해 보았고, 또 검찰에 제출하게 된 것이지요

답 : 예.

문 : 증인이 5. 21에 '유서의 글씨가 내가 알고 있는 기설이의 글씨가 아니다' 라고 하면서 한송흠에게 글씨가 있느냐고 물었을 때 한송흠이 '친구가 이미 죽었는데, 이 일에 휘말리지 말고, 맞다 틀리다하고 싶지 않다' 이런 통화를 했었다는데, 그것이 사실이면 그 대화내용을 정확하게 얘기해주세요

답 : 송흠이가 친구만 죽었는데 남아 있는 친구들이 그러니까 죽은 친구들이 그런다고 살아나지 않으니 자기는 끼고 싶지 않다고 그러면서 '편지는 데워버렸다'고 그랬고요, 글씨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문 : 친구들이 월가알부해서 살아나는 것도 아니고 끼고 싶지 않다. 결국 회피했다는 이야기지요

답 : 예.

문 : 이번 증언 때도 안나가려고 하다가 자꾸 요청을 받아서 할 수 없이 나왔다는 말이 있던데, 그렇습니까

답 : 나가고 싶지 않다고 그랬습니다.

문 : 요약하면 5. 21에 김기설의 글씨를 찾으려고 한송흠에게 전화했을 때 친구가 다시 살아나는 것도 아니고 이 일에 끼고 싶지 않다는 취지의 얘기를 들었다는 것이지요

답 : 예.

재판장

증인에게

문 : 12. 19. 집을 얻었을 때는 왔었다고 이야기 했는데, 청주가 아니라면 어디로 왔다는 것인가요

답 : 제가 맨 처음 살림집을 차린 것도 경기도 고양군 고양리였고...

문 : 그러면 먼저 그곳에 살림집을 마련해놓고 청주에서 결혼식을 올렸다는 이야기인가요

답 : 예.

문 : 김기설이 12. 19. 고양리에 집 얻으러 왔었고 결혼식이나 언제 청주에는 온 일이 없고, 증인 부부는 결혼한 후에 고양리에서 살았다는 이야기인가요

답 : 예.

문 : 한송흠과 전화를 할 때 어느 전화로 한 것인가요

답 : 저의 집에서 한송흠의 파주 집으로 전화했습니다.

문 : 그 전화번호를 위우고 있는가요

답 : 지역번호 길 것입니다.

1992. 3. 30.

법원 사무관 최 인 기

재판장 판사 임 대 화

* 증인선서서 <생략> (공판기록 3297)

자료 다-3-3 (공판기록 3298~3344)

서울고등법원
증인신문조서
(제3회 공판조서의 일부)

사 건 92 노 401 자살방조 등
증 인 양 후 열 (梁 鏞 烈)
생 년 월 일 1952. 2. 27. 생
주민등록번호
직 업 공 무 원
주 기

재판장은
증인에게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가의 여부를 물어 이에 해당하지 아니
함을 인정하고 위증의 벌을 경고한 후 별지 선
서서와 같이 선서를 하게 하였다.
다음에 신문할 증인은 제정하지 아니하였다.

검사 윤석만

증인에게

문 : 증인은 1977. 6.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문서감
정요원으로 공채되었다가 1979. 5. 문서감정실의 감정
인으로 정식임용되어 현재 문서분석실장 직무대리로
근무하고 있지요

답 : 예.

문 : 문서분석실에는 4명의 감정인이 근무하고, 감
정을 의뢰받으면 지정된 담당자가 감정하되 감정인
전원이 그 내용을 공동으로 심의한 후 그 결과를 지
정된 담당자 명의로 최종 감정결과로 통보하지요

답 : 예, 맞습니다.

문 :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소위 김기설 명의의
유서와 관련하여 서울지방검찰청 검사의 의뢰를 받고
필적감정 및 수첩의 성상에 관한 감정 등 문서감정을
한후 회보한 사실이 있지요

답 : 예, 있습니다.

문 : 당시 증인도 위 감정서와 관련하여 공동심의
한 사실이 있는가요

답 : 예, 있습니다.

문 : 공동심의를 한 후에는 참가자 전원이 문서분
석실에 보관하는 감정회보서의 부분에 '공동심의필'
이라는 고무인을 찍고 각자 서명날인을 하지요

답 : 예, 맞습니다.

문 : 공동으로 심의를 하는 이유는 감정을 합리적
으로 객관성 있게 하기 위한 것으로 공동심의 참석자
는 지정된 담당자가 감정한 결과가 과학적으로 보편
타당성 있게 감정한 것인가를 각 감정인의 전문지식
과 경험에 비추어 함께 검토하는 것이지요

답 : 예, 맞습니다.

문 : 공동심의를 하는 경우, 어느 부분에 관하여 1
명이라도 이의를 제기하면 심의 참석자 전원이 각자
재검토를 실시했고, 재차 이의가 제기되면 감정불능으
로 회보를 하게 되지요

답 : 예, 맞습니다.

문 : 공동심의를 주로 언제 이루어지는가요

답 : 주로 아침에 출근해서 커피타임에 많이 했습
니다.

문 : 매일 하는 편인가요

답 : 예.

문 : 공동심의를 매일 아침 출근 직후 의뢰된 문서
원본과 지정담당자가 과학수사장비에 의해서 심층적
으로 분석한 자료를 가지고, 특히 그중에서 약 40내지
60배율로 확대한 회소성 있는 특징 부분의 사진 등을
가지고 함께 검토하여, 경우에 따라 이야기가 길어지
는 경우에 오전내내 토의를 하는 경우도 있지요

답 : 그렇습니다.

문 : 이 사건과 관련해서는 언론에 부각된 사건이
라 수시로 특징과 상이점이 나올 때마다 감정인들이
돌아가며 현미경 등 장비를 이용, 관찰하였지요

답 : 예.

문 : 증인은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보유하고 있
는 문서감정관련 장비들을 소개할 수 있나요

답 : 예, 소개할 수 있습니다.

이때 증인은 재판장에게 사진을 제출해도 되느냐고
묻다.

재판장

증인에게 참고자료로 장비사진을 제출하라고 명한
즉, 증인이 장비사진(340)을 제출하다

검사 윤석만

증인에게

문 : 먼저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사용하고 있는
문서감정장비를 사진을 적시하며 설명을 하세요

답 : 먼저 입체현미경이 있는데, 이것은 모니터에
의하여도 볼 수 있고 육안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이
것은 약 1,500배까지 확대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고정
밀비교확대투영기는 1982년에 독일에서 수입해온 것
으로서 필적을 상호 대조하는 기계입니다. 실제현미경
은 약 120배까지 확대해서 필요특징을 면밀히 분석하
는 것입니다. 필흔재생기라는 것은 영국에서 수입한
기계로서 아주 활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외에 입
체현미경, 적외선 현미경 등 장비가 있습니다.

문 : 이 사건의 경우 모두 6차에 걸쳐 회보가 되었
는데, 유서가 강기훈의 각 진술서, 강기훈의 항소이유
서, 강기훈의 수첩, 화학노트, 전민련 제출의 수첩, 업
무일지, 홍성은 제출의 메모는 동일한 필적이고, 유서
와 김기설의 무인이 찍힌 주민등록증 분실신고서, 김
기설명의로 이력서, 김기설 발신의 편지 및 카드, 김
기설이 누나에게 선물한 육아책자 속의 필적은 상이
한 필적이었지요

답 : 예.

문 : 그리고 전민련 제출의 수첩의 절취선과 그 잔
류부분이 일치하지 않고 겹친 사실이 있지요

답 : 예.

문 : 증인이 알기로 필적감정에 있어서는 회소성
있는 특징을 현출시켜 이를 기준으로 대조감정하는
것이 주가 되는 것이지요

답 : 예, 그렇습니다.

문 : 증인은 이진 유서필적에 나타난 회소성 있는
특징에 관하여 설명할 수 있겠는가요

답 : 예, 먼저 회소성 있는 특징에 대해서 제가
1991.에 종로경찰서 관내에서 발생한, 전경차림 2명이

340) 자료집 II책 523쪽 참조. (국과수 기록검증
에서 제출한 사진과 증복).

지나가는 여자 행인을 연행해가서 폭행한 사건을 매
모지를 토대로 300여명을 필적감정하여 회소성 있는
특징으로 사건을 해결한 예가 있습니다.

문 : 그리고 유서에 나타난 회소성 있는 특징들이
강기훈이 작성한 진술서 등과 김기설이 작성한 편지
등에 나타나고 있는지에 관하여 설명할 수 있는가요
이때 증인은 재판장의 허가를 얻어 준비해온, 김형영
작성의 진술서 공판기록 1161-1162면(341)의 확대한 사
진이 있는, 차트를 펼치고 지적하면서 설명하다.

답 : 설명을 개략적으로 하겠습니다. 이진 유서의
필적입니다. 이진 강기훈의 자술서 필적입니다. 이진
김기설의 편지 필적입니다. 여기에서 유서필적에서
'생'자, 진술서에서도 '생'자, 김기설의 편지에서도
'생'자, 이런 것을 토대로 하여 비교해 보았습니다.
유서의 '생'자는 'ㅅ'의 종필처리 부분을 위로 치켜
올리고 있고 모음인 'ㅞ'가 내려오면서 좁아지는 특
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로 받침쓰는 것이 아주 유
연스럽게 'ㄹ'자처럼 쓰는 특징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진술서 필적에서도 똑같은 형태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김기설의 필적에서는 이 '생'자의 모음이
전혀 다르고, 이 받침 형태가 안으로 들어와 있습니
다. 이번에는 '형'자입니다. '형'자를 쓸 때 3획이 마
치 자음인 허용자인 것처럼 나타나고, 이쪽 김기설의
필적에서는 이 '형'자가 전혀 틀리게 나타납니다. 그
리고 '선, 준, 식, 인, 진' 이런 것이 모음에, 종필과
받침에서 교차되는 부분, 빠지는 부분, 침범을 했지요
이런 형태가 전부 유서와 진술서에는 공통적으로 나
타는데, 김기설의 필적에는 전혀 그런 것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에'자인데, 이 '에'자를 지금 4개
로 분류를 했습니다. 이음을 완전히 하지 않은 형태가
여기 유서에는 2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서는 연결된 상태로 나타나고, 모음에서 이 각도가 내
려오면서 넓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음 '위'자입니
다. 같은 '위'자인데, 유서에서는 계속 완만하게 이루
어지면서 기형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물론 강
기훈의 진술필적에는 나와있지만, 김기설의 필적은 전
혀 다른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오'자인데,
이용의 증앙을 돌파하여 마치 니은자처럼 쓰는 회소

341) 복사불능으로 생략.

성이 있습니다. 진술서에는 공통으로 나타나지만, 김기설의 필적에서는 전혀 다른 형태를 볼 수 있습니다. '진'자의 지우를 구성할 때에 기필부분과 종필처리 부분은 'ㅈ'자처럼 자연스럽게 연결부분을 쓰는게 회소성의 특징입니다. 진술서에서는 똑같이 나타나지만, 김기설은 전혀 다른 필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것', '엇' 받침의 'ㄱ'과 'ㄴ'의 형태가 바로 'ㅈ'으로 연결되었습니다. 진술서의 글씨도 마찬가지로입니다. 유사 필적에서 지금 미음이 4가지 형태로 나왔는데, 물론 진술서의 필적에서도 4가지 형태로 나오고 있습니다. 김기설의 필적은 전혀 다른 형태로 볼 수가 있습니다. 미음을 4가지로 구사하는 것은 개인의 회소성 있는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면'자입니다. 모음의 제1획과 제2획이 좁아지는 형태가 유사와 진술서에 똑같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김기설의 필적은 전혀 다른 형태로 볼 수가 있습니다. '고'자도 물론 '고'자의 형태가 기억을 아주 작게 쓰는 습성이고, 획과 획이 교차되는 습성, 그리고 모음을 쓰는 것이 나 은자처럼 쓰는 것이 특이합니다. 김기설의 필적은 전혀 다른 형태로 볼 수 있습니다. '해', '생', '쟁', '책' 이것은, 받침이 없을 때는 평행을 이루고 있지만, 받침이 있을 때는 약간 경사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나 김기설 편지의 필적은 전혀 다른 형태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 문장을 쓸 때 '다'자 쓰고 점을 찍는 각도가 유사와 진술서에서는 위치가 거의 같습니다. 그리고 '일', '결', '길', '날' 이런 형태가 유사와 진술서에는 전부 이렇게 위치가 거의 같습니다. 그러나 김기설의 필적에서는 받침상태가 전부 안으로 들어온 상태가 특이한 차이점입니다.

문 : 증인은 6차례에 걸친 감정회보에서 증인이 모두 공동심회에 참여하였고, 또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보관하는 부분에 서명날인하였지요.

답 : 예.

문 : 당시 6번의 회보내용에 대하여 공동심의 과정에서 감정 요원 전원의 의견이 일치했었나요.

답 : 예, 일치했습니다.

문 : 수첩의 전화번호란 3매의 용지가 뜯겨져 있었는데, 그 절취선이 감정의뢰 되었을때 감정대상인 수첩의 제본상태가 견고하여 절취된 전화번호란이 수장

을 초과할 수 없음을 명백히 나타나 있었고, 수첩의 전화번호란 절취선부분과 모는종이란 사이에 2장이 온전하게 붙어 경계를 이루고 있었지요.

답 : 예.

문 : 그런데 1차 육안으로 살펴본 결과 전면에서 제출한 수첩 잔류부분이 절취면이 떨어져나간 3장의 종이의 절취선과 불일치하여 보다 정확한 감정을 위해 문서분석실에 있는 입체현미경과 물리분석과 일반 물리실의 실체현미경으로 각 관찰한 결과 역시 잔류부분이 절취면의 절취선과 일치하지 않고 잔류부분 돌출부가 각각 뜯어진 3매의 전화번호란과 겹치는 사실을 발견했지요.

답 : 예.

문 : 그래서 절취된 전화번호란이 감정대상인 수첩에서 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결론을 얻고 그와 같은 감정회보를 한 사실이 있지요.

답 : 예.

문 : 그런데 잔류부분 돌출부가 각각 뜯어져 있는 3매의 전화번호란과 겹친다는 의미에 대해서 감정인으로서 자세히 설명할 수 있는가요.

이때 증인은 자료사진³⁴²을 보이면서 설명을 하다

답 : 이 사진은 실체현미경으로 촬영한 사진입니다. 수첩에 잔류된 부분이 1, 2, 3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1, 2, 3은 떨어져나갔던 수첩입니다. 잔류부분이 1, 2, 3형태가 나왔는데, 이것이 찢어질 때 나타나는 형태입니다. 그렇다면 떨어진 수첩에서도 이렇게 잔류부분과 떨어져던 종이의 면과 1, 2, 3중 하나라도 일치되어야 하는데, 전혀 일치 안 되고 있습니다. 혹시 뒤바뀌었나 해서 하단부분과 맞추어 보았지만 전혀 일치 안 되고 있습니다.

문 : 그리고 절취된 전화번호란과 잔류된 수첩의 면중 절취된 전화번호 다음면을 필흔재생기 시험과 현미경 부착된 전등의 사광선 시험을 통해 감정한 결과 '서부경찰서 정보과'라고 기재한 연필 등의 필흔이 발견되지 않았고, 일부 발견된 필흔도 나타나야 할 곳이 아닌 위치에 있었지요.

답 : 예, 그렇습니다.

문 : 증인은 필적감정 업무 중에도 특히 필흔재생

342) 총자료집 I 책 337쪽 참조.

분야에 관심을 갖고 있어 일본 연수 및 연구결과를 발표한 사실이 있고, 이진 필흔감정에 있어서도 주동적으로 감정에 임한 사실이 있지요.

답 : 예, 있습니다.

문 : 증인이 필흔재생과 관련해서 일본 연수 및 연구결과를 발표한 사실이 있다는데, 그에 관해서 소개할 자료가 있는가요.

답 : 필흔재생기에 의한 실험은 작년에 9월 10일에 법과학 잡지에 제가 문서분석실장과 공동으로 연구한 논문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이를 참고자료로 제출해도 되겠습니까.

재판장
증인이 제출한 법과학잡지 사본을 조서 말미³⁴³에 편철하게 하라.

검사 윤석만
증인에게
문 : 증인의 감정인으로서의 경험에 의하면 어떤 사람이 정성껏 글씨를 쓰거나 아무렇게나 글씨를 쓰더라도 회소성 있는 고유의 특징이나 잠재습성은 현출될 수 있는 것이지요.

답 : 예.

문 : 따라서 감정물 또는 대조자료가 풍부하면 동일인의 필적이라는 감정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지요.

답 : 예, 맞습니다.

문 : 그러나 이진 유사와 김기설이 보냈다는 편지, 김기설의 무인이 찍힌 주민등록증본실신고서 등에는 그러한 특징이 나타나지 않았지요.

답 : 예.

문 : 따라서 증인의 필적감정에 대한 경험과 지식으로 볼 때 이진 유사와 김기설 발신의 편지, 김기설의 무인이 찍힌 주민등록증본실신고서의 필적이 동일인이 가질 수 있는 필체가 아니라고 판단하는 것이지요.

답 : 예, 맞습니다.

문 : 필적감정에 있어서는 회소성 있는 동일특징의 비율이 70퍼센트 이상이면 동일필적, 45퍼센트 이하면

343) 총자료집 III책 129쪽 참조.

상이필적, 45퍼센트 이상 60퍼센트까지는 이동식별불능, 60퍼센트-70퍼센트까지는 특징의 회소도에 따라 판별하는 것이 일용의 기준이지요.

답 : 맞습니다.

문 : 그러나 필적감정에서 동일특징비율이 몇 퍼센트라는 계산, 즉 73퍼센트나 67퍼센트라는 계산은 감정서에 기재하는 것이 아니지요.

답 : 예.

문 : 또한 필적이 은폐, 모방되거나, 서명한 글씨 등 감정물의 자료가 부족한 경우에는 위와 같은 일용의 기준도 적용될 수 없는 경우이지요.

답 : 예.

문 : 필적감정에 있어 대조증거물은 필적감정에 대한 의식이 전혀 고려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연스럽게 기재된 평소 필적이 가장 좋은 자료가 되지요.

답 : 예, 맞습니다.

문 : 평소 필적이 전혀 수집이 불가능했을 경우, 감정대상증거물과 거의 동일한 조건 즉 필기구, 용지, 기재당시 상황을 재현하여 여러차례 반복 시필하게 하는 경우도 있으나, 이 경우에도 시필자가 평소처럼 평온한 마음가짐, 안정된 정신상태에서 시필해야 되는 것이지요.

답 : 예.

문 : 정신이 혼란하거나 주변 분위기가 산만한 경우, 불안감, 긴장 등 심리적 영향을 받은 분위기에서 수집된 시필일 경우, 이는 대조자료로서 지극히 불량한 것이지요.

답 : 예, 부적합합니다.

문 : 필적은 자획 하나하나로 구성된 문자로서, 일반적으로 필기구를 권 손의 손가락 근육에 의하여 기재되는 것인데, 이러한 손가락 근육들은 신경자극에 의하여 조절되는 것이지요.

답 : 예.

문 : 증인은 신경자극에 의하여 필체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근거를 가지고 있는가요.

답 : 예, 미국 법과학지와 문서감식에 대한 연구 책자에서 발췌한 부분이 있는데, 필요하다면 이것을 참고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재판장

증인이 제출한 위 발체 부분을 조서 말미(344)에 편철하게 하다.

검사 윤석만

증인에게

문 : 필적이 신경자극에 의하여 조절될 수 있다는 점은, 필적감정대상이 된다는 의식하에서는 필기속도, 망설임, 지속성, 일관성, 필압의 강약, 리듬, 숙련성 등 여러가지 심리적 요인 등에 따라 필적이 왜곡될 가능성이 크고, 더우기 시필자가 적극적으로 필체를 감추고자 할 경우에는 대조가 전혀 불가능한 것이지요.

답 : 예, 그렇습니다.

문 : 증인의 필적감정 경험에 비추어볼 때, 유서는 대부분 심적인 동요가 나타나 글씨가 불안정하고 조잡한 것이 보통이지요.

답 : 예, 그렇습니다.

문 : 그런데 이 사건의 유서는 대단히 숙련된 필치로 안정되게 균형이 잡힌 필체로 써 있어, 일반적인 유서형태와는 다른 필체를 보이고 있다고 생각했지요.

답 : 예.

변호인 이석태

증인에게

문 : 증인은 김형영, 이인환 등과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공채 동기이지요.

답 : 예.

문 : 증인의 학력은 어떻게 되지요.

답 : 고등학교 졸업했습니다.

문 : 증인은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들어오기 전에는 어떤 직업에 종사했었나요.

답 : 제대를 하고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문 : 인장업에 종사하지는 않았나요.

답 : 그런 일 없습니다.

문 : 증인은 김형영과 이인환이 최근 김형영이 한 감정과 관련하여 뇌물수수혐의로 검찰에 구속 기소된 사실을 알고 있지요.

답 : 예.

문 : 증인은 김형영이 언제, 누구로부터 어떤 감정과 관련하여 얼마의 뇌물을 받았는지 알고 있나요.

답 : 그런 것은 모르겠습니다.

문 : 증인은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사무분장 규정에 따라 문서수발, 통제 등에 관한 사항은 서무과에서 전담하고 있고, 증인이 근무하고 있는 이화학3과는 일반 물리 분석업무, 특수물리 분석업무, 성분분석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지요.

답 : 예.

문 : 따라서 수신자가 국립과학수사연구소장으로 되어 있는 외부기관의 공문서는 서무과에서 접수를 하여 접수날짜를 포함한 접수인을 찍는 등 담당직원의 접수확인을 거친 후 국립과학수사연구소장의 결재를 거쳐 해당 각과로 보내지지요.

답 : 맞습니다.

문 : 그런데, 증인은 이와 같은 문서접수 및 발송에 관한 사무분장 규정과 달리 서울지검에서 한 이견 감정의뢰 중 일부가 서무과의 접수를 거치지 않은 채 문서분석실로 바로 왔고, 이에 대한 감정 회보도 없는 사실을 알고 있지요.

답 : 예.

문 : 증인은 지난 3.27. 있었던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대한 기록검증시 동 연구소 문서분석실에서 문서분석실장을 대행하여 관계기록의 현황 등을 설명한 바 있지요.

답 : 예.

문 : 당시 증인은 앞서와 같이 일부 감정의뢰에 대한 회보가 없는데 대하여 접수가 생략된 것이라고 설명했지요.

답 : 예.

문 : 증인의 설명에 대하여 당시 기록검증에 참여한 변호인이 누구의 재량으로 그렇게 접수를 생략했느냐고 묻자, 김형영의 재량으로 접수가 생략되었다고 답변하였지요.

답 : 예, 그랬을 겁니다.

문 : 증인은 위와 같이 접수가 생략된 사실을 언제 발견하였나요.

답 : 그 당시에 알았습니다.

문 : 그 당시란 언제인가요.

답 : 사건이 접수되어 가져왔을 때입니다.

문 : 제일 처음 문서분석실에 서울지검에서 감정의뢰서를 가져왔을 때인가요.

답 : 작업 들어갈 때 알았습니다.

문 : 발견 당시에 증인은 왜 서무과의 적법한 접수를 거치지 않았는지 궁금하게 생각하지 않았나요.

답 : 예, 궁금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

문 : 증인은 김형영이 그의 재량으로 접수를 생략하였다는 사실을 언제 어떤 경위로 알게 되었나요.

답 : 날짜는 확실히 기억이 안나고, 한 사건으로 그 기관에서 반복되거나 거의 중복된 내용으로 의뢰할 경우에는 일부 생략된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편으로 왔을 때에는 서무계에서 일괄적으로 접수하기 때문에 그런 착오가 없는데, 이 경우에는 인편으로 왔고 또 내용이 중복되기 때문에 실장님의 권한으로 생략되는 경우도 있고, 또 저희들도 통상적으로 어떤 사건이 발생될 때나 수사본부에서 들을 때에는 가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문 : 그 날짜가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중복된 건이어서 접수가 생략된 것으로 알고 있는가요.

답 : 예.

문 : 그것을 김형영으로부터 들었나요.

답 : 예, 들었습니다.

문 : 그러면 그것이 감정회보서를 보내기 전이었나요, 후였나요, 아니면 기억이 잘 안나는가요.

답 : 회보를 보내기전 감정을 할 적에 그랬을 겁니다.

문 : 증인은 위 기록검증시 변호인으로부터 김형영이 과연 그의 재량으로 접수를 생략할 수 있는냐고 묻자, 가능하다고 답변하였지요.

답 : 예.

문 : 증인이 가능하다고 본 근거는 무언가요, 먼저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사무분장 규정에 이렇게 김형영이 연구소장 앞으로 들어오는 외부공문에 대해서 접수를 생략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있는가요.

답 : 근거는 없는데, 같은 기관에서 동일 사건으로 들어올 때는 그것을 생략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

문 : 증인의 얘기대로라면 김형영이 재량으로 한

것에 대한 근거는 없다는 것이고, 어떻게 할 수 있었느냐에 대해서는 지금 증인이 추측으로 말하는 것이지요.

답 : 통상적으로 간혹 접수를 생략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문 : 증인은 이어서 변호인이 왜 이 사건에서 어떤 감정의뢰서에는 접수인이 찍혀 있고 어떤 감정의뢰서에는 접수가 생략되었냐고 묻자, 우편으로 들어온 문서는 서무과의 접수를 거쳤는데, 인편으로 들어온 문서는 접수가 생략되었다고 답변한 사실이 있지요.

답 : 예.

문 : 증인의 당시 답변 내용이 사실인가요.

답 : 우편으로 들어올 때는 우체부가 모든 증거물을 서무계에 갖다주고 서무계에서 접수하여 분류를 합니다.

문 : 이 사건에서 보면, 접수인이 안 찍히고 생략된 것이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증인이 기록검증시 변호인이 왜 어떤 것은 찍혀 있고 어떤 것은 안 찍혀 있느냐고 물어보니까, 찍힌 것은 우편으로 들어온 것이고, 안 찍힌 것은 인편으로 가져온 것입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지요.

답 : 아닙니다. 그것은 아마 전부 인편으로 가져온 것으로 기억됩니다. 접수가 된 것은 우편으로 들어온 문서이고 접수가 안된 것은 인편으로 가져왔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문 : 그런 답변을 한 사실은 있지요.

답 : 기억이 안납니다. 아마 뉘앙스를 잘못 이해하신 것 같습니다.

문 : 그럼, 이 사건 감정에서는 모두 인편으로 가져왔나요.

답 : 인편으로 가져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 : 그러면 인편으로 가져온 것은 똑같은 사실인데, 왜 어떤 경우에는 서무과에 들러서 접수를 찍고, 어떤 경우에는 서무과를 거치지 않았을가요. 검찰에서 오는 사람도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대문앞에 누가 마중나가지 않는 한 서무과로 바로 들어가는 것이 보통일 텐데, 이렇게 다른 이유가 있는가요.

답 : 맨 처음에 가져왔을 때는 아마 접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부터 자꾸 중복되는 내용

이 있기 때문이고, 일반적으로 우편으로 들어왔을 때는 모든 것이 서무과로 가지만 인편으로 할 때에는 거의 통상적으로 부서로 직접 옵니다.

문 : 그러면 이 경우에도 인편으로 들어오는 것은 거의가 서무과를 거치지 않고 문서분석실로 직접 갔나요

답 :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 : 그러면 서무과의 접수인이 찍힌 것은 인편으로 들어온 것을 다시 서무과에 보내서 찍은 것인가요

답 : 예, 그렇습니다.

문 : 그리고 일부는 김형영의 재량으로 생략한 것이요

답 : 예.

문 : 이처럼 접수가 생략된 문제에 관하여 김형영 또는 증인 등은 당시 국립과학수사연구소장에게 보고하거나 사후에 결재를 받은 바가 있는가요

답 : 없습니다.

문 : 증인은 김형영의 뇌물수수사건과 관련하여 검찰에서 조사받은 사실이 있지요

답 : 예, 있습니다.

문 : 당시 사실대로 진술하였나요

답 : 예.

문 : 위 사건에서 증인은 검사가 '문서감정 절차와 그 처리과정은 어떠한가요'라고 묻자, '필적감정의 경우 70퍼센트 이상 공통점이 있으면 동일한 것으로 감정결정을 하고, 60퍼센트 이하 45퍼센트 이상이면 이동식별불능결정을 하고, 45퍼센트 이하인 경우에는 상이한 필적으로 결정을 합니다'라고 답변하였는데, 사실인가요

답 : 예, 맞습니다.

문 : 증인은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문서감정원으로 근무하면서 지금까지 위 방법에 따라 한결같이 필적감정을 해 왔나요

답 : 예

문 : 필적감정의 이동비율에 관한 증인의 진술은, 김형영이 1심공판에서 '동일한 필적이 70퍼센트 이상이면 동일필적, 45퍼센트 이하면 상이한 필적, 45퍼센트-60퍼센트면 이동식별불능, 60-70퍼센트면 동일, 불능 중 택일합니다'라는 증언과 어긋나는데, 누구의

말이 맞는가요

답 : 지금 물으시는 내용이 맞습니다.

문 : 어떻게 동일특징비율이 몇 퍼센트이냐에 따라 필적의 이동여부가 결정되므로 정확한 동일특징비율을 산출하기 위하여, 대조되는 필적자료에서 일정한 필법상의 특징비율을 선정한 후 이에 관한 비율을 정밀하게 관찰 계산하여 궁극적으로 이동여부를 결정하는 것이지요

답 : 예, 그렇습니다.

문 : 증인은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이화학과장을 지낸 정창용이 저술한 '문서감식의 연구'라는 책을 읽은 일이 있나요

답 : 예, 있습니다.

문 : 위 책에 의하면 김형영의 증언과 마찬가지로 동일특징수가 70퍼센트 이상이면 동일필적, 45퍼센트 이하면 상이필적, 45-60퍼센트의 범위 내의 경우에는 이동불능, 동일특징수가 60-70퍼센트의 범위내인 경우는 배자형태, 필세의 특징의 이동을 참고하여 이동여부를 선택한다고 되어 있으며, 위 이동비율은 필선 또는 자획구성별로 특징을 찾아 동일특징수/대조특징수×100이라는 산식에 따라 구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증인도 이 방법에 따라 필적감정을 해 왔나요

답 : 예, 그렇습니다.

문 : 김형영이 이 사건 1심공판에서 진술한 바에 의하면 이 사건 감정서는 작성명의자가 동인 1인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동인을 포함하여 문서분석실 감정인 4명이 공동심의하여 같은 결론을 얻은 것이었는데 그런가요

답 : 예, 맞습니다.

문 : 1992. 2. 18자 한겨레신문 보도에 의하면 '국과수 문서감정실은 수사기관으로부터 관련문서의 감정뢰를 받으면 주임감정원을 선임하여 감정토록 하고 그 결과에 대해 서면합의토록 돼있다. 그러나 이날 소환돼 조사받은 국과수 직원들은 "각 감정인이 배당 받은 감정건이 많아 실제로 다른 감정인이 맡는 사건에 대한 합의는 형식적인 것"이라고 말했다고 검찰관계자는 밝혔다'고 되어 있는데, 이와 같은 검찰의 발표내용은 사실인가요

답 : 사실이 아닙니다.

문 : 이 사건 감정을 공동심의하였다면, 공동심에 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업무규정에 따라 한 것이요

답 : 예.

문 : 그 근거규정을 이야기해 주세요

답 : 문서감정규정 제2항에 나와 있습니다.

문 : 그러니까 문서분석실 자체내에서 임의로 하고 있는 것다는 것은 아니라는 거지요

답 : 예, 저희뿐만 아니라 연구소의 연구실에서 거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문 : 최근 김형영이 구속되는 등 국과수 비리가 문제되자, 당국에서 합의제로 감정을 하도록 규정을 개정하겠다는 개선을 발표했는데, 증인은 이 내용을 알고 있나요

답 : 예.

문 : 이 합의제라는 것이 무엇인가요

답 : 공동심의제는 그 파트 직원 전원이 참석해서 하는 것이고, 합의제는 부장, 과장을 포함해서 저희실의 경우에는 오후 3시에 모여서 합의제를 하고 있습니다.

문 : 증인이 이 사건 감정과 관련하여 '공동심의' 하였다면 공동심의의 순서는, 김형영을 포함하여 4사람이 독립적으로 감정을 하고 그 내용을 비교했다는 것인가요, 아니면 김형영이 먼저 감정을 하고 나서 그 결과를 가지고 다른 사람이 제대로 됐나를 심의했다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심의방법이 있다는 것인가요

답 : 규정에 의하더라도 지정된 감정인이 주도적으로 감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감정인들은 공동심의를 하는 방식인데, 물론 이 사건이 인편에 엄청나게 보도됐기 때문에 저희들도 상당한 관심을 갖고 적극 참여하면서 감정에 임했습니다.

문 : 공동심의의 일반적인 과정에서 독립적으로 감정을 하냐, 그 감정실에서 같이 모여서...

답 : 그 방에서 했습니다.

문 : 그 방에서 각자 독립적으로 감정한 결과를 취합해서 감정한 결과가 서로 맞느냐 이렇게 심의했다는 것인지, 아니면 김형영이 주임감정인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입장을 존중해서 그 사람이 먼저 하고 그 후 나머지 세 사람들이 과연 제대로 되었는지 이것을

심의했다는 것인지 분명히 해주세요

답 : 지정된 감정인이 심층적으로 분석한 내용을 토대로 그것을 물론 사진도 찍어서 보여주고, 증거물도 보면서 현미경으로 분석하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문 : 그러면 지금 증인의 취지는 주임감정인이 심층적으로 분석해서 결론을 어느정도 얻은 후에 자료를 제시해 준다는 것인가요

답 : 예.

문 : 대체로 그 과정이 사후적으로 검토되었다고 보아야 되겠군요

답 : 그건 아닙니다.

문 : 이 사건 감정과 관련한 공동심의 과정에서 김형영을 제외한 증인 등 다른 감정요원들이 사용한 감정방법은 김형영이 사용한 감정방법과 완전히 일치하는 것이었나요

답 : 예, 그리고 다른 분석실에서 해보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문 : 그렇다면 증인 등 다른 감정요원들이 이 사건 감정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소요된 시간은 김형영이 쓴 시간과 대체로 같겠군요

답 : 예.

문 : 또 증인 등 다른 문서감정요원들도 김형영이 판정한 감정결과가 과연 타당한가 여부를 검토하기 위하여 상당한 관련자료를 준비하고 서로 논의하였을 법한데, 그렇게 하였나요

답 : 예, 그렇습니다.

문 : 자료를 준비했나요

답 : 그러한 증거물을 보고 했습니다. 자료는 없었고요

문 : 김형영이 이 사건 감정과 관련하여 만든 자료 외에 증인이나 다른 감정요원들이 만든 자료는 없었지요

답 : 없습니다.

문 : 자료가 없다면 증인들은 김형영이 만든 자료를 가지고 검토했겠군요

답 : 예, 그렇고 증거물을 볼 수 있었으니까요 증거물을 보면서 한 겁니다.

문 : 김형영이 이 사건 1심공판에서 필적감정에 소

요되는 시간에 관하여 '처리기한은 8일로 잡고 있고 빠르면 1-2일 걸리고, 늦으면 지연통보를 하여 연장을 하는데 대개는 일주일 정도 걸립니다'라고 증언한 바 있는데 사실인가요.

답 : 예, 맞습니다.

문 : 이 사건 감정서의 작성자인 김형영과 증인 등 3명의 감정요원이 동일한 감정방법을 사용하여 공동심의한 것이라면, 이 사건 감정과 관련하여 문제가 될 경우 그 책임 또한 4인이 공동으로 지나요.

답 : 책임문제는 법적으로 잘 모르겠습니다.

문 : 모른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요.

답 : 책임문제는 법적으로 잘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문 : 주임감정인이 서명을 하고 다른 사람들이 공동심의필해서 도장을 찍어 감정을 했는데, 예를 들어 그것이 허위감정이라고 판정되었을 경우에 그 책임을 누가 지는가요.

답 :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문 : 공동심의를 문서분석실 요원이 객관적 입장에서 서로 같은 감정을 하고 비교검토하는 것이라면, 감정결과가 중요한 것이므로 감정서 작성자가 누구인가는 원칙적으로 특별한 의미가 없는 것인가요.

답 : 지정된 감정인이 분류되지 않습니다. 지정된 감정인이 서명날인 했기 때문에 의미가 있습니다.

문 : 증인 등 다른 감정요원 3명은 이 사건 감정과 관련하여 시종일관 김형영의 감정소견과 완전히 일치하였나요.

답 : 예, 일치했습니다.

문 : 심의과정에서 서로 이견이 노출된 적은 없었나요.

답 : 예, 없었습니다.

문 : 증인의 경험에 비추어 증인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근무한 이래 지금까지 공동심의 과정에서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한 적이 있었나요.

답 : 간혹 있는 것 같습니다.

문 : 증인은 이번 국과수 뇌물수수사건과 관련하여 구속된 이인환이 1981경 그가 한 문서감정과 관련하여 치안본부에서 허위감정의 의혹이 있다는 통보에 따라 파면된 사실을 알지요.

답 : 감정처리를 기일내에 처리하지 않았다는 이유

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어 파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 : 징계위원회가 열렸었나요.

답 : 예, 열렸습니다.

문 : 당시 이인환이 한 감정에 대하여 증인 등 문서분석실 감정요원 전원이 공동심의하였나요.

답 : 그것은 잘 모르겠는데요, 그 당시에 공동심의 제도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문 : 증인은 몇년도에 들어왔지요.

답 : 77.입니다.

문 : 77.부터 지금까지 계속 거기에서 근무했지요.

답 : 예.

문 : 이것은 4년전 일인데, 공동심의제였는지 여부에 하였는지 그게 안 나오나요.

답 : 공동심의제가 87.부터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 : 그 당시에는 어떤 제도였나요.

답 : 81.경부터 감정서에 정감정인, 부감정인 이렇게 한 것으로 기억됩니다.

문 : 그 당시 감정처리가 문제되어 책임진데 대하여 증인이 관여한 바가 없는가요, 이인환이 이번에 붙잡혀서 한 수사기록에 의하면 그 당시에는 협조제도가 있어서 주임감정인이 감정을 하면 다른 감정인이 보아 이의가 없을 시 협조란에 싸인을 하도록 되어 있었다고 하는데, 그런가요.

답 : 예, 그런 것 같습니다.

문 : 그러면 당시 증인도 협조란에 싸인을 했겠군요.

답 : 예.

문 : 그런데 처리가 늦었다는 그런 얘기군요.

답 : 예, 처리기간이 늦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문 : 당시 이인환외에 증인 등 다른 감정요원은 위 일과 관련하여 아무런 문책도 받지 않았나요.

답 : 예, 지정된 감정인이 이인환씨였기 때문에.

문 : 이 감정서 역시 증인 등 문서감정실 요원 전원이 공동심의한 것이지요.

이때 변호인은 증인에게 1991. 5. 15. 자 감정서 345)를 제시하다

345) 총자료집 I책 127쪽, II책 500쪽 참조.

답 : 예, 맞습니다.

문 : 위 감정서에 의할 때, 소위 김기설명의의 유서 2매와 전민련에서 제출한 업무일지 3매의 이동여부에 관하여 양자가 동일인의 필적이라고 감정되었지요.

답 : 예.

문 : 증인은 이 업무일지를 본 사실이 있나요. 이때 변호인은 증인에게 증제5-1호 업무일지³⁴⁶⁾를 제시하다

답 : 예.

문 : 이 업무일지 3매가 위 감정서에 증거물로 제시된 '전민련에서 제출한 업무일지 3매'가 틀림없지요.

답 : 예, 맞습니다.

문 : 위 감정서의 감정결과는 업무일지 3매 전체가 유서 2매와 같이 동일인이 쓴 필적이라는 뜻이지요.

답 : '4월 9일', '4월혁명기념 대회준비'와 첫장 업무진행표, 3. 20. 그것은 아닌 줄 알고 있습니다.

문 : 업무일지가 3매로 되어 있는데, 첫장과 둘째장의 5번째줄 파란 글씨는 아닌가요.

답 : 예.

문 : 감정서에, 유서의 필적과 전민련에서 제출한 업무일지 필적은 상호 동일한 필적이라고 되어 있지요.

이때 변호인은 증인에게 위 업무일지와 감정서를 읽게 하다

답 : 예.

문 : 감정서 자체는 분명히 업무일지 3매 전체가 유서와 동일필적이라는 뜻이지요.

답 : 아니지요, 전체라는 내용이 아니지요.

문 : 제3자가 그 감정서를 보면, 유서 1매와 업무일지 3매는 동일인이 쓴 필적이라는 감정결과가 나왔다고 보겠지요.

답 : 그렇게 볼 가능성은 있습니다만, 동일여부를 보았기 때문에 아마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감정할 때에 업무일지라는 여러 사람이 쓸 가능성이 있어 동일 필적만 가지고 감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 : 증인은 이 업무일지가 한 사람에게 의하여 작성된 것이 아니고 3인에 의하여 작성된 사실을 아나요.

346) 총자료집 I책 81쪽 참조.

검사 신상규

업무일지 3매에 몇명의 글씨가 기재되어 있는지, 한 사람의 글씨인지, 두 사람, 세 사람, 혹은 그 이상의 글씨인지에 대해서 감정의뢰된 적도, 결론이 난 적도 없으므로, 3명이 기재하였다는 것을 전제로 위와 같이 신문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므로 발문의 철회를 명하여 줄 것을 바라고 이에 이의신청.

재판장

검사의 이의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결정고지 하고, 다만 증인은 감정당시 몇 사람이 작성한 것으로 본 것인지, 아니면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안 다든지, 증인이 아는 바를 진술하면 된다고 고지.

답 : 감정사항이 필적의 동일여부를 봐 달라는 것이어서, 3. 20.자와 4. 9.자 내용은 다르기 때문에 그런 내용은 감정서에 포함하지 않고, 동일한 필적을 해서 결과를 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판장

증인에게

문 : 다르다는 것은 그 당시 증인이 느낀 것인가요.

답 : 예, 느꼈습니다.

변호인 이석태

증인에게

문 : 맨 앞면과 둘째장의 5번째 글씨 외에는 나머지 부분은 같은가요.

답 : 나머지 부분은 같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 : 맨 앞면과 둘째장의 파란 글씨는 같은 것인가요, 다른 것인가요 어떻게 느꼈나요.

답 :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문 : 또 김형영은 1심공판에서 위 업무일지 3매중 맨 앞면 연필글씨와 둘째장의 파란글씨로 기재된 부분은 유서 필적과 다르고, 감정 당시에 유사비율이 45 퍼센트 이하로 판정이 나왔다고 진술하였는데 증인은

위 사실을 아나요

답: 예, 알고 있습니다.

문: 다른 감정요원들의 경우는 어떤가요

답: 같이 느낀 것으로 압니다.

문: 그리고 위 감정서의 작성자인 감형영은 1심공판에서 위 업무일지와 관련하여 '검사로부터 여러 사람이 썼을 가능성이 있으니 유서와 동일한 부분만 감정해달라'고 하여 유서와 동일인의 필적이라고 판정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증인은 위 사실을 아나요

답: 예, 알고 있습니다.

문: 증인은 어떻게 아세요

답: 뒤에 감정할 때에 김 실장에게서 감정회보 전 문서분석실에서 들었습니다. 김 실장 스스로 그렇게 얘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 그때 공동심의의 일환으로 증인이 감정에 착수하기 전인가요

답: 그것은 기억나지 않습니다.

문: 다른 감정요원들의 경우도 김 실장에게 들었나요

답: 예.

문: 증인 등 다른 문서분석실 감정요원이 위 업무일지에 관한 감정결과를 공동심의하는 과정에서 이처럼 감정요원 내용이 분명하지 않은데 대하여 아무런 이견이 없었나요

답: 없었습니다.

문: 증인은 위 감정서에서 김기설 명의 유서와 김기설의 가족이 제출한 필적 2매 및 김기설의 주민등록증 분실신고서가 '정서와 속필 및 다른 필기구에 의한 변화상태를 알 수 없어서' 이동여부 판단불능으로 결론지어졌다가, 뒤에 상이한 필적으로 감정 소견이 변경된 사실을 아세요

답: 알고 있습니다.

문: 당시 증인 등 다른 감정요원들은 공동심의 과정에서 이렇게 감정결과를 변경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등 의견을 말한 바 없었나요

답: 없었습니다.

문: 당시 공동심의 과정에서, 앞서 그 변화상태를 알 수 없어 이동여부 판단불능으로 판정된 이유가 된 '정서와 속필 및 다른 필기구' 문제는 어떻게 논의되

어 해결되었나요

답: 차후에 감정의뢰 들어온 증거물의 양이, 필적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아마 편지가 제가 기억하기에는 약 360자 정도 되었습니다. 그렇게 때문에 자료가 충분했습니다.

문: 그러면 앞에서 문제된 정서와 속필문제는 해결되었나요

답: 예, 그래서 그것이 그 사람의 일관성 있는, 회소성 있는 특징이라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문: 증인은 유서에 쓰인 필기구가 무엇인지 알고 있는가요

답: 수용성 싸인펜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 뒤에 추가된 자료에서 수용성 싸인펜이라는 필기구를 사용한 것이 있었나요

답: 아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 유서는 속필로 되어 있지요

답: 예.

문: 추가된 자료 중에서 속필로 기재된 자료가 있었나요

재판장

변호인에게 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신문하는 것은 증인이 바르게 답변하지 못할 수도 있으니 증인에게 그 자료를 제시하고 신문할 것을 명한 즉, 변호인은 증인에게 증제1-6호 유서와 증제13-1, 2호 편지(347)를 제시하다

변호인 이석태

증인에게

문: 유서는 속필체지요

답: 안정되어 있는 필적입니다.

문: 증13-2호 편지는 무슨 필기구가 사용되었나요

답: 유용성 필기구인 볼펜류 같습니다.

문: 그 편지의 글씨체가 속필체는 아니지요

답: 예.

문: 정서체지요

답: 예.

347) 총자료집 I책 232쪽 참조.

문: 증인은 완전한 형태의 전민련 수첩을 본 적이 있는가요

답: 본 기억이 있습니다.

문: 김형영씨는 '감정할 때에 감정결과를 내기 전에는 본 적이 없다'고 하였는데, 증인은 언제 보았나요

답: 후에 본 것 같습니다.

문: 후에 감정결과를 보내고 나서 보았나요

답: 하여튼 본 기억이 납니다.

문: 그 수첩의 완전한 형태는 전체가 몇 장인지를 모르지요

답: 모릅니다.

문: 잔류부분이 정확하게 몇 개인가요

답: 3개인 줄 알고 있습니다.

문: 증인이 입체현미경, 실체현미경으로 보았을 때 잔류부분이 정확하게 몇 개였나요

답: 3개였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변호인 김창국

증인에게

문: 그것은 김형영 등에 관한 뇌물수수 형사기록에 편철되어 있는 것으로 문서분석실에 작성하여 제출한 것으로 보이는데, 누가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지 아세요

답: 이때 변호인은 증인에게 증제 27의 25, 문서분석실 인원조정 및 직제개정(348)을 제시하다

답: 잘 모르겠습니다.

문: 맨 첫 페이지의 표에 의하면, 90. 문서분석실 업무량이 나와 있는데, 필적감정 2,815건, 인명감정 503건, 기타 311건으로 합계 3,629건이고, 작년에는 그것보다 더 늘어났을 텐데, 일요일 공휴일을 빼고 하루 평균 12건을 처리해야 하고, 감정인 4명이 분담하여 단독 처리하더라도 한 사람이 1일 평균 3건을 처리해야 하는데, 과연 그와 같은 업무량을 감당할 수 있는가요

답: 할 수 있습니다. 공동심의하면서 할 수 있습니다.

검사 임철

증인에게

문: 증인은 변호인이 '이와 같은 문서접수 및 사무분장 규정과는 달리 서울지검에서 한 이 사건 감정 의뢰증 일부가 서무과의 접수를 거치지 아니한 채 문서분석실로 바로 왔으며'라는 신문에 그렇다고 대답했는데, 이는 인정을 하는가요

답: 예.

문: 그리고 '이에 대한 감정회보도 없는 사실을 알고 있지요'라는데 증인이 '예'라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의뢰되었으나 접수가 생략된 의뢰공문에 대해서 회보가 있는 부분도 있고, 그 내용에 대해서는 감정회보서에 다 포함되어 있으며, 이는 기록검증서에 검토를 하였지요

답: 예.

문: 접수가 생략된 문제에 관하여 증인 등은 국립과학수사연구소장에게 보고하거나 사후에 결재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는데, 증인의 증언 취지는, 접수가 중복되거나 수차 올 경우에는 감정담당인이나 실장의 재량으로 접수를 생략할 수 있으며, 이럴 경우 결재 등을 받아야 된다는 규정이 없다는 것이지요

답: 예, 결재를 받아야 된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문: 증인들이 지금까지 해온 관례에 의하면, 그러한 경우에 사후에 소장에게 보고를 한다든지 결재를 받을 필요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 것이지요

답: 예.

문: 증인이, 공동심의에 관한 근거규정이 문서감정 처리규정 제2항이라고 하였는데, 공동심의에 관한 근거규정은 문서감정 처리규정 제2조 제1항에 있는데, 이는 어떤가요

답: 제가 그렇게 정정하겠습니다.

문: 또 변호인이 '당시 이인환이 한 감정에 대해서 증인 등 문서분석실 감정요원 전원이 공동심의하였나요'라고 한 신문에 대하여 증인은 '기억이 없다'고 하였다가 '그 당시에는 정감정인, 부감정인이 있는 것 같다'고 증언했는데, 문서감정 처리규정은 1980. 5. 1.에 제정되었고, 거기에 공동심의에 관한 규정이 있는데, 당시 이인환이 한 감정이 80. 5. 1. 이전이었나

348) 총자료집 III책 313쪽 참조.

요, 이후였나요, 기억해보세요

답 : 80 초였는지..., 기억이 없습니다

문 : 80. 5. 1.에 이 규정이 제정되었고, 84. 6. 13.과 84. 12. 12.에 각 개정이 되었는데, 공동심의에 관한 위 조항은 제정시에 있었나요, 후에 개정될 때 삽입되었나요

답 : 기억이 안납니다.

재판장

증인에게

문 :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문서분석실에 자격을 가진 감정원이 모두 몇 명인가요

답 : 4명이 있고 2명이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문 : 심의를 하게 되면 정식 감정원 4명이 모두 하게 되는 건가요

답 : 예.

문 : 아까 심의를 합의로 바꾼다는 것에 대해 증인이 설명을 하다가 말았는데, 심의라는 것은 대외적으로 주임연구원의 명의로 나가는 것은 사실이지요

답 : 예.

문 : 공동심의제와 합의제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는가요

답 : 공동심의제는 분석실 요원 전원이 참여했으므로 거기에 서명날인하는 것이고, 합의제란, 이번 실장님 사건이 발생한 후, 저희 과의 경우에는 각과의 과장님 5분과 부장님 한 분이 모여서 오후 3시경에 전반적으로 각 감정서를 검토하여 서명날인하는 것인데, 이런 것은 대외적으로는 나가지는 않고, 자체내에서 감정서 부분에 서명날인하고 있습니다.

문 : 더 자세히 설명할 수 있나요

답 : 공동심의제는 분석실에 있는 감정요원들이 하는 것이고, 합의제는 과장급 이상들이 하는 것입니다.

문 : 과장은 감정하는데 관련한 자격이 있는가요

답 : 없습니다.

문 : 증인은 공동심의제와 합의제에 대해 잘 모르는 것은 아닌가요

답 :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문 : 증인은 업무일지에 대해서 '여러가지 필적이 있는 것을 전제로 해당라는 것을 김형영 실장이 얘기

를 했기 때문에 심의를 할 때 알고 있었다'라고 했지요

답 : 예.

문 : 그러면 그것이 감정을 할 때에 반영이 되었다는 것인가요

답 : 감정서에는 그 두 부분에 대해서는 포함을 안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 : 감정서에는 어느 부분 어느 부분이 다르다는 표현이 없는데, 그렇게 한 이유가 무언지 설명할 수 있는가요

답 :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동일필적이 나올 경우에는 그것만 처리하지, 문자 하나하나를 분석하여 감정서를 쓴다는 것은 감정서를 작성하기도 곤란할 뿐만 아니라, 동일한 필적이 나왔고, 그 두 가지가 다른 사람의 필적임을 알았기 때문에 그것을 제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감정서상 누앙스가 잘못된 것같은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문 : 의뢰문서를 접수하여 처리하는 것과 접수를 않고 처리하는 것과는 구체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는가요

답 : 처음에는 접수를 안하면 안됩니다. 하지만 접수된 사건을 통하여 다시 추가로 들어올 때는 그러한 근거가 있기 때문에 생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외에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문 : 시간상 차이는 있는가요

답 : 통괄적으로 접수를 하기 때문에 시간은 좀 더 걸립니다.

문 : 접수를 거부하는 경우는 있는가요

답 : 그런 일 없습니다. 다 접수를 받습니다.

피고인

증인에게

문 : 업무일지의 감정과 관련하여, 유서와 동일필적 부분만 감정을 했다고 하더라도 감정서에는 '총 업무일지 3장중 첫째장과 둘째장의 가운데 줄을 제외한 나머지는 유서와 같다'로 감정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답 :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충분히 설명을 했습니다.

1992. 3. 30.

법원 사무관 최 인 기

재판장 판사 임 대 화

*증인 선서서 <생략> (공판기록 3345)

☐자료 다3-4 (공판기록 3346~3354)

1992. 3. 30.

수신 서울고등법원 형사 제2부
제목 과학수사 장비에 대한 설명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문서분석실에서 사용하는 과학수사장비를 사진으로 기능에 대한 설명을 참고자료로 제출(349)합니다.

- 첨부 1. 입체현미경(니콘)
 - 2. 고정밀비교확대투영기(고정밀인영 판독)
 - 3. 실체현미경(에이오)
 - 4. 필흔재생기
 - 5. 입체현미경(올림포스)
 - 6. 적외선현미경 등 사진 및 기능설명 각 1부.
- 끝-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법과학부 물리분석과 문서분석실
문서분석실장 직무대리 양 후 열

(공판기록 3355~3366)

* 양후열 제출 논문 범죄학잡지(1991년 10월호)³⁵⁰

☐자료 다3-5 (공판기록 3367~3378)

1992. 3. 30.

수신 서울고등법원 형사 제2부
발신 시필에 부적합성 문헌

미국 법과학지(1992. 1. 125-129쪽), 문서감식의 연구(1989. 11. 20. 발행, 저자 정창용, 제10-12쪽 참조)에 소개된 시필 부적합성에 대한 참고자료로 제출합니다.

첨부 가. 미국 법과학지 사본 1점.³⁵¹

349) 국과수 검증 당시 제출한 것과 동일하므로 자료집 II책 523쪽 사진으로 대체함.

나. 문서감식의 연구 사본 1점.³⁵² 끝.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법과학부 물리분석과 문서분석실
문서분석실장 직무대리 양 후 열

350) 총자료집 III책 129쪽 참조.
351) 총자료집 III책 137쪽 참조.
352) 총자료집 III책 3쪽 참조.

☐자료 다3-6 (공판기록 3379~3475)

서울고등법원
증인신문조서
(제3회 공판조서의 일부)

사건 92노401 자살방조 등
증인 김형영
생년월일 1939. 11. 19.생
주민등록번호
직업 전 공무원
주거 서울
(현 서울구치소 재감중)

재판장은
증인에게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가의 여부를 물어 이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인정하고 위증의 벌을 경고한 후 별지 선서서와 같이 선서를 하게 하였다.

증인 김형영
재판장에게
제가 오늘 여기를 오다가 보도진들 앞에서 실감을 하다가 팔도 다치고 이마를 카메라에 다쳤기 때문에 피를 굉장히 많이 흘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옷은 다 빨고 했습니다만 열도 많이 나고 지금 몸이 좀 안 좋습니다. 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재판장
증인에게
문: 증인신문의 연기를 구하는 취지인가요
답: 아닙니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문: 증인은 1심에서도 2번이나 증언을 한 바 있지요
답: 예.

재판장
증인 본인이 질문을 명확히 파악하여 명확한 답변을

하는 것이 제일의 관건이므로, 만일 질문이 애매하거나 하여 질문의 취지를 잘 못 알아듣고 답변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또 물어보든지 추궁하게 마련이므로, 증인도 그러한 점을 참작하여 증인 스스로 우선 적절히 대처하도록 하라고 고지.

변호인 이석태
증인에게
문: 증인은 이건 1심에서 검찰측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증언한 일이 있지요
답: 예.

문: 당시 증인이 선서한대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였나요
답: 예.

문: 증인은 지난 2. 29. 엠비시(MBC) 뉴스데스크 시간에 증인이 뇌물을 받고 허위감정을 해왔다는 취지의 보도가 처음 방영된 이후 각 언론에서 증인에게 촛점을 맞추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뇌물수수비리 및 허위감정의혹에 관하여 연일 크게 보도한 사실을 알고 있지요
답: 예.

문: 당시 보도내용 중에는 증인이 일부 사실 감정인 및 대전에 사는 건설업자인 이세용으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감정과 관련하여 뇌물을 받은 의혹이 있다는 보도가 있었지요
답: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문: 증인은 증인의 비리에 관련되었다고 처음 보도한 엠비시(MBC) 사장, 보도국장, 취재기자 등 3명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겠다고 밝혔지요
답: 제가 직접 그렇게 한 기억은 없습니다.

문: 실제로 증인은 엠비시(MBC) 사장, 보도국장, 취재기자 등을 명예훼손혐의로 고소하였나요
답: 그런 일이 없습니다. 다만 기자 흥순관을 고소했다가 취소했습니다.

문: 증인은 한편 증인이 한번도 만난 적이 없다고 한 이세용도 검찰에 출두하면서 '나는 절대로 결백하며 김형영씨를 알지도 보지도 못했다'고 언론에 밝힌 사실을 아나요
답: 그것도 잘 모르겠습니다.

문 : 증인은 2 17. 뇌물수수 등 특정범죄가중처벌
법위반 혐의로 검찰에 구속되었지요

답 : 예.

문 : 이에 앞서 위 이세용, 사설감정인 이인환 등 6
명이 증인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구속되었지요

답 : 6명은 아니고, 명수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이세용, 이인환은 맞습니다.

문 : 1992 2 18자 동아일보 보도에 의하면 '검찰
은 증인을 지칭하는 "김씨"가 지난 89. 8대전의 건설
업자인 이세용으로부터 자신이 관련된 위증사건에서
각서와 인종축타서 등에 관한 필적감정을 유리하게
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200만원을 송금받는 등 89. 5
에서 90. 12까지 사이에 이씨 등 6명으로부터 모두 9
차례에 걸쳐 1,035만원을 받았다고 밝혔다'라는 검찰
발표 기사가 실려있는데, 이 검찰발표 내용이 사실인
가요

답 : 1,035만원은 맞는 걸로 압니다만, 유리하게 해
달라는 청탁은 아닙니다.

문 : 증인은 무고혐의로 구속 기소된 공소의 박덕
희에 대하여 최근 서울형사지방법원이 증인이 감정한
인영감정결과를 믿을 수 없다고 배척하고 동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실을 알고 있나요

답 : 예, 알고 있습니다.

문 : 증인은 1980. 2. 허위감정죄로 서울지방법검찰청
에 구속기소되어 서울형사지방법원에서 징역 10월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지요

답 : 예.

문 : 증인은 이건 1심에서 위 재판에 대하여 '1심
에서는 재감정신청을 안받아주었고 2심에서 ... 재감
정하여 증인이 감정한 결과가 옳다고 하여 무죄판결
을 받았고 이에 따라 복직되었다'고 증언하였는데 사
실인가요

답 : 예.

문 : 위 사건에서 증인의 감정이 옳다고 재감정한
사람은 당시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증인과 같이 문
서분석실 감정요원으로 근무중이던 공소의 이인환이
었지요

답 : 위 감정은 현재도 문서가 다 살아 있고 재감
정한 것도 다 살아 있으므로 모든 게 다 명백하고 그

당시도 이인환 혼자서 한 것이 아니라 공동심을 했
었습니다. 이인환이 주감정원이었던 것은 맞습니다.

문 : 위 이인환은 증인과 같이 1977. 3경 국립과학
수사연구소에 문서감정요원으로 공채되어 똑같이 문
서감정업무에 종사하다가 1981경 파면되었지요

답 : 파면이 아니라 직권면직되었을 것입니다.

문 : 위 이인환이 직권면직된 까닭은 동인이 한 문
서감정과 관련하여 허위감정의 혐의가 있다고 치안본
부에서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통보했기 때문이지요

답 : 그렇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직무태만인
지 직무 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 : 직무태만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
가요

답 : 그것은 제가 구속되어 있을 때였는지 아니면
그후였는지, 아무튼 제가 근무하지 않을 때 일어서
확실한 기억은 못합니다.

문 : 위 이인환은 국과수를 그만둔 후 서울 서소문
에서 중앙인영필적감정원을 운영하는 신찬석에게 증
인이 부탁해서 그 무렵부터 증인에게 뇌물을 준 혐의
로 구속되기 전까지 계속 그곳에서 감정인으로 종사
했지요

답 : 이인환이란 사람은 그동안 감정업무를 알고
있다가 최근 몇년전에 신찬석씨가 사무실을 낸다니까
그 밑에서 일을 봐주고 있습니다.

문 : 그게 언제인가요

답 : 확실히 기억은 못하겠으나 3, 4년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 : 그러면 이인환은 국과수를 그만두고 3, 4년전
까지 감정업무를 안하였다는 것인가요

답 : 예, 안하였습니다.

문 : 증인은 위 이인환이 신문사의 의뢰를 받아 이
사건 유서대필 여부와 관련한 필적감정을 한 사실을
알고 있는가요

답 : 그후에 그런 일을 했었다고 그런 얘기를 들은
것 같기도 합니다.

문 : 그 필적감정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아는가요

답 : 확실치 않았던가 어쨌던가 확실히는 기억
하지 못하겠습니다.

문 : 증인은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사무분장규정에

따라 문서수발업무는 서무과에서 분장하고 있는 사실
을 아는가요

답 :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 : 따라서 위 규정에 따라 국립과학수사연구소장
앞으로 되어 있는 모든 공문서는 반드시 서무과에서
접수를 하고 접수일자를 포함한 접수인을 찍은 후 국
립과학수사연구소장의 결재를 받아 참조란에 명시된
해당과로 보내 업무를 처리하게 하고 있지요

답 : 예, 그렇습니다.

문 : 위 문서 수발업무는 우편으로 수발하거나 인
편으로 수발하거나 구별없이 적용되지요

답 : 예.

문 : 증인은 이건 1심 공판에서 이건 감정의뢰서
및 감정회보의 부분을 모두 가지고 와서 이것을 증인
석에 앉아 충분히 검토해가면서 검사나 변호인 등의
질문에 답변하였지요

답 : 예.

문 : 당시 증인은 서울지검의 감정의뢰건수와 증인
이 한 감정회보건수가 맞지 않는다는 변호인의 지적
에 대하여 증인이 가지고 온 감정회보서 부분 등을
살펴보았는바, 실제로 의형상 감정의뢰건수보다 회보
건수가 적은 것을 알고 그 이유를 찾아 답변하고자
하였으나 쉽게 발견하지 못하였고, 또 재판부에서도
이 점을 궁금하게 생각하여 증인이 충분한 시간동안
감정의뢰서와 회보서를 검토하여 답변할 수 있도록
재판장의 직권으로 20여분간 휴정한 사실이 있었지요

답 : 아닙니다. 그중에서 하나가 발송은 되었는데,
제 문서에서 의뢰서는 첨부되어 있었지만 대호번호가
하나 빠져 있었습니다.

문 : 대호번호가 무엇인가요

답 : 의뢰번호입니다. 그 번호가 어느 부분에 있는
지 잘 못 찾아 한참 찾았습니다.

문 : 그래서 20분동안 휴정한 사실은 있었지요

답 : 그런 때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문 : 휴정이 끝나자 증인은 '일부 감정의뢰에 대해
일괄하여 회보할 생각으로 중복된 부분은 접수를 생
략하고 기록을 안한 것 같습니다' 라고 답변하였지요

답 : 예, 일반적으로 동일내용을 추가로 의뢰해왔을
때 접수를 안하고 그렇게 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 의

뢰관서에 의사를 물어서 그렇게 처리한 것입니다.

문 : 증인은 이 감정서에서 김기설 명의 유서 2매
와 전민련에서 제출한 업무일지 3매는 동일인이 쓴
필적이라고 감정하였지요

이때 변호인은 증인에게 1991. 5. 15.자 감정서353)를
제시하다

답 : 예.

문 : 증인은 위 업무일지와 관련하여 1심 공판에서
검사가 '이상 5차에 걸친 필적감정결과를 종합하면,
유서와 전민련에서 제출한 수첩, 업무일지, 강기훈이
자신의 필적이라고 자백한 강기훈의 수첩, 강기훈의
노트, 강기훈의 자술서 및 진술서, 강기훈 작성의 함
소이유서, 강기훈 작성의 'Two Tac', 'What is'의
필적은 모두 동일한 필적이고, 유서와 김기설 명의의
주민등록증 분실신고서, 이력서, 김기설이 누나에게
선물한 책자속의 필적, 김기설의 친구 안혜정이 제출
한 편지 및 카드의 필적은 상호 상이한 필적이라는
것이지요' 라고 묻자 '예' 라고 답변하였지요

답 : 예.

문 : 증인은 1심 공판에서 위 업무일지 3매중 맨
앞장 연필글씨와 들깨장의 다섯째칸 파란 글씨로 기
재된 부분은 유서 필적과 다르고 감정당시에 유사비
율이 45퍼센트 이하로 판정이 나왔다고 진술하였는데
사실인가요

이때 변호인은 증인에게 증제 5-1호 업무일지354)를
제시하다

답 : 예.

문 : 그렇다면 업무일지에 3사람의 필적이 섞여 있
는 사실은 틀림없는 사실인가요

답 : 그 당시 두 사람인지 세 사람인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부분이 유서와 같은 것인지를 기준했
기 때문에 필적감정을 한 것인데, 그것이 두 사람인지
세 사람인지 네 사람인지 그것은 구분하지 않았습니
다.

문 : 그러면 그것이 한 사람의 필적인가요, 아니면
...

답 : 한 사람의 필적은 아니라고 감정서에도 나와

353) 총자료집 I책 81쪽 참조.
354) 총자료집 I책 81쪽 참조.

있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 : 감정서에 한 사람의 필적이 아니라고 나와 있어요.

답 : 아니, 그 부분은 제외하고 동일한 부분만을 표시해서 동일하다고 감정했습니다.

문 : 그래서 증인은 '증인은 위 업무일지가 한 사람에 의해 작성된 것이 아니고 3사람의 필적이 섞여 있는 사실을 아나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대하여 '감정당시 여러 사람이 썼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여 이를 고려하여 감정했습니다'라고 답변한 사실이 있지요.

답 : 예.

문 : 그리고 다시 변호인이 '증인이 어떻게 위 사실을 아는지'라고 묻자 '검사로부터 들었다'라고 답변하였지요.

답 : 예, 그것을 한 사람이 썼는지 두 사람이 썼는지 세 사람이 썼는지 그것은 확실히 모르니까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그 중에서 유서 필적과 동일한 것이 있는 것만을 참고해달라고 했습니다.

문 : 검사가 언제, 어디서 증인에게 위와 같은 얘기를 하였나요.

답 : 연구소에 와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문 : 혹시 그 검사의 성함이 기억나는가요.

답 : 윤 검사라고 알고 있습니다.

문 : 그러면 검사가 연구소에 와서 감정의뢰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였나요.

답 : 예.

문 : 증인이 묻지도 않았는데 검사가 그렇게 얘기 하였나요.

답 : 일단 증거물이 왔을 때는 여러가지 상황을 물어보게 되지요.

문 : 그러면 증인은 업무일지에 대하여 무어라고 물어보았나요.

답 : 어떻게 물어보았는지는 기억을 못하겠고, 문제는 이 유서와 다른 필체와의 동일여부를 물어본 것이기 때문에 그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 다. '여러 사람이 썼을 가능성을 전제로 하고, 몇 사람이 썼는지는 모르지만, 한 사람이 썼는지 여러 사람이 썼는지는 모르니까 그런 것을 염두

에 두고 감정해달라' 그랬던 것으로 압니다.

문 : 공동심의를 다른 감정요원들도 그러한 검사의 이야기를 그 자리에서 들었나요.

답 : 안 들었습니다.

문 : 그러면 증인이 그런 얘기를 뒤에 다른 사람들에게 하였나요.

답 : 그런 것은 하고 안하고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감정하는 결과에 따른 공동심의가 중요한 것이지, 사실 의견이 어떻고 하는 것은 미리 주입시키거나 그런 얘기를 할 필요는 없었다고 봅니다.

문 : 다른 사람에게 그런 얘기를 한 일이 없다는 것인가요.

답 : 예, 기억이 안 납니다.

문 : 지금 증인이 '1심 법정에서 업무일지 3매중 맨 앞장 연필글씨와 들체장의 다섯째칸 파란 글씨로 기재된 부분은 유서 필적과 다르고 감정 당시에 유사 비율이 45퍼센트 이하로 판정이 나왔다고 증언하였다'고 하였는데, 이런 내용을 다른 감정요원들도 알고 있는가요.

답 : 아는지 모르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문 : 우리가 보기에는 감정의뢰공문에 명기된 감정의뢰사항과 구체적인 검사의 감정요구 내용이 다른 것 같은데, 증인은 국립과학수사연구소장에게 그러한 것을 보고한 사실이 있는가요.

답 : 그런 내용은 보고할 사항이 아니고, 추가로 감정을 의뢰했을 때는 추가사항은 접수를 생각하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재판장의 확인에 대해)

보고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압니다.

문 : 증인은 김기설 명의 유서 2매와 업무일지 3매의 필적감정을 마친 후, 서울지검 강력부에 업무일지 3매중 맨 앞장의 글씨와 들체장의 다섯째줄 파란 글씨부분이 유서의 필적과 다르다는 사실을 통보해준 일이 있는가요.

답 : 얘기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생각나지 않습니다. 동일한 부분만을 취해서 했기 때문에 다른 부분에는 별 관심을 가지지 않았습니 다.

문 : 그렇다면 증인의 감정서에는 유서 2매와 업무

일지 3매가 동일인의 필적이라고 되어 있으므로, 서울지검 강력부는 업무일지 맨 앞장의 글씨와 들체장의 다섯째칸 파란 글씨부분이 유서와 다른 필적인지 여부에 관하여 모르고 있었겠군요.

답 : 알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문 : 증인은 지금 이 자리에서 전민련이 제출한 업무일지 3매의 필적감정과 관련하여 증인이 한 감정상의 잘못을 솔직히 시인하고 증인의 감정소견을 '김기설 명의 유서 2매와 전민련이 제출한 업무일지 3매를 대조해본 결과, 업무일지 3매중 맨 앞장의 글씨, 들체장의 다섯째칸 파란 글씨, 들체장의 나머지 부분과 세제장은 각기 다른 3인의 상이한 필적이고, 그중 들체장의 나머지 부분과 세제장의 글씨는 유서 2매와 동일한 필적임'이라고 변경할 용의는 없는가요.

답 : 없습니다.

문 : 증인은 1심 공판에서 '필적이 동일하다고 판정하는 경우 그 필법의 유사비율이 어느 정도 되면 동일필적으로 결론짓나오'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대하여 '동일한 필적이 70퍼센트이면 동일필적, 45퍼센트 이하면 상이한 필적, 45-60퍼센트이면 이동식별 불능, 60-70퍼센트이면 동일, 불능중 택일합니다'라고 답변한 사실이 있지요.

답 : 예, 감정기준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 : 또 증인은 이어서 '이건 필적감정이 필법의 특징에 관한 유사비율이 45퍼센트 이하이기 때문에 서로 다른 필적이라고 판정하였나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예'라고 답변하였지요.

답 : 예.

문 : 증인은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이화학과장을 지낸 정창용이 저술한 '문서감식의 연구'라는 책을 읽어본 일이 있지요.

답 : 예, 있습니다.

문 : 위 책에 의하면 일본 경시청이 필적감정의 주안점을 두는 항목으로서 1)필압, 필세 2)배자형태 3)필순 4)자획구성, 이렇게 4가지 특징을 분류하고 있고, 그중 특히 필순과 자획구성의 특징에 감식의 중심을 두고 있다는데 그런가요.

답 : 그것은, 판단이나 기준이 따로 있지만은, 꼭 어느 부분 몇가지를 특별히 구분해서 특징을 분류한

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읽어보면 그중에서도 여러가지 세세한 항목이 굉장히 많이 포함되어 있으며, 네 가지의 다른 특징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문 : 또 위 책에 의하면 증인의 증언과 마찬가지로 동일특징수가 70퍼센트 이상이면 동일필적, 45퍼센트 이하이면 상이필적, 45퍼센트부터 60퍼센트의 범위내 인 경우는 이동불명, 동일특징수가 60퍼센트부터 70퍼센트의 범위내인 경우는 배자형태, 필세의 특징의 이동을 참고하여 이동여부를 선택한다고 되어 있으며, 위 이동비율은 필순 혹은 자획구성별로 특징을 찾아 동일특징수/대조특징총수×100이라는 산식에 따라 구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인가요.

답 : 예.

문 : 증인의 경우도 위와 같은 방식에 따라 이동비율을 계산한 후 그에 따라 필적의 이동여부를 판정하였나요.

답 : 규정을 짓자면 이렇다는 규정입니다. 여태까지 퍼센트라는 것은 그 규정의 범위안에서 한 것입니다.

문 : 증인은 1심 공판에서 위 이동비율 계산과 관련하여 '감정결과 70퍼센트 이상이면 유사한 것으로, 45퍼센트 이하면 상이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했는데 그 근거는 무엇인가요'라는 재판장의 질문에 대해 '육안 관찰로 개인 특성을 찾고 그 특징이 몇 퍼센트 인가를 정밀관찰하며 일본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게 합니다'라고 진술하였는데 사실인가요.

답 : 예.

문 : 그렇다면 증인이 한 이견 필적감정방법은 증인이나 문서분석실의 다른 감정요원이 개발한 독자적인 방법이 아니라 일본이나 미국에서 하는 보편적인 방법에 따라 하였다는 뜻인가요.

답 : 예, 외국에서도 하고 있는 방법입니다.

문 : 증인은 실제로 이견 필적감정을 행함에 있어서 대조자료에서 관찰된 특징이 몇 퍼센트인가를 정밀관찰하였나요.

답 : 몇 퍼센트의 ..., 정밀하게 관찰했습니다.

문 : 한편 재판장이 1심 공판에서 증인에 대한 신문을 마치면서 증인에게 '70퍼센트의 의미에 대해 지금 증언한 것을 토대로 추후 상세한 설명서를 제출할

수 있는가요'라고 물었던 바, 증인이 '예, 추후 제출 하겠습니다'라고 답변하였지요.

답: 예.

문: 증인은 위 답변대로 그후 상세한 설명서를 법원에 제출하였나요.

답: 추가로 제출하였습니다.

문: 증인은 이 감정서에서 수사기록 중의 진술서 2매, 김기철의 친구로부터 제출받은 필적 2매 및 김기철 명의의 유서 2매의 필적 이동여부에 관하여 모두 동일필적이라고 감정하였지요.

이때 변호인은 증인에게 1991. 5. 15.자 감정서를 제시하다

답: 예.

문: 증인은 위 대조자료에서 관찰된 동일특징비율이 70퍼센트 이상이 되고 위 3가지 필적이 모두 동일 필적이라고 감정하였다는 것이지요.

답: 예, 퍼센트의 개념은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문: 그렇다면 위 자료에서 증인이 동일특징비율을 판별하기 위하여 대조특징으로 삼은 필순 또는 자획 구성 또는 기타 필법상의 특징은 어떤 것이 있었나요.

답: 그것은 1심때 세부적으로 어느 특징부분, 어느 특징부분하고 한참 기록하여 증명한 것입니다.

문: 그것은 공동변호인인 박연철변호사가 증인의 판단이 좀 틀리지 않느냐 해서 일부분 물어본 것이지, 그러한 증언을 한 일은 없습니다.

답: 그런 답변을 했습니다.

문: 그러면 그렇게 답변을 했으니까 증언하지 않겠다는 것인가요.

답: 그렇습니다.

문: 동일특징비율이 정확하게 몇 퍼센트였나요.

답: 70퍼센트 이상이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문: 그러면 80퍼센트도 있을 수 있고 90퍼센트일 수도 있고, 여러가지일 것 같은데요.

답: 90퍼센트 정도 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문: 너무 막연하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것인데, 아까 보여준 정창용씨의 저술에 의하면 이 사람은 이동비율을 네 가지로 하고 있는데, 보시겠어요.

답: 기억하고 있습니다.

문: 이 사람이 이동비율을 판단하는 것은 그냥 쳐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그 방법이 동일특징총수/대조특징총수×100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수학적으로 굉장히 정확한 것입니다.

답: 비율이라는 것은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퍼센트의 비율은 적어도 정창용씨의 문서감식에서 나온 공식에 의해서 산출되었을 테니까요.

문: 증인이 이 공식에 따라 계산했다면 계산된 수치가 있을 것이 아닌가요, 그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답: 필적감정이라는 것은 정확하게 따져서 수학공식하듯이 71퍼센트다, 72퍼센트다라고 공식으로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정창용씨 책에도 그렇게 나왔다는 설명도 없고, 일본 책에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적감정이라는 것은 감정인이 특징을 하나하나 분석하면서, 그때 이미 그 특징이 어느 부분에 있고 또 어느 부분에 있으므로 마음속에 수치가 계산이 되고, 그렇게 하면서 '적어도 이것은 70퍼센트 이상이 된다'라고 ...

문: 동일특징점을 증인이 세밀하게 보니까 그것이 동일필적이라고 생각되어 '그렇다면 이것은 70퍼센트 이상이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인가요, 아니면 증인이 동일특징점을 쫓 찾아서 그것을 정확하게 계산해서 70퍼센트 이상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감정하였다는 것인가요, 어느 쪽인가요.

답: 감정인이 전문인으로서 그 일만을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데, 감정을 하나하나 특징비율을 비교 검사하는 상황에서 벌써 다 특징의 퍼센트가 나오는 것이지, 다 일단 체크한 것을 수치를 계산해서 몇분의 몇 그렇게 하는 감정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미 감정하면서 특징비율은 벌써 감정인의 가슴에서 벌써 '이것은 어디 어느 부분 어느 부분해서 이것은 70퍼센트 이상이 된다' 그러는 것입니다. 감정인의 오랜 동안의 경험, 능력, 객관적인 판단을 종합해서 그런 것이 퍼센트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문: 그러면 증인이 70퍼센트라고 말할 때 증인은 이를 구체적으로 계산해본 것은 없는가요.

답: 제가 방금 이야기드렸지만, 문서감정을 처음 시작하는 사람도 아니고 이를 전문으로 십수년 동안 수만 건을 감정하는 사람이 감정이 끝난 다음에 하나

둘 세어서 '61퍼센트다', '71퍼센트다' 하는 식으로 계산하지는 않습니다. 감정을 하는 과정에서 벌써 감정인의 능력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문: 감정을 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것이지 70퍼센트라는 것이 갑자기 증인의 마음속에 나타나는 것은 아니지 않은가요.

답: 하나하나 특징을 비교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을 비교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문: 어떠한 특징을 비교했으며, 구체적으로 몇 퍼센트냐는 것입니다. 비교해서 나타났다면 막연하게 '70퍼센트 이상이다'라고 나오지는 않았을 텐데요.

답: 막연하지 않습니다. 감정을 하는 사람이 전문적인 입장에서 자기의 능력으로서 판단하는 것입니다.

문: 그렇다면 '감정인의 능력에서 감정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것이다'라고 정리해도 될까요.

답: 감정인의 능력과 객관적인 판단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문: 그러면 증인이 '동일필적', '상이필적'이라고 감정한 이건 모든 부분 감정은 그런 원칙에 따라 비율이 나왔다는 것인가요.

답: 감정인의 오랜 경험과 통계와 전문인으로서의 능력과 객관적인 판단을 통해서 얻은 종합적인 결론입니다.

문: 구체적인 계산을 실제 한 적은 없었나요.

답: 구체적인 계산을 하기 이전에 전문인의 입장에서 보아 벌써 판단이 되는 것입니다.

문: 일반적인 필적감정에 있어서 비교되는 양 자료에 관하여 대조할 특징점을 찾아 이동비율을 계산하고자 한다면, 최소한 몇 개 이상의 특징점을 찾아 대조해야 하나요.

답: 몇 개라는 것은 계산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전체를 100으로 계산했을 때 동일필적비율은 아까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문: "'리'를 양쪽에서 찾아서 비교하니 유사하고, '미'를 찾아보니 유사하고, '비'를 찾아보니 유사하고, 이렇게 서너개가 유사하니 이것은 같다"라고 이렇게 나올 것 같은데, 도대체 몇개의 특징점을 찾아서 양쪽을 비교했을 때 비로소 '동일' 또는 '상이' 이

렇게 나오는 것인가요.

답: 그것은 어떤 원칙보다도 '리'이 같다, '미'이 같다 하는 것은 특히 애매한 것입니다. '리'중의 하나를 가지고서도 기필점, 각도, 종필점 등, '리' 하나를 가지고서도 여러가지로 구분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 그렇다면 그런 특징은 ...

재판장

증인에게

문: 증인은 흥분할 필요가 없습니다. 증인은 1심 법정에서 그 점에 관하여 '것을 몇 자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다'라고 진술했는데 사실인가요.

답: 예.

문: 그러나 어느 정도 윤곽은 얘기할 수 있는 것인가요.

답: 그동안 필적감정을 해본 경험으로는, 어느 경우나 몇자 이상이라고 할 수는 없고, 서명같은 경우에는 3자라도 되는 수가 있으며, 때로는 30자, 40자, 50자가 되어도 안 나타나는 경우도 있으므로 꼭 글자수를 가지고 구분할 수는 없습니다.

문: 공통점이 1자만 있어도 감정할 수 있는 경우도 있는가요.

답: 1자를 가지고는 이동여부를 정확히 가려보지 못했습니다. 3자를 가지고는 한 일이 있습니다. 서명 같은 경우지요.

문: 문장의 경우는 어떤가요.

답: 문장의 경우에는 글자수가 많아도 안되는 수가 있고 적어도 되는 수가 있기 때문에 문자수로 얼마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문: 더 이상 말해줄 수 있는 것이 없는가요.

답: 예.

변호인 이석태

증인에게

문: 증인은 1심 공판에서 '대개 한 개인에게 있어서 몇년간량 간격으로 글씨체가 바뀌나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대해 '보통 어릴 때는 계속 바뀔 수 있으나 20세를 전후하여 필적이 고정된다'고 답변하였지요.

답 : 고정되는 사람도 있고 변화점이 있는 사람도 있다고 답변했을 것입니다.

문 : 20세를 전후하여 필적이 반드시 고정되는 것이 아닌가요

답 : 20세 전후에 일단 고정이 되는데, 그후에 글씨를 별로 안 쓰는 사람은 별로 변하지 않는 사람도 있고 변하는 사람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문 : 일반적으로 20세를 전후해서 필적이 고정되므로 증인이 1심에서 그렇게 증언한 것이 아닌가요

이때 재판장은

증인은 1심에서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20세를 전후해 필적이 고정되며, 그후의 변화는 개인차가 많습니다'

답 : 예, 그렇게 증언한 기억이 납니다.

변호인 이석태

증인에게
문 : 또 증인은 '만일 이견 각 필적자료의 작성시기가 15세 이전과 20대 후반과 같이 현격하게 차이가 난다면 이러한 작성시기를 고려하여 감정조건이 달라질 수도 있겠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대하여 '10년, 20년같이 현격하게 차이가 난다면 그럴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라고 답변하였는데, 그런가요

답 : 15세 이전과 20세 그런 때는 어린아이기 때문에 변화가 많습니다. 10년, 20년도 변하는 경우가 있고 변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람에 따라서.

문 : 그렇게 답변한 기억은 나는가요

답 : 기억은 나지 않으나 제 생각과 판단이 항상 그렇습니다.

문 : 그러면 위 질문에 대해 연도에 따라 증인의 생각을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는가요

답 : 방금 말한대로입니다. 사람에 따라서 연도가 많이 되면 많이 변하는 사람도 있고, 연도가 오래 되어도 별로 변하지 않는 사람도 있고, 사람에 따라서 다릅니다.

문 : 이 사건 유서는 검찰의 공소장에 의하면 1991. 4 하순경부터 김기설 분신자살전까지 씌여졌다고 되어 있고, 위 책 속표지 필적을 검찰에 제출한 장병호

가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에 의하면 김기설의 큰 누나가 1981. 7경 조카 혜정을 출산한데 대한 기념으로 육아법에 관한 책을 선물하면서 써 주었다는 것이므로, 양 자료의 작성시기상 10년 가량의 차이가 있고, 특히 압수물 10-1호 이력서에 의하면 위 책 속표지 글씨는 김기설이 중학교를 막 졸업한 무렵에 쓴 것이므로, 앞서의 증인 진술에 의할 때 양 자료는 동일필적 여부에 관한 판정이 곤란한 것이 아닌가요

이때 변호인은 증인에게 증제1-6호 유서와 증제3-1호 책 속표지(355)를 제시하다

답 : 그 필적은 모두 일관성이 있었습니다.

문 : 증인은 1심 공판에서 이 사건 감정서가 증인 1인의 명의로 되어 있으나, 사실은 증인을 포함하여 문서분석실 감정요원 4명이 똑같이 검토하고 서로 아무런 이의없이 만장일치로 의견이 일치하여 감정을 회보하였고, 따라서 이 사건 감정회보서 부분에는 '공동심의필'하고 각자 서명날인하였다고 증언하였지요

답 : 예.

문 : 4명이 공동으로 심의하였다는 말은 4명이 똑같은 감정방법을 사용하여 같은 결론을 얻었다는 말인가요

답 : 감정방법이나 모든 것이 다 같았습니다.

문 : 그렇다면 이 사건 감정서의 작성명의자가 증인이 아닌 다른 감정요원이라고 하더라도 상관이 없는 건가요

답 : 상관 없습니다. 누가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문 : 감정이 잘못되면 누가 책임을 지는 것인가요

답 : 주임감정인이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문 : 감정의 순서는 어떠하였나요

답 : 공동심의에 관해 1심 법정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얘기한 것 같습니다.

재판장

증인에게 답변할 것을 촉구하다

답 : 주 감정인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된후에 한 사람 한 사람씩 심의하는 경우도 있고, 같은 자리에서, 중요한 사건은, 같이 퍼본 이후에 하는 수도 있고 상황은 여러가지입니다. 다만 주감정인이 가장 많이 보

355) 총자료집 I 책 74쪽 참조.

고 검토하기 때문에, 부감정인은 자기들의 평소 능력과 판단을 가지고 주감정인보다 심의하는 시간이 훨씬 짧습니다. 그렇지만 감정서를 돌아가며 하는 수도 있고 전체적으로 문서를 가지고 보는 경우도 있고 사 진을 가지고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재판장

증인에게

문 : 이 사건에서 그렇다는 것인가요

답 : 모든 경우에 다 그런 식으로 합니다.

문 : 증인이 먼저 한 것은 맞는가요

답 : 예, 맞습니다.

변호인 이석태

증인에게

문 : 증인은 이견 감정을 함에 있어 모두 원본에 의하여 감정하였나요

답 : 예.

문 : 다른 감정요원들도 모두 원본을 사용하여 감정하였나요

답 : 예.

문 : 이견 감정을 함에 있어 증인이 감정에 소요한 시간보다 다른 감정인들의 감정 소요시간은 짧았다고 했지요

답 : 예.

문 : 다른 감정요원들도 각자 자기 업무를 보면서 이견 필적감정을 하였나요

답 : 어느 사건이나 자기 업무를 보면서 하지만은, 이 사건은 평소에도 같이 여러번 다 보았습니다.

문 : 이견 감정서 부분에 있는 '공동심의필' 날인은 언제 한 것인가요

답 : 감정서 작성 후에 서명날인합니다.

문 : 이 감정서에 의하면 문서의 절취선 일치 여부에 관한 감정은 1991. 5. 24 감정의뢰를 받고 바로 다음날인 5. 25 회보한 것으로 되어있는데, 당시 증인이 감정에 소요한 시간이 대략 몇 시간 정도였나요

답 : 기억이 잘 안납니다.

문 : 하루 이상은 안되겠군요

답 : ……., 상당히 오래 시간이 걸린 것 같습니다.

문 : 문서의 기재상 하루 이내인 것 같은데요

답 : 그 전에 보면 5. 21.에 수첩이 벌써 제출되었었습니다.

문 : 5. 21.에는 절취선 여부 감정의뢰가 들어 있지 않았고, 수첩의 글씨와 유서의 필적여부에 관한 것인데, 그러다가 5. 24.에 문서의 절취선 일치여부를 의뢰한 것이기 때문에 5. 21.에는 절취선 일치여부에 관해서는 증인은 생각을 전혀 못한 것이 아닌가요

답 : 아닙니다. 절취선 문제를 알고 있었습니다.

재판장

증인에게 질문내용을 잘 파악하고 정확히 대답하라고 촉구하다

답 : 이것이 지금 기억이 나는데요, 처음에는 수첩의 필적 이동여부지만 절취선 문제가 있어 가지고 이 수첩을 두고 절취선 문제를 이미 현미경으로 촬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다시 그 부분을 명기하여 의뢰해왔기 때문에 이미 검사한 상태에서 빠른 시간에 회보할 수 있었습니다.

문 : 5. 21. 감정의뢰서에는 글씨의 이동여부만 있지 절취선 얘기는 전혀 없는데, 그러면 검사가 개인적으로 증인에게 얘기해줘서 미리 그랬다는 것인가요

답 : 확실히 기억은 안나는데, 전화상으로 이야기가 됐었는지 어땠는지, 아튼든 그 문제는 절취선과 필적 두 가지 문제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문 : 정식으로 감정의뢰공문을 받기 전에 이미 증인은 수첩 절취선 일치여부에 대해 감정을 시작했고, 그러므로 상당한 시간이 걸렸다는 것인가요

답 : 예, 그렇게 기억합니다.

문 : 증인은 이견 감정의 결론에 이름에 있어 대조자료의 동일특징비율이 70퍼센트 이상이면 동일필적, 45퍼센트 이하이면 상이필적이라고 판단하였다고 증언하였는데, 다른 감정요원들도 마찬가지로 동일특징비율에 의하여 판단하였나요

답 : 전부 다 그리고 모든 사건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문 : 이견 감정에 관한 '공동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시종일관 의견의 일치를 보았나요

답: 예.
문: 그러니까 결론이 달라서 재검정한 일은 없었겠군요.

답: 예, 없었습니다.
문: 증인은 이 사건 유서와 김기철 가족이 제출한 책 속표지 필적 및 김기철의 주민등록신고서에 대하여 처음에는 이동여부 논란불능으로 감정하였다가 뒤에 상이한 필적으로 감정소견을 변경하였지요.

답: 예.
문: 이처럼 감정소견을 변경하는데 대해 감정 전 후에 있어 감정요원 모두가 완전한 의견일치를 보았나요.

답: 예, 다 알고 있습니다.
문: 문서분석실의 다른 3인의 감정요원이 이진 감정을 공동심의하면서 예컨대 이동비율의 계산서류 등이들이 작성한 각종 관계자료가 현재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보관되어 있나요.

답: 없을 것입니다. 이 사건 뿐만 아니라 어느 사건에도 없습니다.

문: 증인은 지난 2. 17. 구속된 이후 검찰에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사실대로 진술하였나요.

답: 예.
문: 위 사건에서 증인은 증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에서 증인이 진술한 바에 의하면, 증인은 대전에 사는 건설업자인 이세용과 조병길간의 형사소송 및 민사소송에서 증인이 하는 감정과 관련하여 이세용 등으로부터 뇌물 명목으로 3회에 걸쳐 합계 돈 600만원을 받았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답: 이 사건과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검사 신청규
변호인의 증인에 대한 발문은 증인의 증언거부권이 인정되는 범위내의 것이므로 이를 제지하시고, 증인에게 증언거부권을 다시 한번 고지해 줄 것을 바란다고, 별지 이의신청서 기재와 같이 이의신청.

재판장
증인에게 증언거부권을 고지.

변호인 이석태
증인에게
문: 위 피의자 신문조서에 의하면, 증인은 1989. 5. 말경 흥은동에 있는 유진상가 2층에서 이인환과 이세용을 만났다고 하는데, 그런가요.

답: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문: 위 피의자 신문조서에서 당시 증인은 이세용이 동인에게 불리하게 감정한 사실감정인 이익주의 감정서를 그 자리에서 증인에게 보여주자 '이런 엉터리같은 놈이 어디 있느냐. 다음에 문제가 되더라도 아무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해결해 주겠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사실인가요.

답: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문: 이번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비리사건으로 같이 구속된 이세용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에 의하면, 이세용은 당시 증인이 30여분간 검토하더니 이익주의 감정서가 엉터리라고 말하였다는데, 그런가요.

답: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문: 증인은 이 사건 1심 공판에서 '증인이 통상 필적감정 1건을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이 어느 정도인가'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대하여 '처리기한은 8일로 잡고 있고 빠르면 1, 2일 걸리고, 늦으면 지면 통보를 하여 연장을 하는데, 대개는 일주일 정도 걸립니다'라고 답변한 바 있고, 위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면 '위와 같은 문서감정은 어떻게 하는지 설명하시오'라는 검사의 질문에 대하여 '먼저 필적감정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필적감정이란 현미경, 입체현미경, 고정밀비교확대투영기 등의 기기를 이용하여 예비검사 즉 대조자료의 특성, 필기구와 용지작성 기재시기, 필체의 일관성, 조화성 등을 검토한 후 본검사 즉 문자구성, 필순, 배자, 필압, 필세, 오자, 분해식별, 개인의 회소성 있는 독특한 특징을 분류한 후 특수 특징부분을 분류 사진촬영을 하는 방법을 말합니다'라고

답변한 사실이 있지요.

답: 예.
문: 증인은 이 사건 1심 공판에서 '유서와 수첩, 메모, 강기훈의 노트, 진술서의 필적은 동일한 필적이요, 강기훈이 동생에게 보낸 편지는 유서 등과 이동여

부를 논란할 수 없는 것으로 결론이 났는데 사실인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예'라고 답변한 바 있고, 이어 검사가 '당시 옥증편지는 사본으로, 사본에서는 특징 현출상태가 약하여 미세한 특징을 비교검토하기 어려워 이동여부를 논란할 수 없다고 회보한 것인가'라고 묻자, '예, 필적감정이라는 것은 개인이 기재할 때 우연히 나타나는 아주 미세한 특징, 필압형태를 찾아서 감정해야 하는데, 사본에서는 그러한 특징이 나타나지 않습니다'라고 답변한 바 있지요.

답: 예.
문: 앞서의 위 이세용과 만난 자리에서 증인은 이세용이 증인에게 보여준 이익주의 감정서를 검토하면서 현미경, 입체현미경, 고정밀비교확대투영기는 고사하고 보통의 확대기조차 사용한 바 없지요.

답: 증언거부.
문: 또 당시 대조자료의 원본을 본 일이 없고, 독특한 특징부분을 대조 분류하여 사진촬영을 한 바도 없지요.

답: 증언거부.
문: 증인은 다시 1989. 8. 15. 프라자호텔에서 이세용을 만난 바 있지요.

답: 증언거부.
문: 당시 증인이 동인을 만나 함께 있었던 시간은 대략 어느 정도였나요.

답: 증언거부.
문: 당시 이세용이 역시 동인에게 불리하게 판정된 사실감정인 이송운 작성의 필적감정서를 증인에게 보여준 일이 있나요.

답: 증언거부.
문: 위 이세용과 조병길간에 문제된 필적감정 분쟁에서 결국 조병길이 유죄판결을 받고 민사소송 역시 이세용이 승소했지요.

답: 조병길 필적은 필적 이동여부가 아니라 필적 전사여부였습니다. 조병길 필적은 자기가 쓰고 안 쓴 것을 우리에게 의뢰한 바 없고, 필적을 어디에 썼는데 그 필적을 이 문서에다 옮겼다. 그렇기 때문에 옮긴 것이나 아니면 필기구로 직접 쓴 것이냐는 것이 감정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필기구로 직접 쓴 것으로 감정한 것입니다.

문: 그래서 결국 조병길이 유죄판결을 받고, 민사소송 역시 이세용이 승소한 것은 맞지요.

답: 결과는 잘 모릅니다.

문: 당시 증인은 모두 이세용에게 유리한 판정을 하였으며, 뒤에 동인으로부터 사례금으로 200만원을 받았다고 검찰에서 진술하였지요.

답: 증언거부.
문: 증인은 문서의 변조여부가 쟁점이 된 형사사건에서 반대 당사자인 강태호와 양승호 쌍방으로부터 각각 뇌물명목으로 돈을 받은 사실이 있다고 검찰에서 진술하였지요.

답: 증언거부.
문: 증인은 고소인인 강태호로부터 먼저 돈을 받은 후, 뒤에 양승호로부터 3회에 걸쳐 돈 350만원을 받았다고 검찰에서 진술하였지요.

답: 증언거부.
문: 증인은 양승호의 상대방인 강태호로부터 증인이 먼저 돈을 받은 사실을 양승호에게 말해준 바 없지요.

답: 증언거부.
문: 증인은 검찰에서 1차 양승호로부터 돈을 받을 당시 증인이 한 감정과 관련하여 법원에서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사실조회를 하는데 양승호에게 유리하게 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돈을 받은 것이지요.

답: 증언거부.
문: 그런데 증인이 구속된 사건에서 검찰에 참고

답: 증언거부.
문: 당시 증인은 위 이송운의 감정서를 검토하면서 현미경, 입체현미경, 고정밀비교확대투영기 또는 보통의 확대기조차 사용한 바 없지요.

답: 증언거부.

인으로 출석한 양승호의 진술에 의하면, 위 사실조회가 동인의 부탁과 달리 동인에게 불리하게 나와, 동인이 뇌물알선자인 신찬석에게 경위를 물어 보았더니 '상대편에게 먼저 돈을 받아 먹었는지 아니면 무슨 사연이 있는지 알아보겠다고 하였으며 며칠 후에 만났을 때 김 실장을 만나보았느냐고 하였더니 그때서야 비로소 검찰직원이 교육도중 질문을 하여 공표된 사건이기 때문에 할 수 없었다고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더라는 말을 전해주었습니다'라고 검사 질문에 답변하고 있는데, 증인은 신찬석에게 위와 같은 취지로 사과한 일이 있나요

답 : 증언거부.

문 : 그후 양승호는 다시 법원에 재감정신청을 하면서 증인에게 재감정결과를 유리하게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돈 280만원을 교부하였나요

답 : 증언거부.

문 : 당시 재감정의 요점은 이미 양승호에게 불리한 감정을 해놓았던 티이므로, 과연 증인이 먼저한 감정이 제대로 한 감정이었는지 즉 증인의 감정능력을 알아 시험해보는 것이었다고 증인은 검찰조사시 진술하였는데 사실인가요

답 : 증언거부.

문 : 따라서 만일 법원에서 재감정을 실제로 실시하였을 경우 증인의 감정능력이 의심스러운 것으로 결과가 나오면 증인에게 돈을 준 양승호에게 유리하고, 반대로 증인의 감정능력이 인정되면 양승호에게 불리한 것이었나요

답 : 증언거부.

문 : 양승호가 증인에게 돈 280만원을 준 취지는 재감정이 동인에게 유리하도록 즉 증인의 감정능력이 불신을 받도록 부탁한 것이고 증인은 이를 수락한 것이지요

답 : 증언거부.

문 : 그런데 만일 양승호에게 유리하게 재감정결과가 나오면 문서분석실장으로서 증인의 감정능력이 큰 문제가 되었을 법한데, 증인은 당시 정말 양승호의 부탁을 들어줄 속셈으로 돈을 받았나요

답 : 증언거부.

문 : 아니면 증인이 양승호를 기망한 것인가요

답 : 증언거부.

문 : 그러나 위 재감정은 결국 법원에서 하지 아니하여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지요

답 : 증언거부.

문 : 그렇다면 증인은 돈을 받고 아무런 일도 하지 아니한 셈이 되는데, 양승호에게 돈을 돌려주었나요

답 : 증언거부.

변호인 박연철

증인에게

문 : 이 사건으로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서울지방검찰청으로부터 감정뢰를 받은 회수는 모두 13회이고, 그중 필적감정, 문서질취선감정 등 12건은 문서분석실에서, 담배풍초 감정 1건은 일반화학과에서 담당하였지요

답 : 담배풍초는 잘 모르겠고, 다른 것은 대략 맞습니다.

문 : 이 사건 감정의뢰서들은 인편으로 접수하였나요, 우편으로 접수하였나요

답 : 거의 인편으로 접수했습니다.

문 : 거의인가요, 모두인가요

답 : 거의 다 그런 것 같습니다.

문 : '거의 다'라는 것이 모두라는 뜻인가요

답 : 예.

문 : 인편인 경우 검찰청에서 국과수로 사람을 보냈나요

답 : 예.

문 : 국과수에서 검찰청으로 사람을 보낸 일은 없는가요

답 : 없습니다.

문 : 담당검사가 직접 감정의뢰서와 감정대상문서를 가지고 왔었나요

답 : 검사님도 몇차례 온 것 같고, 직원을 시켜서 많이 보낸 것 같습니다.

문 : 증인은 제1실에서 증언하면서, 이 사건 감정의뢰서 중에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문서접수대장에 기재하지 않은 것이 있다는 점을 시인하였지요

답 : 하나가 빠져 있다고 했습니다. 대호님버가.

문 : 대호님버가 빠져 있는 것은 나중에 회보를 보

내면서 대호님버가 빠져 있다는 것이고, 국과수 감정 문서접수대장에 기재하지 않은 것이 있다고 시인한 것 아닌가요

답 : 그것은 같은 내용 같은 사항이 중복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처리한 것이 종종 있습니다.

문 : 이것은 검찰에서 1991. 5. 13자로 발송한 문서번호 강력 23110-012032문건인데, 접수인이 찍혀 있지도 않고 접수대장에도 기재되어 있지 않지요

이때 변호인은 증인에게 변호인이 작성한 일람표³⁵⁶⁾ 및 변호인 제출 증제26-1에서 증제26-4-18까지 증인에게 제시하고, 그중 증제26-4-27, 1991.5.13.자 필적감정의뢰서³⁵⁷⁾를 제시하다.

답 : 예.

문 : 그 이유는 무언가요 위 문건을 접수대장에 기재할 수 없는 이유가 있었나요

답 : 추가로 연관된 사건은 접수를 않고 같이 묶어서 정리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접수는 생략해도 이 물증과 의뢰사항은 이 감정서에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문 : 5. 13자 문서는 검사가 감정대상문서와 함께 가져왔나요

답 : 그것은 자세히 다 기억나지 않습니다.

문 : 증인은 제1실에서 필적자료는 검사가 가져왔다가 검사가 다시 회수하여 갔다고 증언하였지요

답 : 그런 것도 있고 직원을 보낸 것도 있고, 여러 가지입니다.

문 : 증인이 수령한 감정의뢰서를 접수시키지 않으면 소장은 어떤 방법으로 접수사실을 알게 되는가요

답 : 중요사건은 별도로 보고합니다. 접수는 파장전 결입니다.

문 : 검찰의 감정의뢰서중 1991. 5. 21자 문서번호 23110-012752 전민련수첩 1권, 강기훈 진술서 1부, 주민등록증 분실신고서 1매의 감정의뢰문건은 접수대장에 기재되어 있지 않지요

이때 변호인은 증인에게 증제 26의 4-20, 1991. 5. 21. 자 감정의뢰서³⁵⁸⁾를 제시하다

답 : 예, 빠져 있습니다. 생략했습니다.

문 : 위 감정의뢰서에 증인이 '관련 추가접수로 접

356) 총자료집 II책 589쪽 참조.

수생략함'이라고 기재하여 놓았는데, 위 내용은 언제 기재한 것인가요

답 : 그 무렵 기재했습니다.

문 : 위 감정서 첫째 줄의 대강력 23110-015305호에서 '5305'를 지우고 '3052'로 고친 시기는 언제였나요

이때 변호인은 증인에게 증제26의 4-17, 감정서(2)³⁵⁹⁾를 제시하다.

답 : 잘 기억이 안나는데, 정리하다보니 대호님버가 틀려서 고쳤는지 잘 기억이 안납니다.

문 : 검찰에 감정서를 송부하기 전이었나요, 아니면 그후였나요

답 : 글썽, 그런 것을 잘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문 : 증인은 제1심 법정에서 증언한 이후 이 사건 관련 문서상의 미비점을 알고 사후적으로 추가하여 기재하거나 정정하여 두었던 것이지요

답 : 그런 것 없습니다.

문 : 증인이 이건 압제11-1호 전민련수첩은 1991. 5. 21자 위 감정의뢰서에 의하여 처음으로 교부받았던 것은 분명하지요

답 : 예.

재판장

증인에게

문 : 그것은 5. 21.자가 아니고 5. 20.자가 아닌가요

답 : 5. 21.자가 맞습니다.

변호인 박연철

증인에게

문 : 증인은 이 사건 전민련수첩을 언제 어디에서 누구로부터 인도받았나요

답 : 사무실로 직접 가져왔는데, 검사였는지 다른 직원이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전부 인편으로 가져왔습니다.

문 : 증인이 위 수첩을 인도받으면서 검찰로부터 어떠한 설명을 받았나요

357) 총자료집 II책 504쪽 참조.

358) 총자료집 II책 491쪽 참조.

359) 자료집 II책 487쪽 참조.

답 : 뭐 미비한 것은 우리가 전화를 많이 했고, 절취선이 문제가 되고 필적이 문제가 되고, 뭐 그런 설명을 들은 것 같습니다. 직접 들었는지 전화로 들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문 : 인도를 받으면서 그 내용을 들은 것인가요

답 : 예.

문 : 문서분석실에서는 이 사건과 관련한 새롭고 중요한 감정대상을 최초로 인도받으면서도, 그것을 접수대장에 기재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인가요

답 : 그 접수대상에 빠진 것은 아까 이야기한대로 고요 감정서 내용에는 거의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문 : 새롭고 중요한 감정대상물이라는 것은 맞는가요

답 : 어느 것이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 것인지 저희들은 모릅니다. 다 증거물이니까 다 중요한 것입니다.

문 : 관련문건이라 접수하지 않았다고 하였지요

답 : 관련사건이니까 제가 접수를 생략하게 되면 사무계에는 접수내용이 빠지게 되지요. 결과는 다 들어가게 되지만요.

문 : 제1차 감정의뢰서 이후의 감정의뢰서는 모두 접수대장에 기재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취지인가요

답 : 다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날짜가 차이가 많지 않고 중복되고 하니까, 그것은 이렇게 연관해서 한꺼번에 처리하겠다고 양해를 얻었기 때문에 접수를 안하고 연관으로 해서 처리한 것입니다.

문 : 최초의 접수 이후 문서분석실로 보내진 11건의 의뢰서중 7건은 접수대장에 기재하고 4건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이유도 마찬가지로

답 : 예.

문 : 접수하고 안하고는 증인이 임의로 처리하고만 것인가요

답 : 연관사건인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문 : 월권행위이고 위법행위가 아닌가요

답 : 글썽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많이 처리했습니다. 번거롭지 않게 하기 위해서요.

문 : 국과수에서는 검찰의 1991. 5. 24자 문서번호 강력 23110-013052, 문서절취선 일치여부에 관한 감정 의뢰문건도 접수대장에 기재되어 있지 않지요

이때 변호인은 증제26의 4-18, 절취선 일치여부에 관한 감정의뢰서³⁶⁰)를 제시하다.

답 : 예,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문 : 위 감정의뢰서가 접수대장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무언가요

답 : 아까 이야기한대로 한꺼번에 다 포함시켜서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뢰사항이나 감정결과가 결과적으로 빠져 있거나 가감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문 : 정식으로 접수하지 않고 시험적으로 감정하여 볼 생각을 가졌었나요

답 : 그럴 내용이 아니었겠지요. 중요사항이라면 그렇게 했겠습니까. 의뢰관서에서 의뢰한대로 우리가 다 감정해줘야 되는 것이니까요.

문 : 국과수에서는 1991. 5. 28자 강력 23110-013499 문건도 접수대장에 기재하고 있지 않지요

이때 변호인은 증인에게 증제26의 4-12, 감정의뢰서³⁶¹)를 제시하다.

답 : 예.

문 : 위 의뢰서상의 감정대상문건은 유서, 전민련수첩, 홍성온이 제출한 메모, 강기훈의 화학노트, 자술서이지요

답 : 예.

문 : 국과수에서 접수대장에 기재를 생략한 문건중에는 특히 이 사건 전민련수첩과 관련된 경우가 3차례나 되는데, 전민련수첩과 관련하여 별다른 이유라도 있었나요

답 : 접수는 누락이 되어 있지만은 감정사항은 한꺼번에 복합적으로 해서 다 상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문 : 전민련수첩과 관련하여 접수를 누락한 별다른 이유는 없나요

답 : 없습니다. 업무상 편의를 돕기 위해 한꺼번에 모아서 한 것입니다.

문 : 국과수에서 '전민련수첩'에 관한 필적감정의뢰서를 처음으로 접수대장에 기재한 것은 1991. 5. 25자 검찰 강력 23110-013245 문건이 맞지요

360) 총자료집 II책 488쪽 참조.

361) 총자료집 II책 480쪽 참조.

답 : 예.

문 : 증인은 이 의뢰서에 대하여 '당소접수 4314호 관련 추가접수로 결재 생략함'이라고 기재하였지요

답 : 접수생략이지요

문 : 이것은 증인의 월권행위가 아니었나요

답 : 통상적으로 그렇게 많이 해왔습니다. 이 사건 뿐만 아니라 다른 사건에서의 얘기입니다.

문 : 국과수 문서분석실에서 이 사건 '전민련수첩'에 관한 감정의뢰서를 접수대장에 기재한 날은 문서절취선 일치여부에 관한 회보를 낸 1991. 5. 25.이었지요

답 : 예.

문 : 문서분석실에서 문서절취선 일치여부를 감정 의뢰받은 날은 1991. 5. 24.이고 이에 대해 회보한 날은 그 다음날이지요

답 : 예.

문 : 증인은 이 사건 전민련수첩에 관하여 문서절취선 일치여부를 감정하기 이전에 전민련수첩의 글씨와 유서글씨의 이동여부에 관한 감정을 이미 했었지요

답 : 예, 그럴 것입니다.

문 : 그에 대한 회보도 내부적으로 이미 작성하지 않았었나요

답 : 그것은 기억하지 못하겠습니다. 공식적으로, 내부적으로 감정이 끝났으면 감정서가 작성되어 있을 것이고, 그때까지 정리되어 있지 않다면 작성되어 있지 않을 것이지요

이때 재판장은 증인에게 막연히 대답하지 말고 정확하게 대답하라고 명령.

답 : 잘 모르겠습니다.

변호인 박연철

증인에게

문 : 증인은 이 사건 전민련수첩의 감정을 구하는 검찰의 1991. 5. 21.자 강력 23110-012752 감정의뢰 및 1991. 5. 25.자 강력 23110-013245 감정의뢰에 대해서는 위 의뢰서에 대한 것임을 명시한 회보를 작성하여 송부하지 않았지요

답 : 그중 어느 것인지 대호번호가 빠진 것이 있었는데, 어쨌든 이 감정사항이나 증거물은 빠져 있는 것이 없습니다.

문 : 이 두건의 감정의뢰에 대해서 대호번호를 기재하고 회보한 것이 없지 않은가요

답 : 1심때 보았을 때에 대호번호를 기재하지 않고 회보한 것이 한건 있었습니다.

문 : 증인의 기억으로는 한건인 것 같은가요 우리가 확인한 것은 두건인데요

답 : 아룡튼 그 당시는 한건 확인했었습니다. 그러나 감정사항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문 : 증인은 이 사건 전민련수첩에 관한 검찰의 1991. 5. 21.자 및 1991. 5. 25.자 감정의뢰에는 답하지 않고 1991. 5. 27.자 감정의뢰에 비로소 회보를 작성하여 송부하였지요

답 : 5. 27.자, 5.28.자 이런 것은 한꺼번에 감정서에 송부해보냈습니다.

문 : 왜 보다 앞서는 날짜의 감정의뢰에는 회보를 내지 않았나요

답 : 감정사항이 이미 결정된 것은 일찍 보내고, 아직도 감정사항이 결정되지 아니한 것은 같이 연관된 사건이기 때문에 후에 보내고 했습니다.

문 : 결론이 안났거나 정리가 안돼 내지 못했고, 맨 마지막 감정의뢰회보에 맞춰서 보낸 것이라는 뜻인가요

답 : 5. 27. 얘기입니까. 그때까지 온 것은 모두 그렇게 처리했습니다.

문 : 5. 21.자, 5. 25.자 감정의뢰에 답하지 않은 것은 5. 27.까지도 감정결과를 내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취지인가요

답 : 아니 그중에 빠진 것이 나중에 들어있는 것이 있다면 그렇게 처리했을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확실히 기억하지 못하겠는데, 만일 누락된 것이 다음에 포함되었다고 가정한다면 그렇게 정리되었을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확실히 기억은 못하겠습니다.

문 : 증인이 유서글씨와 전민련수첩을 비교감정한 결과는 최초로 언제 얻을 수 있었나요 위 수첩을 받은 지 며칠만이었나요

답 : 기억하지 못하겠습니다.

문 : 시간이 많이 걸렸나요
 답 : 기억 못하겠습니다. 감정서가 나갈 무렵이었을 겁니다.
 문 : 증인의 위 감정결과는 곧 신문기자들에게도 노출되었지요
 답 : 잘 모르겠습니다.
 문 : 증인은 위 수첩과 유서글씨를 대조감정한 이후 두 글씨가 동일하다는 것을 확인하고, 자신이 1991. 5. 17.자로 발송한 필적감정회보가 잘못되었음을 깨달았지요
 답 : 어느 부분이 잘못되었다는 것인가요
 문 : 잘못되었다고 생각 안했나요
 답 : 잘못되었다고 생각 안합니다.
 문 : 증인은 수첩을 감정하기 전에 1991. 5. 17.자로 강기훈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서와 유서의 글씨가 같다는 감정 의견을 1991. 5. 17.자 이화삼 2310-5370으로 송부한 사실이 있지요
 답 : 예.
 문 : 증인은 이 사건 전민련수첩이 김기설의 것이라고 하여 제출된 것이라는 설명을 들었지요
 답 : 확실한 기억은 없으나 의뢰서에 나와 있다면 그럴 것입니다.
 문 : 증인은 '유서와 강기훈의 진술서 글씨는 같다'는 감정을 이미 냈고, '유서와 김기설의 수첩글씨도 같다'라고 판단했었지요
 답 : 예.
 문 : 따라서 '강기훈의 진술서 글씨와 김기설의 수첩글씨가 같다' 이렇게 되어버렸지요

검사 신상규
 '김기설의 것이 분명하다는 것을 전제한다면'이라는 이 사항 질문은 잘못되었다고 이의신청.

변호인 박연철
 검사의 이의를 예상하고 신문사항에서 '김기설의 것이 분명하다면'이라는 것을 빼고 물어본 것이라고 진술.

재판장

검사의 이의신청은 이유 있다 결정고지.

변호인 박연철
 확인을 위해 다시 물어보겠다고 진술하고

증인에게
 문 : 증인은 이 사건 전민련수첩의 감정을 의뢰받을 때 '이것이 김기설의 것이라고 제출된 수첩'이라는 설명을 들었지요
 답 : 설명을 들은 것이 아니라 의뢰사항에 나와 있는데, 김기설의 수첩이라고 제출된 것인데 누가 썼는지는 모르는 것이지요
 문 : 그렇게 알고 감정을 했는데, 증인은 '유서와 김기설의 수첩이라고 제출된 수첩의 필적이 같다'고 감정하였지요
 답 : 감정서에 다 나와 있습니다.
 문 : 그러면 이것이 김기설의 수첩이 맞다고 한다면, 이미 감정한 강기훈의 진술서 글씨와 유서의 글씨와 같다고 한 감정결과와 모순된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나요
 답 :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문 : 문서절취선이 일치하지 않는다, 필압이 맞지 않는다는 착안은 언제 하게 된 것인가요

검사 신상규
 변호인은 명확한 사실에 대해 사실과 다른 전제를 가지고 유도신문을 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것은 질문으로서 성립될 수 없는 것이므로 이의 철회를 명하여 줄 것을 바라고 이에 이의신청.

재판장
 변호인의 신문이 질문으로서 성립되지 않는다는 이의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결정고지하고 다만 변호인에게 구체적으로 물어보아야 한다고 주의를 촉구하다

변호인 박연철
 신문사항대로 물어본 것이 아니라고 석명하고, 31항 신문의 내용을 석명하고, 32항의 신문은 철회한다고 석명하다(이 신문사항은 증인신문조서 말미³⁶²)에 별

362) 자료집 II책 587쪽 참조.

첨하다).
 증인에게
 문 : 증인은 수첩의 본체에서 떨어져 나간 장이 몇 장인지 또 떨어져 나간 부분의 순서가 어떻게 되는지는 알지 못하였다고 했지요
 답 : 1심에서 다 얘기했습니다. 4장이란 이야기를 들었다고 했습니다.
 문 : 순서는 어떻게 되었나요
 답 : 순서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순서는 구분하지 않았습다.
 문 : 그것을 알지 못하면서 문서 절취선과 필압의 검사를 완전하게 할 수는 없는 것이지요
 답 : 순서를 떠나서, 필압은 용지에 따라서 나타난 것이 있었습니다.
 문 : 증인은 이 건 필적감정을 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서울지검 강력부에 간 일은 없지요
 답 : 없습니다.
 문 : 감정인이 감정의뢰기관에 드나들면 감정의 중립성과 공정성이 침해될 수 있기 때문이었지요
 답 : 잘 이유가 없었습니다.
 문 : 이 발송대상 연번 5237, 발송일자 5. 15, 수신 서울지검, 분류번호 6으로 기재된 건은 이 사건 필적감정의뢰에 대한 최초의 회보발송사실을 기재한 것이었지요
 이때 변호인은 증인에게 증제 26호증의 3, 발송대상³⁶³)을 제시하다.
 답 : 예, 그런 모양입니다. 이 서류는 잘 모르겠습니다.
 문 : 위 서류의 기재 가운데는 감정회보의 발송방법은 인편이었고, 전달자는 '김형영'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이것은 증인이 직접 감정회보를 가지고 검찰청에 가서 제출한 사실을 기재한 것이 아닌가요
 답 : 아닙니다. 서무계에서 인수자가 누구냐고 해서 내 이름으로 해놓으라고 하여 찾아가 찾으러 온 분에게 전해졌습니다.
 문 : 다시 한 번 진술해 주십시오
 답 : 그 서류를 인수해 갈 때에 틀림없이 인수자를

363) 총자료집 II책 450쪽 참조.

적는데, 담당직원이 우리 실에 와 있었기 때문에, 내가 서무계에 연락하여 '인편으로 보낼 사람이 왔으니, 보낼려고 하니까 발송처리하여 우리 실로 보내달라' 하니까, '그러면 인솔자는 누구로 하면 좋겠느냐'고 해서 '내 이름으로 해라'해서 그 담당자가 내 이름을 적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무실에 가져와서 찾으러 온 담당자에게 전해졌습니다.
 문 : 그때 서울지검에서 찾으러 온 사람이 있었다는 얘기인가요
 답 : 예.
 문 : 그러면 그 사람이 서무계에 가서 찾아가면 될 것이 아닌가요
 답 : 그럴 수도 있고, 찾아가 줄 수도 있습니다.
 문 : 증인이 문서분석실로 찾아온 검찰청 직원을 위하여 '인편'이라고 기재한 것이었지요
 답 : 아닙니다. 서무계에서 처리한 것이지요
 문 : 나머지 감정회보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였나요
 답 : 바로 다 직접 찾아가간 모양이죠, 기록이 안되었다면.
 문 : 검찰에서 서무계로 가서 직접 찾아가간 것이라는 얘기인가요
 답 : 기록이 안돼 있으면 그렇고, 내 이름으로 되어 있다고 가정한다면 내가 일단 접수처리하여 나한테 보내달라고 해가지고 전해줬을 것입니다. 검찰에는 간 일이 없습니다. 바쁜 상황에서 그럴 여건도 아니었습니다.
 문 : 문서발송대상 연번 5657, 발송일자 5. 25, 수신 서울지검, 제목 감정의뢰회보란에 '검사 직접, 우성현'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무슨 내용인가요
 답 : 우성현이란 사람은 서무계 담당직원입니다. 자기가 전화로 듣는 것해서 자기가 사인해 놓은 것 같습니다.
 재판장
 증인에게
 문 : '검사 직접'이라고 쓴 것은 무엇가요
 답 : 그 직원이 쓴 것이니까, 검사가 직접 달라고 했다는 것인지, 검사가 직접 달라니까 전해주었다는

것인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서무계 처리상황에서 그렇게 정리된 것 같습니다.

변호인 박연철

증인에게

문 : 이 문서감정처리부는 누가 작성하는가요.

이때 변호인은 증인에게 증제26의 2, 문서감정처리부 364)를 제시하다.

답 : 실 직원이 작성합니다.

문 : 실 직원 혼자서 작성하는가요.

답 : 이영미, 이영수 둘 중 한 사람이 처리합니다.

문 :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증인이 작성하였나

요

답 : 제가 손댈 겨를이 없었습니다.

문 : 같은 장부중 접수번호 4407, 접수연월일 5. 27., 감정물 1.유서 2.수첩 3.강기훈 진술서에 대한 감정결과를 '1과 2는' 곧 유서와 수첩은 '상이한 필적'이라고 메모하였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 : 접수자 처리대장자가 적은 건데, 잘 모르겠습니다. 감정서가 중요한 것이지, 감정서와 다르게 기재되어 있는 게...

재판장

증인에게

문 : 그것은 누가 작성하였다는 것인가요.

답 : 이 필적을 보니 아마 남자직원 이영수가 작성한 것 같습니다. 다른 것은 여자직원 이영미가 작성한 것 같습니다.

변호인 김창국

증인에게

문 : 증인은 일본과학경찰연구소 문서연구실의 요시다, 타카사와, 이시하라 등을 알고 있는가요.

답 : 예.

문 : 증인은 위 요시다 등이 컴퓨터의 화상처리를 이용하여 필적감정을 하는 새로운 시스템을 개발한 사실을 알고 있는가요.

답 : 개발한 것이 아니라 공동연구를 하고 있습니

다.

문 : 위 사람들의외에도 나고야 대학의 요시무라 교수, 오사카대학의 마사히코 교수 등 학계에서도 컴퓨터를 이용한 문서감식에 관한 연구가 일본에서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요.

답 : 예, 한국에도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문 : 요시다와 다카사와가 공동집필한 논문을 보면 '이제까지의 필적감정이란 결국은 감정인의 눈으로 유사점과 상이점을 비교하는 형태로 행하여지기 때문에, 유사점 상이점이 어느정도 유사 또는 상이한가를 명확하게 설명하기가 곤란하다고 지적하고 있는데, 증인도 이 견해에 동의하는가요.

답 : 전적으로 동의하지는 않으나 상당부분 동의합니다.

문 : 이와 같은 종래 필적감정의 비과학성때문에 컴퓨터의 화상처리를 이용한 감정방법이 개발되고 있는 것이지요.

답 : 컴퓨터가 개발되었기 때문에 그런 연구가 진행된 것이지,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컴퓨터로 연구가 시작된 것은 아닙니다. 컴퓨터에 관하여도 양론이 있습니다.

문 : 이것은 누가 작성하였나요.

이때 변호인은 증제27의 25, 문서분석실 인원조정 및 직제개정(365)을 증인에게 제시하다.

답 : 우리 실에서 만들었습니다.

문 : 실에서 만들어 검찰에 제출한 것인가요.

답 : 어느 때 제출된 것인지는 모릅니다.

문 : 이 개정안 첫 페이지를 보면, 문서분석실의 업무량은 필적감정 2,815건, 인영감정 503건, 기타 311건으로 합계 3,629건인데, 일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하고 하루평균 약 12건을 처리하여야 하고 감정인 4인이 분담하여 단독처리를 하더라도 한 사람이 1일 평균 3건을 처리하여야 한다는 계산이 나오는데, 과연 그와 같은 업무량을 감당할 수 있는가요.

답 : 감당해왔습니다.

문 : 증인은 제1심 법정에서 필적감정의 경우 1건당 보통 1주일이 걸린다고 진술한 바 있지요.

답 : 예, 그렇습니다.

364) 총자료집 II책 515쪽 참조.

365) 총자료집 III책 313쪽 참조.

문 : 일본인 오오니시는 1건당 최소한 10일 내지 15일이 걸린다고 진술하였는데, 증인도 알고 있지요.

답 : 외국의 경우에는 한달도 걸리고 두달도 걸리는 데가 있습니다.

문 : 외국은 우리나라보다 더 오래 걸립니까.

답 : 그것이 정해진 것이 아니라 그 나라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상황에 따라 3일, 5일, 7일에 결정되는 것도 있고, 어떤 것은 일주일, 보통, 20일에 걸려서 결정되는 것도 있습니다.

문 : 증인에게 증제28의 1, 2(366)를 제시합니다.

검사 신상규

변호인 김창국의 신문사항 7-10항은 본 건 심리와 직접 관계가 없는 것이므로 신문을 제한하거나 입증취지의 석명을 구할 것을 바라고 이에 이의신청(변호인 김창국의 신문사항은 증인신문조서 말미(367)에 편철하다).

변호인 김창국

증인의 탄핵을 위하여 반드시 신문해야 한다는 취지의 진술.

증인

변호인 김창국의 신문사항 7-10항에 관련된 감정은 누가 감정하고를 떠나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그 관계 서류가 아직 남아 있으며, 또한 무죄판결이 확정되어 저의 억울함이 밝혀졌고, 그래서 다시 복직된 사건이므로, 지금 변호인측은 다분히 언론을 의식하고 나의 엉뚱한 상황을 자주 부각시키려는 의도같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재판장

무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건이므로 이에 관한 신문을 제한한다, 결정고지.

변호인 김창국

증언을 거부하더라도 신문은 허용해줄 것을 바란다고 진술.

366) 신문 제한으로 기록에 없음.

검사 신상규

위 사건과 관련하여 변호인이 제출한 증제 28의 1, 2, 3, 4, 5, 6은 그 사본의 복사상태가 매우 불량하므로 이를 기초로 증인에게 인영이 동일하다는 등의 신문을 하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신문 자체를 허용하지 말 것을 바란다고 진술.

재판장

무죄판결이 확정된 사건에 관하여, 당시의 감정의 진위를 가리려 하는 것은 확정판결을 공격하는 것이 되고, 증인도 증언을 거부하므로 변호인 김창국의 신문사항 7-10항은 이를 제한한다, 결정고지.

변호인 김창국

증인에게

문 : 증인은 금년 1월 중순경 서울시경에 연행되어 조사받은 사실이 있지요.

답 :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문 : 증인이 서울시경에 연행되었을 때 서울지검 형사 1부에 그 사실을 전화로 알린 적이 있는가요.

답 : 답변 안하겠습니다. 없습니다.

문 : 그러면 조사받고 나와서 서울지검에 그 조사 받은 내용을 알린 사실은 있는가요.

답 : 답변 거절하겠습니다.

문 : 신문보도에 의하면, 증인의 연락을 받은 검찰 간부가 경찰간부에게 전화를 해서 증인이 허위감정과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면 경찰 몇 명은 옷 벗을 각오를 하라고 호통을 쳤는데, 증인은 그 사실을 알고 있는가요.

답 : 모릅니다.

검사 윤석만

증인에게

문 : 필적감정에 있어서 대조자료를 1차 육안으로 검토하고 2차로 분류시험검사를 거쳐 그 증거물의 특징을 관찰한 후 고정밀비교확대투영기 등 장비를 이용, 감정물과 비교하는 것이지요.

367) 자료집 II책 587쪽 참조.

답 : 예.

문 : 이 경우 필의 구성상의 여러가지 형태, 배자형태, 운필형태에 다른 필의 방향, 필의 연결부분과 교차되는 위치, 필획간의 연결부분에서 기필점과 종필습성, 필압의 형태, 숙련과 비숙련 형태 등에서 나타나는 특징을 현출하여 대조하는 것이지요.

답 : 예.

문 : 특히 문자획이 단조로운 한글에 있어서는 몇자만 써도 일반적인 유사성이 흔히 나타날 수 있으므로 일반적인 유사성인지 개인 고유의 특성 내지 잠재습성인지를 전문가의 지식과 풍부한 경험으로 판단하여 현출, 대비하는 것이 필적감정의 중요한 기준이지요.

답 : 예.

문 : 이 경우에도 기재장소와 자세, 기재당시의 건강, 심리상태에 따른 변화점을 개인 고유의 특성 내지 잠재습성으로 혼동하여서는 아니되는 것이지요.

답 : 예.

문 : 필적감정에 있어 동일특징비율에 따라 판정하는 기준은 국내외적으로 이를 일용의 기준으로 삼고 있는 것이고, 이 경우 특징은 일반적으로 평범하게 나타나는 유사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회소성 있는 부분을 말하는 것이지요.

답 : 예, 모든 감정을 다 그렇게 해 왔습니다.

문 : 필적감정에 있어서는 이러한 회소성 있는 특징을 현출시켜 이를 기준으로 하는데, 이렇게 나타난 회소성 있는 특징의 총수를 100이라고 할 때, 대조자료 중 동일하게 나타나는 회소성 있는 특징수의 비율이 70퍼센트 이상일 경우에는 동일하다, 45퍼센트 이하일 경우에는 상이하, 45-60퍼센트일 경우에는 이 동식별불명이다, 60-70퍼센트일 경우에는 그 특징이 필적감정전문가의 경험과 지식에 따라 극히 회소하게 발견되는 빈도의 특징이면 동일한 것으로, 그 특징의 회소도가 낮으면 이 동식별불능으로 결론을 내리는 것이지요.

답 : 예.

문 : 또한 이 경우 회소성 있는 특징을 찾아 이를 기준으로 삼자면 한글감정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추어야 하고 외형상의 구성만을 문외한이 대조하면 극히

위험한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지요.

답 : 예, 그렇습니다.

문 : 쉬운 예를 들어 미음자를 3획으로 쓴다는 것은 회소성 있는 특징이라고 할 수 없는 것으로서, 어떤 문서를 감정할 때 대조문서에서 미음자를 3획으로 쓴 것이 70개 이상 나왔다고 하여 동일특징비율이 70퍼센트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되는 계산방법이지요.

답 : 예.

문 : 그렇기 때문에 회소성 있는 특징을 추출해낼 수 있는 전문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갖춘 감정인이 필요하고 과학수사장비가 필요하며 그중에서도 기재여건에 따른 변화점을 배제시켜야 하는 것이지요.

답 : 예, 그렇습니다.

문 : 증인의 필적감정경험에 의하면 처음 육안으로 관찰할 때 외형상 유사성이 보였던 필적이 정밀기기로 분석해보면 차이점이 보이고, 외형상 차이점이 보였던 필적이 정밀기기로 분석해보면 동일한 경우가 종종 있지요.

답 : 예, 있습니다.

문 : 그리고 70퍼센트 이상 회소성 있는 특징 내지 잠재습성이 나타날 경우 동일판정을 한다는 의미는 수치의 평면적, 산술적 계산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 의미가 그런 것이라면 성명 3자의 필적을 감정하는 것과 같은 것은 불가능한 것이지요.

답 : 예, 성명 3자같은 경우에서도 그 특징이 뚜렷한 경우라면 퍼센트 문제를 떠나서 이동여부를 가릴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문 : 따라서 어느 나라에서나 필적감정을 할 경우 동일특징비율의 퍼센트를 산술적으로 계산, 이를 감정서에 기재하지는 않는 것이고, 증인이 15년여 동안 감정을 하면서도 동일특징비율의 퍼센트를 감정서에 기재한 적은 단 한번도 없지요.

답 : 예, 없습니다.

문 : 증인이 감정한 김기설 명의의 유서, 수첩 등의 필적과 김기설이 쓴 편지, 주민등록본실신고서, 이력서 등의 필적은 증인의 필적감정 경험과 전문지식으로 볼 때 동일인이 평소 자유자재로 구사할 수 있는 두 가지 필적이 아니지요.

답 : 그런 것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시하다.

답 : 예.

문 : 위 진술서에 첨부된 대조표의 필적은 증인인 사본에서 오려내어 붙인 것이지요.

답 : 예.

문 : 유서와 강기훈의 자술서 필적은 모두 기재과 정상의 변화점이 나타나 있었고, 이러한 변화에 공통점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서 일반적으로 흔히 여러 사람에게서 공통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유사성과 기재과정상의 변화상태를 검토한 후 그 중에서 나타나는 회소성 있는 특징만을 구분해 보았지요.

답 : 예.

그후 검사 윤석만이 증인에게 별첨 검사 신문사항 23항-25항을 질문하고 이에 증인이 답변을 하였을 때 (위 신문사항은 조서 말미³⁶⁹)에 편철).

변호인 김창국

검사의 신문은 반대신문의 범위를 넘은 것이므로 허용될 수 없으므로 발문의 철회를 명하여 줄 것을 바라고, 이러한 신문의 금지를 구한다고 이에 이의신청.

검사 윤석만

검사의 신문은 반대신문의 범위내라고 진술.

재판장

변호인의 주신문이 전 범위에 걸쳤으므로 검사의 반대신문은 그 범위를 넘은 것이 아니므로 변호인의 이의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결정고지.

그후 검사 윤석만이 증인에게 별첨 검사 신문사항 26-28항을 질문하고 이에 증인이 답변을 하였을 때 (위 신문사항 조서 말미³⁷⁰)에 편철).

변호인 김창국

368) 총자료집 II책 310쪽 참조.

369) 총자료집 II책 588쪽 참조.

370) 총자료집 II책 588쪽 참조.

문 : 수첩의 전화번호란 절취선 일치여부에 관하여 감정의뢰되었을 때 수첩에 체본되어 있는 상태가 지급과는 달리 견고했었지요.

답 : 예, 떨어져 있었어도 이렇게 되어 있지는 않았 습니다.

문 : 또 분리된 전화번호란이 수장을 넘을 수 없었고, 수첩 전화번호란의 절취된 부분과 모눈종이란 사이에 2장이 온존하게 붙어 경계를 이루고 있었지요.

답 : 예.

문 : 그리고 육안상 수첩 잔류부분이 절취면의 절취선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이 관찰되었지요.

답 : 예.

문 : 또한 현미경관찰에서도 잔류부분이 절취면의 절취선과 일치하지 않는 것이 관찰되어 사진을 찍는 것이지요.

답 : 예, 여러 사람이 다 한꺼번에 그렇게 보고서 그것은 다 인정했습니다. 문서감정실 뿐 아니라 물리실에서도 그렇게 보았습니다.

문 : 당시 현미경 관찰결과 수첩 전화번호란에 잔류부분 3매는 감정서에 번호를 매긴 순서대로 돌출하여 잔류되어 있었고, 돌출부분 각각이 뜯어진 3매와 모두 겹쳤지요.

답 : 예.

문 : 당시 감정과정에서 온전한 수첩과 대조할 때 4매가 절취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으나 잔류부분은 육안과 현미경 관찰시 3매만이 보였지요.

답 : 예.

문 : 따라서, 절취된 전화번호란이 감정의 대상인 수첩에서 떨어진 면이라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얻은 것이지요.

답 : 예.

문 : 증인은 1991. 10. 9. 및 10. 23. 이 사건 1심에서 감정인으로서 증언한 후 당시 재판장께서 감정결론에 이르게 된 이유 등을 서면으로 정리해 제출하라고 지시하여 진술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지요.

답 : 예.

문 : 이것이 그 진술서인가요. 이때 검사는 증인에게 공판기록 1146-1162³⁶⁸)면을 제

검사의 구체적이고 자세한 질문에 대해 증인은 검토도 하지 않고 기계적으로 답변하고 있다는 취지의 이의신청.

검사 윤석만

증인이 이미 제출한 증인작성의 진술서에 관하여 질문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이의신청은 이유 없다고 진술.

재판장

변호인의 이의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별첨 검사신문사항 23항 이하의 검사의 신문절차를 명한다 결정고지하고 이 부분에 관하여 증인에게 설명하라고 명령하다.

이때 재판장은 증인에게 공판기록 1161면-1162면의 증인이 작성 제출한 진술서를 제시하다

증인 김형영

'생'자에 대해 살펴보면, 유서에 두군데 있는 '생'자 중에서 시옷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제1획에서 제2획을 마치는 종필이 위로 올라가있고, 다음의 형태 즉 'ㄱ'자 부분에서, 제2획에서 제3획으로 연결되는 부분의 각도가 위에서부터 차츰 좁아지는 특징이 나타나 있는데, 위와 같은 특징이 자술서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 있었습니다. 감정서에 사진을 철하는 것은 대표적인 것을 선별했기 때문에 거기에 참조하지 않은 부분을 가능하면 선택을 하여 다시 도표를 만들어서 이해를 돕기 위해 첨부한 것입니다. '형'자 부분에서도 유서의 '형'부분과 자술서의 '경'자의 'ㄱ'부분에서 제2획에서 제3획이 올라갔다 내려와야 하는데, 이와같은 통상적인 형태를 취하지 아니하고 제2획에서 바로 아래로 내려가는 형태 즉 'ㄱ'으로 되어 있었고, '선, 준, 인, 진'에서는 니은 받침을 침범하여 그 아래까지 내려가는 형태, '문, 분'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에'자 부분의 연결부분이 '에'의 이음이 떨어져 있는 형태 즉 'ㄴ'과 붙어있는 형태 즉 'ㄴ' 등의 두 종류로 나타나 있는데, 이와 같은 두 종류가 자술서에서도 같이 나타난 부분입니다. '위'자에 대해서 살펴보면, 유서에서의 '위'자는 다소 기형적인 것처럼 '우' 부분

이 'ㄱ'로 나타나 있는데, 이렇게 기형적으로 '우'부분을 쓰는 습성이 자술서에서도 찾아볼 수 있었고, '오'자에서도 정상적으로 기재하면 이음 밑에 'ㄱ'를 해야 되는데, 이음의 중간부분을 침범해서 쪽 아래로 내려오는 형태 즉 'ㄱ'이 유서와 진술서에 공통으로 나타나 있었고, '진'자 부분에서도 'ㅈ'의 기필부분이 아래에서 시작하여 위로 올라가는 형태이며 제2획의 종필형태가 빠져 올라간 형태, 또 이를 구성하는 각도 등에서 회소성 있는 특징이 진술서와 유서에서 똑같이 나타나고 있는 부분을 사진에서 도표로 처리했습니다. 그외에 'ㅅ, ㅈ'부분에서도 공통적으로 나타나 있었고, 'ㄹ'자에 대해서도, 유서에서 미음자가 제2획으로 구성되는 형태, 즉 'ㄹ', 제2획과 제3획이 연결되는 형태, 즉 'ㄹ', 제1, 2, 3획이 모두 한획으로 되어있는 형태, 즉 'ㄹ'과 이의 완만한 형태, 즉 'ㄹ'의 4가지 형태가 나타나고 있는데, 이러한 형태가 자술서에서도 똑같이 나타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미음을 기재하면 한두 가지는 가능하면 기재할 수 있지만, 3가지 4가지가 한꺼번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볼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또 '면, 련, 력'자를 살펴보면 'ㄱ'부분의 제1획과 제2획의 우측으로부터 좌측으로 연결되는 과정에서 필의 방향과 필획간의 간격에 차츰 좁아지는 형태가 진술서의 '연, 결, 렐, 련'자에서도 나타나고 있었는데 이것이 참조된 자료에 첨부된 것입니다. 그외에 '고'자, '해, 정, 책'의 'ㄱ'자 부분, '일, 결, 열', '것, 엇' 이러한 여러군데의 형태를 쪽 도표로 다시 해서 첨부해서 넣었습니다. 그러한 사항에 대한 질문이었으므로 제가 그 질문사항에 대해 바로바로 대답할 수가 있었습니다.

재판장

증인에게

문 : 그 설명은 이상인가요

답 : 도표에 관한 것이므로 대략적으로만 설명한 것입니다.

검사 윤석만

증인에게

문 : 그 당시 현미경 등 정밀기기에 의한 관찰에서

유연한 운필형태와 필압형태, 사진에서는 잘 나타나지 않는 미세한 개인의 습성 등에서도 공통적인 유사점이 다수 관찰되었지요

답 : 예.

문 : 그외에도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유사성 부분 특히 'ㄹ'을 제1획으로 구성하는 형태, 'ㄴ'을 제2획으로 구성하면서 종필형태의 방향 등에서 나타난 다수의 유사점도 평범한 유사점이므로 참조하였지요

답 : 예.

문 : 다만 유서의 'ㄱ'부분에서 제1획의 기재방향이 우하방과 좌하방의 두 종류가 있는데, 이는 김기설의 필적에서도 강기훈의 필적에서도 나타나지 아니하므로, 최근에 변화된 필법의 변화상태로 생각되었지요

답 : 예.

문 : 결국 유서와 자술서에는 위와 같은 회소성 있는 개인 교유의 특징이 동일하다는 것이 다수 관찰되었으므로 유서와 자술서는 동일한 필적으로 감정한 것이지요

답 : 예.

문 : 또한 위와 같은 회소성 있는 개인 교유의 특징이 유서와 김기설의 편지 등 필적에서는 전혀 동일하게 발견되지 않아 상이한 필적으로 감정한 것이지요

답 : 예.

문 : 증인이 이견과 관련하여 검찰의 의뢰공문을 총 13차에 걸쳐 받았는데, 그중 5. 13자, 5. 21자, 5. 24자, 5. 27자, 5. 28자 5개는 접수부에 기재가 되지 않았는데, 그 공문은 일반문서 수발계통에 따라 총무과 서무계에 접수하지 않고, 인편으로 받았으므로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감정문서 접수대장에는 기재되어 있지 않지요

답 : 예, 감정의회항과 증거물 등은 모두 한꺼번에 감정서에 포함되어서 누락되어 있지 않습니다.

문 : 그러나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보관한 감정회보서 부분철에는 위 감정의회 및 회보공문이 모두 보관되어 있지요

답 : 예, 보관되어 있습니다.

문 : 당시 이 감정과 관련하여 증인이 의뢰받은 공

문이나 회보한 공문을 증인이 없애버린 일이 있는가요

답 : 전혀 없습니다.

문 : 증인은 5. 21자, 5. 28자의 의뢰공문에 증인 자신이 접수생략 문구를 기재하였지요

답 : 예.

문 : 통상적으로 한 사건에 관하여 계속 관련 내지 중복되는 감정의회공문이 올 경우 접수를 생략해온 것이 종전 국과수 판례상 있었지요

답 : 예, 그렇습니다.

문 : 증인이 이 의뢰공문과 회보공문을 감정서 부분철에 편철하였는데, 그 공문은 준영구로 보존되는 문서지요

답 : 예.

문 : 검찰의회공문 강력 23110-013245, 012752의 2개의 공문이 회보서에 대호변호가 기재되어 있지 않지요

답 : 예, 1심에서는 하나가 빠져 있는 것으로 알았는데, 종전에 확인해보니 2개가 빠져 있었습니다.

문 : 그것은 수차에 걸쳐 의뢰된 데 따라 착오로 누락된 것으로 그 의뢰내용에 대한 회보는 다 되어 있는 것이지요

답 : 대호번호만 빠져있지, 거기에 대한 감정, 증거물, 의뢰사항은 빠져 있는 것이 없습니다.

문 : 당시 증복된 내용의 의뢰가 수차 옳므로 검찰에 문의하여 정리, 회보한 것이지요

답 : 아까 정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서 정정했는지 확실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문 : 일반적으로 감정의회 취지가 불명확하고 중복될 경우 의뢰대상이 정확히 무엇인지 묻는 경우가 있는가요

답 : 많습습니다.

문 : 증인의 경험과 지식상, 감정대상은 필적의 은폐, 조작이 없는 평소의 필적이면 더욱 좋은 것이지요

답 : 예, 제일 좋습니다.

문 : 증인의 경험으로, 시필을 시켰는데 대상자가 작심을 하고 의도적으로 다른 필체를 구사하여 감정이 불가능했던 경우가 있었나요

답 : 종종 있었습니다. 의식적으로 기재했을 때 특히 글자수가 적었을 때 그러했습니다.

문 : 현재 돈을 받았다고 구속된 사건에서, 감정판 결과는 재감정서에도 정확한 감정임이 확인되었고, 증인 자신이 돈을 받고 부탁한 사람에게도 불리한 결과의 감정이라도 감정을 그대로 회보하였지요.

답 : 사실 감정사항에는 전혀 변함이 없습니다.

변호인 박연철

증인에게

문 : 증인이 감정서에 피고인의 필적과 유서의 필적이 같다면 적시한 그 글자들이 필의 방향과 필세가 다르다는 것은 인정을 하는가요.

답 : 필적을 가지고 한마디로 '필세가 같다', '필의 방향이 같다, 다르다'는 것을 정확하게 구별하기는 어렵습니다. 어느 부분은 필세가 같고, 어느 부분은 필압이 같고, 어느 부분은 회소성 있는 특징이 같다는 것이지, 무조건 '어느 것이 필세가 같다'고 한마디로 말할 수는 없습니다.

재판장

증인에게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답변하라고 명령.

변호인

증인에게

문 : 5.17.자 감정서의 감정의견 바로 다음장에 있는 것을 예로 들어 물어보겠는데, 여기에 '학생들이' '생각한다', '생각합니다' 이렇게 대비가 되어 있는데, 위의 '학생들이'는 강기훈의 진술서이고, 아래는 메모와 유서인데, 맨위의 '학생들이'는 대체로 필의 방향이 우하방이고, 아래의 두개, 비교한 것은 수직이거나 직선방향인데, 그것은 맞는가요.

이때 변호인은 증인에게 수사기록 413-414장³⁷¹⁾을 제시하다.

답 : 좌하방 같은 것도 있으나 '생'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문 : '학생들이'에서 '생'자는 거의 수직방향인데, '학', '들', '이'는 우하방이 맞지요.

답 : '들', '이'는 거기서 직접 연결된 필적이 없으니 그것과 대비하기는 어려웠었죠, 이 상태대로는.

문 : 대비하기 어렵다고 얘기하지 마세요 이것은...

답 : 여기만 비교한다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필적하고 같이 비교한다면 몰라도...

문 : 이것은 한줄을 수평으로 올긴 대비문자가 틀림없지요.

답 : 그것은 대표적으로 '생'자가 아닙니까.

문 : 증인은 '생'자만 보았는데, 변호인들의 눈에는 다른 글씨도 다 보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글씨에 대해서 물어보는데, 거기에 대해 감정인이 대답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학생들이'에서 이 글씨는 대체로 우하방이 맞지요.

답 : 필적은 용지를 어느 부분에 놓고 어느 자세에서 썼느냐에 따라 다소 필의 전체적인 방향은 변할 수도 있습니다.

문 : 증인은 이 글씨들을 각기 수평방향에서 그대로 정위치에서 옮겨 놓은 것이지요.

답 : 필적이라는 것은 그 기재된 사항의 특징이 중요한 것이지, 필적의 일부가 '오른쪽으로 기울었다', '왼쪽으로 기울었다'고 하는 것은...

재판장

증인에게 예, 아니오라고 구체적으로 답변하라고 명령.

변호인 박연철

증인에게

문 : '학', '들', '이'는 우하방의 경향을 띠고 있지요.

답 : 예.

문 : 보는대로 대답해주시지요.

답 : '들', '이'는 그렇습니다. '학'은 거의...

문 : '학'도 조금 우하방쪽으로 틀어진 것 아닙니까. 같이 보면서도 다른 얘기를 하고 있으니...

재판장

변호인 박연철에게 증인의 대답을 강요하지 말 것을 명령.

상물에도 많은 차이점을 발견하였나요.

답 : 많은 차이점이 아니라 차이점이 당연히 있지요. 동일하다고 해서 완벽하게 동일한 것은 없습니다. 70퍼센트라는 것이 그런 뜻이 아닙니까.

변호인 이석태

증인에게

문 : 예를 들어 '생'자의 경우, 증인은 이렇게는 해보았나요. 즉 유서에는 '생'자가 총 몇개가 있고, 진술서에는 '생'자가 총 몇개가 있는데, 그중에서 유서와 진술서에 있는 '생'자에서 증인이 동일하다고 판단한 그 부분이 유서에는 몇개가 있고, 진술서에는 몇개가 있어서, 양자의 '생'자에 관한 동일비율이 몇 퍼센트니까 적어도 '생'자에 관해서는 유서와 진술서에 있어서 동일특정비율이 몇 퍼센트다 하는 방법으로 하였나요. 마찬가지로 '형'자 '신'자의 경우도 이러한 방법으로 하였나요, 아니면 증인이 쪽 이야기한대로 '생'자 부분을 보니까 몇개인지 잘 모르지만 동일한 부분이 있고, 또 '형'자..., 이렇게 쪽 한 것입니까. 제가 처음에 이야기한대로 '생'자, '생'자 양쪽에서 골라서 비율을 계산해서 했습니까. 그렇게 안했지요.

답 : 비율은...

문 : 그렇게 안했지요. 그것만 답변해주시지요.

답 : 비율은 몇자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몇자는 어떻게 하고, 몇자는 어떻게 하고는 하지 않았습니까. 그 중에서 나타나는 공통적인 특징점을 찾은 것입니다.

문 : 증인이 지금 '생'자 '형'자 등 증인이 제시한 모든 자에 있어서, 양쪽에 있어서 각각 그 자들이 총 몇개가 있고 그중에서 동일부분이 몇개가 발견되어서 비율이 몇 퍼센트 이상이다 이렇게 감정한 바는 없다. 그 다음에 한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검사 신상규

변호인이 정리된 신문사항도 아닌데 일방적으로 결론을 내리고 있으니 증인이 답변한대로만 조서에 기재해 달라고 진술.

변호인 이석태

변호인 박연철

증인에게

문 : 지금 '학생들이'에서 '이'는 종필부분을 가압하지 않고 바로 내리긋은 것은 맞게 보입니까.

답 : 예.

문 : 아래의 '생각한다'에서 '다'는 위에서 아래로 내리긋는데, 밑에 내리긋으면서 가압한 것은 맞습니까.

답 : 예.

문 : 그러니까 맨위의 것은 가압하지 않고 그대로 빼쳤는데, 3항은 어떻게 됩니까.

답 : 바로 빼쳤지요.

문 : 이것은 가압했다든지 가압하지 않았단든지 이게 분명히 드러나지 않는 것입니까.

답 : 3항의 '니'자 이야기입니다.

문 : 예, '니'자.

답 : 그것은 그대로 빠진 형태지요.

문 : 증인은 동일한 부분이라고 '생', '경', '연' 등 여러 부분을 제시했지만, 동일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했나요.

답 : 필적감정에서 그 결과가 동일할 때는 동일한 표시만 하고, 상이할 때는 상이한 표시만 합니다.

문 : 감정대상물 가운데 동일하지 않은 부분이 있는지 확인하였느냐는 질문입니다.

답 : 동일한 부분, 상이한 부분을 다 정리해서 사진을 첨부한다면 사건 하나에 책 1부도 모자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정을, 특징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바 이 필적은 동일하다는 결론이 나왔을 때 그 동일한 특징부분을 필요에 의해 필요부분을 선별하여 사진을 작성 첨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동일한 경우는 동일하다는 표시만 되어 있고, 상이한 경우는 상이한 표시만 되어 있습니다. 어느 감정서도 똑같습니다.

문 : 증인은 이 필적들 가운데 다른 부분은 전혀 발견하지 못하였나요.

답 : 완벽하게 같은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동일하다고 결론이 나왔을 때 동일한 부분만 그렇게 한 것이고 어느 필적이나 차이점은 다 있습니다.

문 : 어느 필적이나 차이점이 다 있듯이 이 감정대

371) 총자료집 I 책 169쪽 참조.

증인에게

문 : 증인은 조금 전에 제가 질문한 취지를 이해할 수 있는가요.

답 : 예.

문 : 그것에 대해 제가 정리한 부분도 맞는가요.

답 : 대비한 숫자가 몇 자고 하는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는 않았습니

다. 문 : 검사의 반대신문 58항에 관한 것인데, '현재 돈을 받았다고 구속된 사건에서 감정된 결과는 재감정시에도 정확한 감정임이 확인되었다'고 답변하였지요.

답 : 예, 3년째 하는 감정서를 이번에 모두 조사했습니다.

문 : 구속된 사건에서 문제된 감정결과는 모두 몇 건이었나요.

답 : 막연한 상태에서 허위감정을 했다는 것이어서 저도 모릅니다. 허위감정을 했다는 보도였는지, 어떤 사건이 허위감정이라는 것은 조병길사건이 대표적인 것 하나지요.

문 : 그럼 이것은 답변하지 않아도 좋은데, 검찰 보도에 아까 1,035만원의 얘기가 나왔었는데, 각각의 증인이 돈을 받은 감정건이 문제된 것이 아닌가요.

답 : 예, 그게 문제된 겁니다.

문 : 그러면 어째서 증인은 한건만이라고 이야기하죠.

답 : 허위감정을 이야기해서 하는 겁니다.

문 : 다른 것은 허위감정한 것이 없는 것입니까.

답 : 허위감정과 관계가 있는지는 모르지만, 돈 받은 사건에 대해서는 전부 제검토를 하고 재감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 : 그것이 몇 건인가요.

답 : 그것은 몇 건인지 잘 모릅니다.

문 : 증인이 모른다고 하면서 재감정한 것은 어떻게 아는가요.

답 : 제가 조사받으러 다니면서 서류도 다 갖다놓고 다 그렇게 검토했습니다. 몇 건인지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문 : 몇 건인지 모르는 것을 다 재감정을 했는가요.

답 : 다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 : 그래서 다시 증인의 감정이 옳다고 확인이 되었나요.

답 : 그것은 제가 옳다고 해서 옳은 것이겠습니까, 재판을 해 봐야 알겠지요.

변호인이 다시 물어보려 하자

재판장

이를 제지하고

증인에게

문 : 증인은 위 사건에서 허위감정이 문제되어 기소된 것이 있는가요.

답 : 없습니다.

재판장

변호인에게 이러한 것을 전제하고 증인에게 질문을 할 것을 고지.

변호인 이석태

증인에게

문 : 증인이 재감정을 하여 확인을 받았는데, 재감정을 하였나요.

답 :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 : 어디에서 하였나요,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하였나요 아니면 제3의 장소에서 하였나요.

답 :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한 것은 아니었고, 어디에서 한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문 : 그러면 증인이 재감정하여 정확한가를 확인했다는 것은 무슨 말인가요.

답 : 그랬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 : 증인의 짐작인가요.

답 : 예.

문 :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외 다른 감정기관이 재감정을 하여 증인의 몇몇번 감정이 옳다고 다시 확인된 것으로 추측한다는 뜻인가요.

답 : 저도 그건 보도에서 본 것 같습니다.

문 : 어느 보도에서 보았나요.

답 : 어느 신문에서 본 것 같은데, 기억 못하겠습니다.

재판장

증인에게

문 : 증인이 국과수에 있을 때 정식감정원은 모두 몇 사람이었나요.

답 : 저까지 포함하여 모두 4사람입니다.

문 : 보조원도 있는가요.

답 : 보조원이 두 사람 있습니다.

문 : 공동심의할 때는 정식감정원은 다 들어가는 것인가요.

답 : 예, 그렇습니다.

문 : 그 사람들 사이에 아무런 이의가 없었는가요.

답 : 예.

문 : 이렇게 논란이 되는 사건에서는 보통 기대하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이의가 실제 없었나요.

답 : 예, 없었습니다.

문 : 증인은 1심에서부터 증언을 해 왔는데, 구체적인 것은 어떻게든, 증인의 감정기준을 요약해서 설명해 줄 수 있는가요.

답 : 어렵습니다만 저희들이 하고 있는 모든 사건을 다 그런 식으로 해왔습니다. 또 전에도 그렇게 했고, 이웃 일본에서도 같은 형태고, 일본 형태를 잘 아는 것은 우리가 일본에 연수를 가서 일본의 감정서를 검토해보고 압니다만, 그래서 그런 기준을 가지고 여태까지 크고 작은 많은 사건들을 처리해왔습니다. 그것이 저의 방법이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하고 있는 필적감정의 기준이나 방법이 그런 형태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문 : 기본적으로는 모든 사람의 필적이 다 다르다는 전제에서 필적감정이 이루어지는 것인가요.

답 : '개인마다 특성이 있다', '개인만이 가지는 자기의 희소성 있는 특성이 있다' 그 특성을 찾아 비교하여 이동여부를 밝히는 것입니다.

문 : '특성'에 대해서 더 설명해 줄 수 있는가요.

답 :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나타나는, 기필부분이 설명 리올을 써도 이렇게(손으로 허공을 그리며) 시작하는 리올이 있고, 이렇게(손으로 허공을 그리며) 시작하는 리올이 있듯이, 처음 시작했을 때 곡선 부분, 마지막 부분, 연결 부분, 어느 자음과 모음이 연결되었거나, 떨어졌거나, 침범했거나 어느 부분을 특별히

강하게 썼거나, 이 감정서에 하나씩 표했던 것 그런 것들을 모두를 다 합해서 우리가 '희소성 있는 특징'이라고 합니다. 그런 특징을 찾아가지고 우리가 감정을 합니다.

문 : 현재 피고인이 구속되어 있는 사건처리는 어떻게 되어 있나요.

답 : 얼마 있다가 심리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 : 죄명은 무언가요.

답 : 뇌물수수로 알고 있습니다.

피고인

증인에게

문 : 제가 6. 24 출두해서 그 다음날엔가부터 자술서를 쓰기 시작했는데, 자술서를 한장씩 자저갈 때마다 지금 검찰에서 신문한 것과 같은 '이런 필적은 이런 부분과 같다'라는 내용을 제가 들은 적이 있어 물어보는 것입니다. 증인은 91. 6. 25.이나 6. 26.경에 검찰청에 온 일이 없습니까. 김실장님.

답 : 잘 기억을 못하겠는데요 언제 말인가요.

문 : 91. 6. 25.이나 6. 26. 또는 6. 27.쯤 검찰청에요. 확실히 대답해주시기 바랍니다.

답 :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문 : 백번을 양보하여 김 실장님이 검찰에서 '여러 사람이 썼을 가능성이 있다', '세 사람인 것으로 알았다'라고 한 얘기를 받아들여더라도, 그 필적감정이 유서와의 동일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라면 필적감정서에 '총 업무일지 3장중 첫째 장과 둘째 장의 중간부분 한줄을 제외한 나머지는 유서필적과 같다' 이렇게 필적감정서를 내야 올바른 것 아닙니까.

답 : 1심에서부터 오늘도 그걸 지적당했지만은 그렇게 세부적으로 못했던 것은...

문 : 세부적으로 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해야 올바르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답 : 그러니까 그렇게 했으면 옳았다는 말도 맞는데, 계속해서 이야기지만 우리가 '이 필적은 몇 사람의 것이냐' 하는 것을 중요시한 것이 아니라 유서와 이동여부를 위하여 유서하고 같은 것만 있는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세심하게 신경을 쓰지 못해 세목적으로 기재하지 못한 것입니다.

재판장

증인에게

문 : 논리적으로는 먼저 따져야 이동여부가 나오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취지인 것 같은데요.

답 : 이것은 '2사람이 썼는지 3사람이 썼는지 모르니까 그것을 전제로 하고 감정을 해달라'고 했기 때문에, 아닌 것은 2사람이 썼든 3사람이 썼든 제외하고 동일한 부분만을 밝힌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변호인 김창국

증인에게

문 : 유서와 업무일지에서 같은 부분이 딱 한 자가 나와도 '동일하다'고 썼을 것입니까.

답 : 한 자 가지고는 못 씁니다.

문 : 그러면 한 줄이면 썼을 것입니까.

답 : 한 줄이고 두 줄이고, 나타난 특징을 가지고 말하는 것이지, 한 줄이다, 몇 자다, 하는 글씨수를 가지고 기준은 못합니다. 한 자는 안된다는 것이지...

문 : 만일 유서와 같은 필적이 한 줄이 나와 있었다면 그렇게 썼을 것이라는 것은 맞는가요.

답 : 여기 그 당시 감정서, 증거물을 보면 유서가 있고, 가족이 제출한 필적, 주민등록본실신고서, 업무일지, 책표지 등을 하나하나 그런 식으로 구분하여 쓴다면 감정서를 작성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계속해서 얘기지만 그래서 유서와 이동여부가 있는지 여부가 중요했으므로 그것을 중심으로 감정하다보니 그런 부분을 세부적으로 기록 안한 것입니다.

피고인

증인에게

문 : 지금 서울구치소에 계시지요.

답 : 예.

문 : 실례지만 몇 동에 계시니까.

답 : ...

문 : 식사 많이 하시고 건강하십시오. 그 얘기 전해 드리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1992. 3. 30

법원 사무관 최 인 기

재판장 판사 임 대 화

* 증인 선서서 <생략> (공판기록 3475)

자료 다3-7 (공판기록 3476~3477)

변호인 신문사항에 대한 이의신청

('92. 3. 30)

○ 우리 헌법 제12조 제2항은 "모든 국민은 ...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이러한 헌법의 규정과 그 정신을 받아 현행 형사소송법 제148조는 "누구든지 ... 형사소추 또는 공소제기를 당하거나 유죄판결을 받을 사실이 발로될 염려가 있는 증인을 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자기 부죄의 강요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 지금 변호인께서 신문하시는 사항은 현재 증인이 서울지검 92형제17600호 등으로 수사, 기소되어 현재까지 제1회의 공판기일도 들어가지 아니한 증인 자신에 대한 뇌물수수 피의사건의 범죄구성요건 또는 그 정상사유 등에 관한 신문으로서 만약 증인이 이에 대하여 자칭 부인하는 증언을 한다면 위증죄가 될 염려가 있고 만약 인정하는 증언을 한다면 자기가 형사상 유죄판결을 받게 될 사실이 발로될 위험성이 있습니다.

○ 이 증인이 자기가 다른 사건으로 기소된 내용에 관하여 이미 기판력이 발생한 사실이 아님에도 이 사건 공판기일에서 법률에 의하여 위증을 하지 않기로 엄숙히 선서를 하고 증언을 한다는 것은 마치 피고인이 당해 사건에 관하여 선서, 증언하는 것처럼 매우 부당하고 부적절할 뿐 아니라 이는 앞서 언급한 헌법 규정의 정신과 형사소송법의 규정취지에 명백히 반하는 것입니다.

○ 또한, 변호인께서 지금 신문하시고자 하는 사항은 지난 3. 27에 실시한 재판부의 기록검증 기일에 충분히 현출된 사항으로 그 필요성도 없습니다.

○ 따라서, 법률가인 변호인들에게 신문은 자기가 감정한 사항에 관하여 증언하기 위하여 증인대에 선 취지에 맞게 이 사건에 관련이 있는 범위에 국한하여 적절히 한정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하고, 재판부에서도 적절히 신문을 제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다3-8 (공판기록 3478~3479)

변호인 박연철 신문사항

32항 그와 같은 모순을 극복하기 위하여 문서철취선이 일치하지 않는다, 필압이 맞지 않는다는 새로운 착안을 하게 된 것이지요.

변호인 김창국 신문사항

7항 (중제28의 1, 2 제시)

가 중제28의 1은 증인이 1980. 허위감정적으로 제1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을 때 문제된, 증인이 작성한 감정서가 틀림없지요.

나 중제28의 2는 고소한 측에서 전국인판업연합회에 의뢰하여 작성된 같은 인영에 대한 감정서인데, 증인도 읽어본 사실이 있지요.

다 오인영(吳仁榮) 명의 인영의 경우 '仁'자의 첫 획인 '一'은 하나는 뺏침획의 중앙이 크게 굵어져 있는 반면 다른 하나는 끝 부분이 약간 굵어져 있는 것을 육안으로도 쉽게 알 수 있는데 어떻습니까.

8항 (중제28의 3, 4 제시)

이것은 당시 증인이 감정한 인영이 찍힌 매도중서 2통의 사본인데, 증인도 기억하고 있는가요.

9항 (중제28의 5, 6 제시)

가 이것은 위 매도중서 2통에 날인된 3인 명의의 각각 다른 인영을 복사카메라로 확대 촬영하여 현상한 필름과(중제28의 5) 이 필름으로 인화한 사진(중제28의 6)인데, 두 매도중서에 날인된 각 인영이 서로 동일한 인영이라면 필름을 사진 위에 겹쳐 보았을 때 동일한 명의의 인영의 크기나 글씨등이 꼭 들어맞아야 되겠지요.

나 (필름 A를 사진 A위에, 필름 B를 사진 B위에 각 겹쳐 보여주며) 필름과 사진이 서로 꼭 들어맞지요.

다 (필름 A를 사진 A위에 겹쳐 보여주며)

(1)'吳聖根'을 보면, 필름 B의 인영이 사진 A의 인영보다 크기에 있어서 테두리가 더 넓고 글씨도 뿌리 '根'자 등이 꼭 맞지 않지요.

(2)'吳錫根'도 필름 B의 인영이 사진 A보다 훨씬

크지요

(3) '吳仁榮'도 필름 B의 인영이 사진 A보다도 뒷 부분이 더 크고 글씨도 서로 들어맞지 않지요. 10행 이와 같이 보면 당시 증인이 제2심에서 부하 직원의 또 다른 허위감정 덕분에 무죄판결을 받기는 하였으나 허위감정을 하였음이 너무나 명백하다고 보여지는데 어떻습니까.

☐자료 다-3-9 (공판기록 3480~3481)

검사 윤석만 신문사항

23항 그 결과 '생'자에 대하여 살펴보면, 유서에 두 군데 있는 '생'자 중에서 시옷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제1획에서 제2획을 마치는 종필이 위로 올라가고 다음의 형태(즉 'ㄹ'자 부분)에서 제2획에서 제3획으로 연결되는 부분의 각도가 위에서부터 차츰 좁아지는 특징이 나타나 있는데, 위와 같은 특징이 자술서에서 서로 동일하게 나타나 있지요.

24항 '형'자에 대해서 살펴보면, 유서의 '형'자 부분과 자술서의 '경'자의 'ㄹ' 부분에서 제2획에서 제3획이 올라갔다 내려와야 하는데, 이와 같은 통상적인 형태를 취하지 아니하고 제2획에서 바로 아래로 내려가는 형태(즉 'ㄹ')로 기재되어 있는 특징이 자술서에서도 나타나 있지요.

25항 '선, 준, 인, 진' 등에 대해서 살펴보면, 유서에 기재된 위의 문자 등이 아래 받침인 나은의 필획을 침범하여 그 아래까지 내려와 있고 이와 같은 형태가 자술서의 '문, 분'자 부분에서도 같은 형태로 나타나 있는데, 이와 같은 형태는 최소성 있는 특징으로서 흔히 볼 수 있는 형태가 아니지요.

26항 '에'에 대해서 살펴보면, 유서에서는 대략 두 종류의 형태, 즉 '에'의 연결부분에 '에'의 이음이 떨어져 있는 형태(즉 'ㄴ')와 바로 이어진 형태(즉 '에') 등의 두 종류가 나타나 있고, 이와 같은 두 종류의 형태가 자술서에서도 동일한 부분이 있었지요.

27항 또한 '에'의 '기'의 제2획에서 3획이 연결되는

과정에서 아래로 내려가면서 필획간의 간격이 넓어지는 습성의 일치점도 나타나 있지요. 28항 '위'자의 대해서 살펴보면, 유서에서의 '위'자는 다소 기형적인 것처럼 '우' 부분(즉 'ㄱ')이 나타나 있는데, 일반적으로 속필로 기재하다 보면 이와 같은 형태를 볼 수 있지만 그러한 중에서도 이러한 다소 기형적으로 '우' 부분을 쓰는 특성이 자술서에서도 찾아볼 수 있었지요.

☐자료 다-3-10 (공판기록 3482~3484)

유서대필사건 감정의뢰서, 감정문서접수대장, 문서감정처리부, 발송대장, 감정회보서 비교내역표

유서대필사건 감정의뢰서

감정의뢰내역							감정문서접수		
문서	문서번호	발송일	의뢰문건 (감정물)	담당자 (검사)	접수여부	회보유무	접수번호	접인일	사행일
1	강라 23110-011963	91. 5.10	1. 임계영의 유서 2매 2. 임계영의 필적 2매	검사 신상규			3817	5.11	5.10
2	- 012016	91. 5.13	(방배중환)	검사 박상수					
3	- 012019	91. 5.13	1. 유서 2매 2. 필적 2매 3. 유변동류, 송신위뢰서 1매 4. 유변동류, 송신위뢰서 1매	검사 송석만	기재없음				
4	- 012298	91. 5.15	1. 유서 12매 2. 임계영이 친구로부터 제출한 필적 1매	검사 권석만			4071	5.16	5.15
5	- 012751	91. 5.21	1. 유서 2. 임계영의 필적 3. 임계영의 필적	검사 송석만			4266	5.22	5.21
6	- 012752	91. 5.21	1. 유변동류 송신위뢰서 2. 임계영의 필적 3. 유변동류 송신위뢰서	검사 송석만	기재없음	회보없음			
7	- 013041	91. 5.23	1. 유서 2. 유변동류 송신위뢰서 3. 이력서 4. 송신위뢰서 2매	검사 송석만			4314	5.24	5.23
8	- 013052	91. 5.24	1. 유서 1매	검사 송석만	기재없음				
9	- 013245	91. 5.25	1. 유서 1매 2. 유변동류 송신위뢰서 6매 3. 이력서 4. 송신위뢰서 2매	검사 송석만		회보없음	4350	5.25	5.25
10	- 013278	91. 5.27	1. 유서 2. 필적 4매 3. 임계영의 필적	검사 송석만			4407	5.27	5.27
11	- 013499	91. 5.29	1. 유서 2. 필적 2매 3. 송신위뢰서 1매 4. 송신위뢰서 1매	검사 송석만	기재없음				
12	- 016452	91. 6.27	1. 유서 2. 유변동류 송신위뢰서 3. 송신위뢰서 4. 송신위뢰서 5. 송신위뢰서 6. 송신위뢰서 7. 송신위뢰서 8. 송신위뢰서 9. 송신위뢰서 10. 송신위뢰서	검사 송석만			5377	6.27	6.27
13	- 017192	91. 7.24	1. 유서 2. 필적 2매 3. 송신위뢰서 4. 송신위뢰서	검사 송석만			6242	7.26	7.26

1서, 감정문서 접수대장, 문서감정처리부, 발송대장

시 접수대장 기재내역				문서감정처리부 기재내역			발송대장 기재내역			
연월일	연월일	연월일	연월일	처리일자	감정결과	비고	연번	수량	분류	비고
5.11	5.10	5.11	5.15	5.15	제1, 2호(제1호)의 원본인사본을, 제1호(제1호)의 원본인사본을, 제1호(제1호)의 원본인사본을		5237	11	6	
			기재없음	5.15	(1호)		5247	11	6	
5.16	5.15	5.16	5.17	5.17	제1, 2호(제1호)의 원본인사본을, 제1호(제1호)의 원본인사본을		5370	11	6	
5.22	5.21	5.22	5.29	5.29	이동통신사본을		5388	11	6	
			기재없음			기재없음				
5.24	5.23	5.24	5.25	5.25	제1, 2호(제1호)의 원본인사본을, 제1호(제1호)의 원본인사본을, 제1호(제1호)의 원본인사본을		5617	11	6	
			기재없음							
5.25	5.25	6.1	5.25	5.29	제1, 2호(제1호)의 원본인사본을, 제1호(제1호)의 원본인사본을, 제1호(제1호)의 원본인사본을					
5.27	5.27	6.3	5.29	5.29	제1, 2호(제1호)의 원본인사본을, 제1호(제1호)의 원본인사본을, 제1호(제1호)의 원본인사본을		5388	11	6	
			기재없음			기재없음				
5.27	6.27	7.4	7.5	7.4	제1, 2호(제1호)의 원본인사본을, 제1호(제1호)의 원본인사본을, 제1호(제1호)의 원본인사본을		7341	11	6	
7.6	7.6	7.7	7.8	7.8	제1, 2호(제1호)의 원본인사본을, 제1호(제1호)의 원본인사본을, 제1호(제1호)의 원본인사본을		7507	11	6	

발송대장, 감정회보서 비교내역표

발송대장 기재내역				감정의뢰회보내역				비고
연번	수량	분류	발송방법	비고	연번	수량	분류	비고
37	11	6	인본(제1호)	91. 5.15	23110	11	6	
								발송의사함
37	11	6	인본(제1호)	91. 5.15	23110	11	6	
70	11	6		91. 5.17	23110	11	6	
78	11	6		91. 5.29	23110	11	6	
			기재없음					회보없음
77	11	6	정식회보	91. 5.25	23110	11	6	제1, 2호(제1호)의 원본인사본을, 제1호(제1호)의 원본인사본을, 제1호(제1호)의 원본인사본을
			기재없음					회보없음
78	11	6		91. 5.29	23110	11	6	
								제1, 2호(제1호)의 원본인사본을, 제1호(제1호)의 원본인사본을, 제1호(제1호)의 원본인사본을
81	11	6		91. 7.4	23110	11	6	
82	11	6		91. 7.3	23110	11	6	

592 자료 다-3-11

☐자료 다-3-11 (공판기록 3485~3486)

서울고등검찰청

1992. 3. 30.

수신: 서울고등법원 형사제2부
발신: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직무 대리 신상규
제목: 증거목록 제출.

귀원 92노 401호 피고인 강기훈에 대한 자살
방조 등 피고사건에 관하여 별첨목록과 같이 증거를
제출합니다.

첨부: 증거목록 1부. 끝.

증거목록 제출(2심 3회공판, 검사, 92.3.30.) 593

[양식 1. 순지]

증거 목록

형제

서울고등검찰청

검사

신상규

작성자	장수	증거명	상영	증거위치
검찰	302-324	자살 방조	판경민	공소사실
	629-632	자살 방조	김지연	"
	884-906	자살 방조	김영수	"
	907-915	자살 방조	김영수	"
	917-929	자살 방조	이영진	"
	1025-1027	자살 방조	박미순	"
	1028-1036	자살 방조	박미순	"
수사기록	412-이영	자살 방조	이영진	"
2권				

☐자료 다-3-12 (공판기록 3487~3489)

서울고등검찰청

1992. 3. 30.

수신: 서울고등법원 형사제2부
발신: 서울고등검찰청 검사 직무대리 신상규
제목: 감정신청

귀원 92노 401호 피고인 강기훈에 대한 자살 방조 등 피고사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필적감정을 신청합니다.

다 음

1. 필적감정 대상물

- 번호인 제출 증제1호(성남터사랑학우회 방명록)
- 증제2호(이력서)
- 증제3호(전교조 원주지회 방명록)
- 증제4-1호(대유학보 원고)
- 증제5호(메모)
- 증제6호(청구서)
- 증제7호(상황일지)
- 증제8호(노트)
- 증제9호(대봉투)
- 증제10호(수원민주화청년연합 방명록)
- 증제12호(파일표지)
- 증제13-1호(명함)
- 증제14-1호(명함)
- 증제23-1호(각서)

2. 감정방법

가. 감정기관: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나. 감정의뢰사항

- (1) 위 15가지 필적이 동일인의 필적인지 상호간의 필적 이동여부.
- (2) 위 각 필적 등과 검찰이 김기철의 필적이라고 제출하였고 피고인측이 증거로 함에 동의한 검찰 제출 증제13-1, 2호(카드, 편지)와 필적

동일여부.

(3) 번호인 제출 필적 15개 중 위 (2)항과 같은 감정결과 김기철의 필적으로 밝혀진 것들과 검찰 제출 증제1-6호(유서)와의 필적 이동여부.

3. 입증 취지

번호인들은 위 15가지 필적을 김기철의 것이라고 증거로 제출하였는 바, 육안으로 보아도 동일인의 필적인지 의심스러우므로 의당 그것이 1인의 필적인지 나아가 김기철의 필적인지를 감정한 후 유서의 필적과의 이동을 감정하여야만 하고, 이는 번호인들이 신청하여야 할 사항임에도 이를 회피하고 있는 바 과연 위 필적들이 김기철의 필적인지 명확히 감정함으로써 유서는 김기철의 자필이 아니고 대필임을 밝혀려는 것임.

☐자료 다-3-13 (공판기록 3490~3528)

서울고등검찰청

1992. 3. 30.

수신: 서울고등법원 형사제2부
발신: 서울고등검찰청 검사 직무대리 윤석만
제목: 증거자료 (신문기사) 제출

귀원 92노 401호 피고인 강기훈에 대한 자살 방조 등 사건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증거를 제출합니다.

다 음

(증거)

1991. 5. 8 전민련 사회부장 김기철 분신사건 이후 같은 해 6. 24까지의 이 사건 관련 신문 보도내용.

(입증 취지)

0 피고인과 피고인측 증인 이보은, 동 이지혜 등은 검찰의 이견 수사 사실을 알게 된 것이 1991. 5. 18자 검찰의 증인수사발표 보도를 보고 난 이후

라고 진술하고 있으나, 사건 발생 직후 유서가 대필되었을 가능성에 대하여 수사를 개시하였다는 점.

0 검찰은 같은 달 20. 이후 유서대필 혐의를 받고 있는 강기훈에게 여러 차례 공개적으로 출석요구를 하였으나 같은 해 6. 24까지 한달 이상 명동성당에 은신하고 있으면서 수사를 피하여 왔다는 점 등을 입증함에 있음. 끝.

- * 조선일보 91년 5월 9일자.372)
- * 국민일보 91년 5월 9일자.
- * 중앙일보 91년 5월 9일자.
- * 동아일보 91년 5월 9일자 22면.
- " " 23면.
- * 조선일보 91년 5월 15일자.
- * 국민일보 91년 5월 18일자.
- " " 5월 20일자.
- * 동아일보 91년 5월 21일자.
- * 국민일보 91년 5월 22일자.
- * 조선일보 91년 5월 22일자.
- ??——(판독 불능)
- * 조선일보 91년 5월 23일자.
- * 동아일보 91년 5월 23일자.
- * 국민일보 91년 5월 24일자.
- * 조선일보 91년 5월 24일자.
- * 조선일보 91년 5월 25일자.
- * 동아일보 91년 5월 26일자.
- * 조선일보 91년 5월 26일자.
- * 조선일보 91년 5월 27일자.
- * 동아일보 91년 5월 27일자.
- * 동아일보 91년 5월 28일자.
- * 조선일보 91년 5월 29일자.
- * 동아일보 91년 5월 29일자.
- * 국민일보 91년 5월 29일자.
- * 조선일보 91년 5월 30일자.
- * 동아일보 91년 6월 11일자.
- * 조선일보 91년 6월 12일자.

- * 동아일보 91년 6월 12일자.
- * 국민일보 91년 6월 13일자.
- * 조선일보 91년 6월 14일자.
- * 조선일보 91년 6월 15일자.
- * 국민일보 91년 6월 17일자.
- * 동아일보 91년 6월 24일자.

☐자료 다-3-14 (공판기록 3529~3530)

서울고등검찰청

1992. 3. 30.

수신: 서울고등법원 형사제2부
발신: 서울고등검찰청 검사 직무대리 신상규

귀원 92노 401호 피고인 강기훈에 대한 자살 방조 등 피고사건에 대하여 참고자료를 제출합니다.

별첨: 1991. 5. 24자 중앙일보373) 기사 사본 1부. -끝.

☐자료 다-3-15 (공판기록 3531~3550)

서울고등검찰청

1992. 3. 26.

수신: 서울고등법원 형사제2부
발신: 서울고등검찰청 검사 직무대리 신상규
제목: 참고자료 제출

귀원 92노 401호 피고인 강기훈에 대한 자살 방조 등 사건의 참고자료로 서울지검 91형제89948호 피고인 이창렬 외 1인에 대한 공소장 및 제1심 판결문 각 1부를 제출합니다.

372) 신문자료는 언론사와 일자만 기재하며, 내용은 III책 537쪽부터 참조.

373) 총자료집 III권 616쪽 참조.

서울 지방검찰청

91형제89948호 1991. 10. 9.
수신 서울형사지방법원
발신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김수남
제목 공소장

아래와 같이 공소를 제기합니다.

피고인

본적 "별지 기재와 같음"
주거 " "
직업 " "
주민등록번호 " "
성명 " "
생년월일 " "

죄명 변호사법 위반
공소사실 별지와 같음
적용법조 각 변호사법 제78조 제1호, 형법 제30조, 변호사법 제82조
신병 1991. 9. 12. 각 구속
첨부 1. 구속영장 2통
2. 구속기간 연장 신청서 2통

"별 지"

본적 : [redacted]
주거 : [redacted]
1504호
1. 건설업 한치준
1951. 9. 3. (40세)

본적 : [redacted]
주거 : 서울
2. 태림산업(주) 고문 이창열
1932. 7. 8. (59세)

공 소 사 실

피고인 한치준은 1970. 7. 18. 전주지방법원 금산지원에서 특수강도죄로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6월을 선고받은 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죄 등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자로서 건설업에 종사하는 자,

같은 이창열은 1978. 7. 22. 서울형사지방법원에서 변호사법 위반죄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은 자로서 태림산업(주) 고문으로 종사하는 자인 바,

피고인 한치준은 1988. 5. 경 서울구치소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로 구속된 피해자 이세용(남, 41세)을 찾아가 동인에게 "공화당 시절에 공화당 청년부장을 지낸 이창열이란 사람이 있는데 그가 법원 고위층에 아는 사람이 많으니 그에게 부탁하여 무죄석방되도록 하겠다"라고 이야기하여 동 피해자의 승낙을 받은 다음 피고인 등은 동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청탁명목으로 금품을 교부받기로 공모하여,

1988. 6. 14. 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 소재 힐탑호텔 커피숍에서 피고인 한치준이 공소의 조남근으로부터 위와 같은 청탁명목으로 금 300만원 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1989. 3. 하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현금 7,500만원 및 액면금 3,000만원의 약속어음 1매를 교부받아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것이다.

범죄일람표

순위	일시	장소	금액	내용
1	1988. 6. 14.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 소재 힐탑호텔 커피숍	300만원	피고인 한치준이 공소의 조남근으로부터 교부받음
2	1988. 7. 2.경	"	800만원	"
3	1988. 7. 16.경	"	200만원	"
4	1988. 7. 22.경	"	150만원	"
5	1988. 8. 6.경	서울 중구 장충동 소재 엠베서더호텔 커피숍	250만원	"
6	1988. 8. 12.경	서울 중구 서소문동 소재 대한빌딩 지하다방	300만원	"
7	1988. 8. 27.경	"	200만원	"
8	1988. 8. 30.경	"	200만원	"
9	1988. 9. 14.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 소재 힐탑호텔 커피숍	800만원	피고인 한치준이 공소의 조남근으로부터 교부받음
10	1988. 9. 24.경	수원시 인계동 소재 공소의 조남근 경영의 고려인삼농원	700만원	"
11	1988. 10. 31.경	"	500만원	"
12	1988. 11. 28.경	"	액면금 3,000만원의 약속어음 1매	"
13	1988. 11. 29.경	"	500만원	"
14	1988. 12. 7.경	"	400만원	"
15	1988. 8. 30.경	서울 중구 충무로 소재 이창열의 사무실 부근 상호불상 다방	2,000만원	피고인 이창열이 피해자 이세용으로 부터 교부받음
합계 금			7,300만원 및 액면 금 3,000만원의 약속어음 1매. 끝.	

서울형사지방법원

판결

사건 91고단 7353 변호사법 위반
피고인 1. 한치준(韓致駿) 건설업
1951. 9. 3.생
주거 대전시
본적 대전시 중구

2 이창열(李昌烈) 태림산업(주) 고문
1932. 7. 8.생(
주거 서울

본적

검사 김수남
변호인 변호사 강희부(피고인 한치준에 대하여)
변호사 노경래, 오상현(피고인 이창열에 대하여)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6월에 처한다.
이 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170일씩을 위

각 형에 산입한다.
피고인들로부터 각 금51,500,000원을 추정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한치준은 1988. 5. 증순경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로 서울구치소에 구속되어 있는 피해자 이세용을 찾아가 그에게 "공화당 시절 당청년부장을 지낸 이창열이란 사람이 있는데 그가 법원 고위층을 아는 사람이 많으니 그에게 부탁하여 무죄석방되도록 하여 주겠다"고 제의하여 위 피해자의 승낙을 받아낸 후 피고인 이창열과 이를 상의한 끝에, 피고인들은 위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청탁명목으로 금품을 교부받기로 공모하여, 1988. 6. 14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힐탑호텔 커피숍에서 피고인 한치준이 위 피해자의 부탁을 받은 공소의 조남근으로부터 이와 같은 청탁명목으로 금 3,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1989. 3. 하순경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현금 53,000,000원과 액면 금 5,000,000짜리 자기앞수표 4매 및 액면금 30,000,000원짜리 약속어음 1매를 각 교부받아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합계 금 103,000,000원의 금품을 받은 것이다.

증거의 요지

- 1. 제1차 공판조서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술기재
- 1. 검사 및 검찰 수사사무원 작성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피의자 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 1. 검찰 수사사무원 작성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진술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 1. 피고인 한치준 작성의 진술서 중 일부 진술기재를 종합하면, 피고인 한치준은, 그가 대표이사로 있는 대전시 중구 문창동 373의 10 소재 증경건설산업주식회사의 회장인 피해자 이세용이 1988. 5. 1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로 서울구치소에 구속되자, 같은 달 증순경 외사촌형인 국회의원 김홍만의 소개로 수년전부터 알게 되어 호형호제 할 정도로 친하게 지내오던 피고인 이창열에게 위 이세용의

구속사실을 알리는 한편, 위 구치소로 위 이세용을 찾아가 피고인 이창열을 소개하면서 그에게 무죄석방을 위한 노력을 하여 주도록 부탁하자고 제의한 사실, 또한 피고인 한치준은 그때부터 1989. 2. 23. 위 이세용이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의 보석허가결정에 의하여 석방될 때까지 사이에 위 이세용을 일반면회 4,50회, 특별면회 3,4회에 걸쳐 서울구치소로 찾아가 면회하는 등 그이 석방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였을 뿐만 아니라, 별지 범죄일람표 제12항 기재와 같이 위 이세용의 부탁을 받은 공소의 조남근으로부터 액면금 30,000,000원짜리 약속어음 1매를 교부받아 이를 할인한 돈증금 15,000,000원을 1988. 11. 하순 일자불상 1800경 피고인 이창열에게 교부하였고, 피고인 이창열은 위 돈을 위 이세용의 변호인 선임비 등으로 소비한 사실, 한편 피고인 한치준은 위 이세용이 석방된 직후인 1989. 3. 초순경 서울 마포구 공덕동 소재 가든호텔 커피숍에서 위 이세용으로 하여금 피고인 이창열을 만나게 하여 그간의 노력에 고맙다는 인사를 하도록 주선한 사실이 각 인정되고,

- 1. 증인 최동열, 김명희의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이세용, 조남근의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문용선의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조남근, 양종석의 각 진술기재
- 1. 검사 작성의 이세용, 조남근, 문용선, 양종석에 대한 각 진술조서와 검찰 수사사무원 작성의 이세용, 조남근, 최동열에 대한 각 진술조서와 각 진술기재
- 1. 수사기록 제15정에 편철되어 있는 확인서의 기재
- 1. 입수된 조흥은행 예금통장(계좌번호:501-1-069675) 2개(중계1, 2호)의 각 현존과 그 기재를 종합하면, 위 이세용은, 자신이 누명을 쓰고 위와 같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로 구속되었다는 생각하에, 1988. 5. 증순경 피고인 한치준으로부터 피고인 이창열이 정계와 범조계에 많이 넓은 유력자라고 소개받고 위 한치준의 제의에 따라 위 이창열에게 자신의 무죄석방 운동을 부탁하기로 마음먹은 다음, 사업상 오래 전부터 절친하게 지내오던 위 조남근을 구치소로 면회하게 하여 "석방 후 면회할 테니 금1억원의 한도내에서 피고인 한치준이 요구하는대로 돈을 주라"고 부탁한 사실, 이에 위 조남

근은 앞서 본 금 30,000,000원짜리 약속어음 외에도 별지 범죄일람표 제1내지 11, 13, 14항 기재와 같이 도합 13회에 걸쳐 위 한치준의 요구에 따라 자신의 예금통장(중계1, 2호)에서 합계 금 53,000,000원의 현금을 인출하여 위 한치준에게 교부하는 한편, 위 이세용과의 사후 정산 등을 위하여 16절지 1/4 크기의 백지에 그 지급내역을 일일이 메모해 두었던 사실이 각 인정되고,

- 1. 증인 강명구, 문용현의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 1. 제3회 공판조서중 증인 이세용의, 제7회 공판조서중 증인 최섭의 각 진술기재
- 1. 검사 작성의 이세용, 최섭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 1. 이 법원의 감정인 최섭 작성의 1992. 1. 29.자 감정서 및 그 보충설명서의 각 기재
- 1.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과학수사운영과 문서감정관 김덕원, 강명구 작성의 각 감정서(수사기록 제258내지 287정 및 공판기록 제1권)와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문서감정담당 최섭 작성의 1991. 11. 9.자 감정서(공판기록 제1권)의 각 기재
- 1. 입수된 보관확인서 1매(중계3호), 타원형 목도장 1개(중계5호)의 각 현존과 그 기재를 종합하면, 위 이세용은 그가 석방된 직후 위 조남근으로부터 그의 앞서 본 바와 같은 금원 지출내역을 전해 듣고 1989. 3. 17.부터 같은 해 6. 20.까지 사이에 이를 정산하여 모두 변제하는 한편, 같은 해 3. 초순경 서울 마포구 공덕동 소재 가든호텔에서 피고인 한치준의 주선으로 피고인 이창열을 만나 그의 석방노력에 대한 사의를 표한 뒤, 같은 달 하순 일자불상 11:00경 서울 중구 충무로에 있는 위 이창열의 사무실 부근 다방에서 위 한치준과 함께 다시 위 이창열을 만나 자신의 무죄를 부탁함과 동시에 그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제15항 기재와 같이 액면 금 5,000,000원짜리 자기앞수표 4매를 더 교부한 사실, 피고인 한치준은 그 자리에서 혹시 무죄선고를 받지 못하면 어떻게 할까 하고 걱정하는 위 이세용에게 만약 그가 무죄를 받지 못할 때에는 위 총 교부금 103,000,000원중 변호인 선임비 등 필요경비로 든 금 18,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 85,000,000원을 반환하겠다는 내용의 보

관확인서(중계3호)를 서류작성 용지에 볼펜으로 직접 작성한 다음, 이를 피고인 이창열에게 제시하여 서명 날인하게 하고 자신은 그 밑에 한자로 서명무인하여 위 이세용에게 교부한 사실(피고인은 이를 부인하면서, 첫째 위 보관확인서의 글씨는 누군가에 의하여 모필되었거나 피고인들이 쓴 날글자를 모아서 복사한 것임에 틀림없고, 둘째 위 인영과 무인 또한 피고인들의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의 것이라 하더라도 특히 무인의 거의 원형에 가까운 모양 등에 비추어 이는 수지필름을 이용하여 복제된 것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먼저 이 첫째 주장에 대해서 보건대, 위에서 든 각 감정서 등의 기재에 의하면, 위 보관확인서의 글씨 중 이창열이라는 한글 서명부분은 피고인 이창열의 필적과, 그 나머지 글씨는 피고인 한치준의 필적과 각 동일한 사실, 한편 위 각 글씨는 모방 필적에서 나타나는 주저흔과 불규칙적인 떨림흔 등의 부자연스러움이 없는 반면, 미세한 연결부분의 운필상태의 지속성과 유연성이 있어 지극히 자연스러울 뿐만 아니라 직접 수기하는 필적에서만 볼 수 있는 잉크의 농도 차이과 잉크 찌꺼기의 뭉친 부분, 글자에 따른 강한 필압, 글자 끝부분의 미세한 처리 및 지면조직에 침투되어 있는 잉크의 이화학적 특징 등이 발견되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는 피고인들에 의하여 직접 작성된 것으로 보이고, 이와 달리 모필되었거나 복사되었을 가능성은 전혀 없어 피고인들의 위 첫째 주장은 이유 없고, 다음으로 위 둘째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역시 위 각 증거에 의하면, 위 피고인 이창열의 인영은 그가 평소 사용하던 인장에 의한 것과의 사이에 부분적인 인획의 비대 및 돌출과 같은 차이점이 발견되기는 하나, 이는 인주 문힌 정도와 날인 압력 및 인장의 보관상태 등 날인조건에 수반되는 일반적인 변화 차이에 불과하고 전체적으로는 동일한 인장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사실, 위 피고인 한치준의 무인 또한 그의 지문과 동일한 것으로서 그 등근 형태는 역시 인주의 문힌과 날인조건 등에 따라 현출이 가능한 것일 뿐만 아니라, 위 무인에는 지문을 촬영한 필름에 합성수지를 발라 이에 자외선을 통과시켜 만드는 복제지문에서 나타나는 특징, 즉 필름 위에 수지가 자외선에 의하여 부식되면서

미세한 부분이 없어지거나 굵은 부분이 과장되는 현상 및 위와 같은 현상으로 인하여 실제 지문의 용선에서는 생길 수 없는 불규칙적인 곡선과 돌출, 단절, 부분적인 불연출현상, 특히 가장자리 부분으로 갈수록 불선명해지는 구별이 없어지는 주변대의 모양, 복제된 지문필름을 오릴 때 생기는 절삭부분 등이 보이지 아니하는 반면, 실제로 무인을 했을 경우에 나타나는 용선의 특징과 인주의 압박흔 및 외곽부분의 미세한 특징 등이 발견되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서류상의 인영과 무인은 피고인들이 각각 그들의 도장과 손가락을 이용하여 직접 찍은 것으로 보이고 이와 달리 다른 도장이나 복제된 지문에 의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어서, 피고인들의 위 둘째 주장 역시 이유 없다)이 각 인정되고, 위 인정의 각 사실을 종합하면 판시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판시사실은 그 중명이 있다.

법령의 적용

피고인들:

- 각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변호사법 제70조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 1. 미결구금일수 산입: 형법 제57조
- 1. 추정: 변호사법 제82조

1992. 3. 9.

판사여상규

* 범죄일람표 <생략> (공판기록 3549~3550)

☐자료 다-3-16 (공판기록 3551~3574)

서울고등검찰청

1992. 3. 30.

수신: 서울고등법원 형사제2부

발신: 서울고등검찰청 검사 직무대리 신상규

제목: 참고자료 제출

귀원 92노 401호 피고인 강기훈에 대한 자살 방조 등 피고사건에 관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감정인 김형영의 금품수수사건에서 관련 문서감정의 공정성 검토 결과 의견서를 참고자료로 제출합니다. 끝.

서울 88형제 33049 이세용에 대한 특정경제범죄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공갈)

1. 사건 개요

이건 피해자 임봉규가 조남근 소유의 밭에서 인삼시가 1억원 상당을 절취하였다는 사실로 구속이 되자, 위 조남근을 조종하고 있는 점을 이용하여 합의 등을 미끼로 위 피해자 등으로부터 금전을 갈취할 것을 마음먹고,

- 1987. 5. 초순경부터 같은 해 7. 9.까지 사이에 위 임봉규의 형 임춘성에게 요구를 들어 주지 아니하면 합의를 해주지 아니할 뿐 아니라 적극적으로 나서서 위 임봉규에게 실행이 나도록 하겠다고 협박을 하여 수차에 걸쳐 도합 1억원을 갈취하고,
- 같은 해 7. 10.부터 같은 해 8. 3.에 걸쳐 보석으로 출소한 위 임봉규를 상대로 같은 취지의 협박을 하여 수차에 걸쳐 도합 8천만원을 갈취함.

2. 쟁점 사항

0 피의자는 위와 같은 협박을 한 사실도 없으며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도 없는데, 위 임봉규와 조병길 등이 공모하여 자신을 무고한 것이라 변소하는 반면,

0 위 임봉규 등은

- 위와 같이 협박으로 임춘성은 현금 8,000만원과 자기앞 수표 2,000만원권 1매를, 임봉규는 자기앞수표 약 20매 액면 도합 2,000만원과 약속어음 2매 도합 6,000만원을 피의자에게 각 지급하였는데,
- 임봉규가 지급한 100만원 자기앞수표 및 약속어음에는 피의자의 자필 배서가 있고,
- 피의자가 위 수표 등을 자신의 통장에 입금한 흔적이 있다고 주장,

- 또한 조병길과 공동하여 무고를 하였다는 주장에는 조병길을 알게 된 것이 1988. 3. 초경이므로 사리에 맞지 아니한다고 주장.

3. 처리 내용

- 088. 5. 11. 서울지검 진정서 접수.
- 088. 6. 3. 이세용 구속기소
- 088. 6. 16. 변호인이 무죄의 증거로 이송운, 이인환, 신찬석 명의의 수표 등에 있는 배서부분과 위 수표가 입금되었다는 피의자 명의의 예금구좌 거래 신청서에 대한 필적감정서 제출.
- 088. 8. 22. 변호인이 위 배서부분 및 예금구좌 거래 신청서 필적에 대한 국과수 감정 신청.
- 088. 9. 23. 국과수 감정결과 회시(감정인: 김형영 문서분석실장).
- 088. 11. 10. 1심판결(징역 2년, 임봉규가 피해자로 되어 있는 8,000만원에 대한 공갈 부분 무죄 선고).
- 088. 2. 27. 보석결정으로 피의자 이세용 신병 석방.
- 088. 12. 4. 국과수에서 임봉규 명의의 지불이행보증 각서 말미에 있는 임봉규의 서명의 자필 여부 감정(감정인: 김형영).
- 090. 1. 12. 2심 선고(전부 무죄).
- 090. 5. 25. 상고기각 확정.

4. 문서감정 경위 및 내용

- 01심 감정 경위(자기앞 수표부분 필적감정 경위)
 - 피해자 임봉규는 갈취당한 수표와 어음에 피의자 이세용의 자필배서가 있고 피의자가 자신의 구좌에 위 수표 등을 입금한 흔적도 있다며 수표, 어음, 예금거래신청서 등을 증거로 제출하는 반면, 피의자 이세용은 위 수표 등에 있는 배서와 예금거래신청서는 모두 위조되었다고 주장.
 - 이에 따라 위 수표 등에 있는 이서와 예금구좌 개설 당시 작성된 예금거래신청서의 자필 여부가 쟁점이 되어 변호인이 감정 신청.
 - 국과수 감정인 김형영은 위 필적은 이세용의 필적이 아니라고 피의자 이세용에게 유리한 감정.
 - * 사실 감정인 이송운, 이인환, 신찬석도 같은 취지의 감정

0 2심 감정 경위(이행보증각서 감정 경위)

- 피해자 임봉규가 법정에서 조병길과는 88. 3.경 처음 알게 된 사이여서 공모하여 피의자를 무고할 시간적 여유도 없었다고 증언한 반면,
- 피의자는 '자신 소유의 건설회사에서 고용사정으로 있던 조병길이 87. 7. 7. 양승학과 임봉규를 만나 피의자에게 불리한 증거를 조작해 주는 대가로 돈 2억여원을 받기로 하는 약속을 한 후 즉석에서 "양승학이 신영건설을 상대로 한 민사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양승학은 조병길에게 금 2억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임봉규는 이를 보증하며, 조병길에게 형사문제가 생길 경우 임봉규가 이를 해결한다. 단 이세용이 형사상 무죄판결을 받을 경우 무효로 한다.'"는 양승학 및 임봉규 명의의 이행보증각서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임봉규 등의 명의로 된 이행보증각서를 제출하며 감정신청.
- 이에 따라 재판부에서 국과수에 위 각서 말미에 있는 임봉규 명의의 서명이 자필인지 여부를 감정의뢰하자.
- 국과수 감정인 김형영은 위 서명은 임봉규의 자필이라고 피의자 이세용에게 유리한 감정.

5. 감정이 사건에 미친 영향

0 1심 감정이 사건에 미친 영향

- 1심 무죄 부분 이유
 - * 임봉규 및 임춘성의 진술은 갈취를 당하였다는 시기 전후에 걸쳐 위 절도 사건을 담당하는 변호사를 선임하였음에도 그가 이견 협박사실을 상당한 흔적이 없음에 비추어 신빙성이 없음.
 - * 위 이서 및 예금거래신청서의 필적이 이세용의 필적과 상이함.
 - * 예금거래신청서상의 비밀번호는 신청자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숫자임이 일반적인데, 이견 피의자 명의의 예금거래신청서에 기재된 비밀번호는 오히려 임봉규 소유 업소의 전화번호 뒷부분과 동일.
 - * 위 예금거래신청서에 기재된 피의자 이세용의 주민등록번호도 실제와 다른데, 그 기재된 번호

와 임봉규가 절도사건 관계로 소지하고 있는 이세용 작성의 진술서에 잘못 기재되어 있는 주민등록번호가 일치.

- * 임봉규는 진정을 감취를 당한 때로부터 약 10여개월 후에 하였으며, 한편의 변제도 받음이 없이 진정취하를 함.
- * 임봉규가 구속된 이세용을 면담할 당시 "너 없어도 무죄를 받았다. 너는 아직도 아마추어다"고 말함.

위 각 점에 비추어 검찰 제출의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는 믿기 어려우 무죄.

- 위 감정결과가 무죄의 한 증거로서 사건에 영향을 주었음은 사실이나 그것이 무죄의 결정적 증거는 아님.

0 2심 감정이 판결에 미친 영향

- 무죄 이유(항소심 무죄 이유중 1심 무죄이유와 중첩되는 부분 생략)
- * 돈을 넘겨주었다는 참고인(김선례)의 진술은 그가 목격자가 없었다고 하다가 후일 목격자가 있음을 주장하는 등 일관성이 없어 신빙성 없음.
- * 천규순의 진술에 의하면

87. 8경 임봉규, 조병길, 양승학 등이 위 천규순을 만나 임봉규의 절도사건은 이세용의 조종으로 임봉규가 힘한번 못 써보고 구속되었으니 어떻게 해서라도 무죄로 만들어야 한다면 도와달라는 요구를 한 사실, 피의자 이세용에 대한 이건 공갈의 점에 대하여 수사가 개시된 후 담당검사로서 하여금 이세용에 대하여 나쁜 인상을 가지도록 하기 위하여 위 3인이 담당검사에게 전화를 걸어 이세용을 아는 사람인 척 하면서 "왜 이세용르 구속시켰느냐"고 욕을 하여 이세용을 모해한 사실, 조병길이 피의자 이세용을 만나 그에게 무죄가 되도록 도와주겠으니 이세용 소유 회사의 주식 51퍼센트를 달라는 요구를 한 사실 등이 인정됨.

- * 위 절도사건의 합의시 임춘성은 3,00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각서를 쓴 후 외상으로 하자고 눈물까지 흘렸으나 그후 이행이 되지 아니하였는

데 그보다 많은 돈이 갈취되었음은 신빙성이 없음.

- * 이건 이행보증 각서를 참작하면 임봉규의 진술중 조병길과의 관계에 대한 진술내용이 사실에 부합하지 않음을 알 수 있으며, 그 내용을 보더라도 위 각서의 주된 내용은 토지 소유자인 양승학과 조병길이 사장으로서 있던 회사로서 위 양승학 소유의 토지상에 건축을 하기로 되어 있는 피의자 소유의 건설회사간의 분쟁을 해결하는 방안으로서 조병길이 부정한 행위를 한다는 것인데 위 토지와는 관련이 없는 임봉규가 보증인으로 되어 있고, 문건 내용에도 "이세용이 형사상 무죄판결을 받을 경우 무효로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오히려 피의자 이세용에 대한 무고를 모의한 증거로 보임.
- * 조병길이 구속된 이세용을 면담할 당시 죄송하다고 하면서 자신은 임봉규, 서인석이 시키는대로 말하였을 뿐이라고 한 사실이 있음.
- * 임봉규 및 그의 조카 안태석이 구속된 최동열을 면회하여 최동열 및 그 가족을 책임지겠다고 하면서 이세용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도록 권유하자 위 최동열이 안한 일을 어떻게 했다고 하느냐며 이를 거절한 사실이 있음.

위 점 등에 비추어 검찰 제출의 다른 증거는 믿기 어렵고 달리 증거 없어 무죄.

- 위 감정결과는 무죄 심증 형성의 간접증거로만 사용되었으므로 사건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됨.

6 대검 과학수사연구소의 재감정 결과

0 자기알 수표 및 어음의 배서와 예금거래신청서의 필적이 이세용의 필적이기에 대하여는 판단불능으로,

0 예금청구서의 필적은 이세용의 필적이 아닐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사료됨.

0 국과수의 감정은 필적의 유사성과 상이점을 면밀하게 관찰한 흔적이 있음.

7. 허위감정 유무에 대한 판단

0 김형영이 허위감정 사실 부인하고 있고

0 이세용이 뇌물공여 동기에 대하여 특가법 위반(공갈)으로 구속되었다가 89. 2. 27. 보석으로 석방되어 주변을 정리하려고 보니 조병길이 위 각서 및 인증촉탁서서가 위조되었다는 감정인 이익주 명의의 감정서를 발급받아 행사하려고 준비하고 있어 그에 대비하기 위하여 이인환을 통하여 김형영을 소개받아 감정뢰의뢰가 있을 경우 제대로 감정을 하여달라는 취지로 금품을 교부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바 이세용의 이와 같은 진술은 기록에 편철되어 있는 위 각서 등에 대한 이익주 명의의 감정서 등에 비추어 수증이 가며

0 국과수 감정결과가 위 무죄판결 이유에 실시된 다른 증거들에 부합하고,

0 국과수의 감정결과가 재감정결과와도 모순되지 아니하며

0 국과수 문서감정실에서 감정을 함에 있어 시험은 담당자가 시행되 그 내용 심의에는 모든 직원이 참여하도록 되어 있으며, 실제 이건 감정의 내용심의시에 김형영 외 다른 직원 3명도 모두 참여하여 이건 감정결과에 아무런 이의 없이 동의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0 이건 감정은 허위감정이라 할 수 없음.

대전지검 88형제 22334호, 89형제 7022호 조병길에 대한 사문서 위조 등 사건)

1. 사건개요

1985. 5. 6. 이세용이 최영숙으로부터 신영건설주식회사를 인수함에 있어 편의상 당시 동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있던 조병길의 명의로 인수하고 주식은 서기환, 함준기 등 4인 명의로 세무서에 신고하였음에도 피의자가 대표이사직에서 해임당하자 1988. 2. 28. 위 서기환, 함준기 등으로부터 주권을 위임받은 것으로 서류를 조작하기 위하여 "동인들 명의의 신영건설(주) 주식 25%에 대한 권한 행사 일체를 피의자에게 위임한다"는 내용의 동인들 명의의 각 주식 위임장을 위조한 것 등.

2.쟁점 사항

0 피의자는 자신이 신영건설(주)의 명목상의 인수인 및 대표이사가 아니라 실질상의 인수인 및 대표이사며 주식명의로 서기환 등에게 명의 신탁하였고 문제가 된 서기환 등 명의의 주식위임장은 동인들로부터 포괄 위임을 받아 정당하게 작성된 것이며 이세용이 주장하는 피의자 명의의 각서와 인증촉탁서는 동판을 뜯은 후 이를 인증촉탁서에 압달하여 위조한 것이라고 주장

0 이세용은 자신이 실질상의 인수인이고 조병길은 명목상의 인수인 및 대표이사에 불과하며 그 사실에 대하여는 "조병길이 신영건설(주) 대표이사로 되어 있으나 대표이사의 권한을 행사할 때에는 이세용과 합의 승락하에 이행하고 조병길의 소유로 되어 있는 위 회사 주식 35%에 대하여 조병길의 매매 등 처분행위를 금한다"라는 내용의 조병길 명의의 각서가 공증인 사무실에서 공증되어 있다고 주장

3. 처리 경위

0 89. 5. 1. 함준기 명의의 고소장 접수

0 89. 6. 14. 피의자를 대전지방법원에 사문서 위조 등으로 불구속 기소

0 89. 8. 16. 피의자가 원고 양승학, 피고 신영건설(주)간의 목재 등 인도청구사건에서 위증을 한 혐의로 구속됨(8. 18. 병합 기소)

0 90. 11. 27. 1심 선고(조병길에 대하여 전부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1년6월 선고)

0 91. 4. 12. 2심 선고(피고인 항소 기각)

0 91. 8. 13. 상고심 선고(경합범 범리오향을 이유로 원심 파기환송)

0 현재 대전지방법원에 공판 계속중

4. 감정 경위 및 내용

0 90. 1. 30. 피고인의 소송대리인이 법원에 대하여 위 각서 및 인증촉탁서에 대한 국과수 등 권위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뢰 요청

0 90. 3. 28. 법원에서 위 각서 및 인증촉탁서의 필적과 신영건설(주) 대표이사 직인의 진정성립 여부를 국과수 김형영에게 감정뢰뢰

0. 90. 4. 12. 김형영이 "조병길 서명 필적은 모방 흔적이거나 전사흔적이 없고 각서 및 인증촉탁서에 날인된 신영건설(주) 대표이사 직인 인영은 실인과 동일한 인영이다"라는 감정결과 회시.

5. 국과수 감정이 사건에 미친 영향
0 감정결과가 유죄 선고의 중요한 근거가 되었으나
0 위 각서가 공증된 공증인 사무소의 사무원이 증인으로 출석 조병길이 공증인 사무소에 나와 직접 각서 및 인증촉탁서에 서명 날인하였다고 증언하고 합준기 등 다른 증인들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언을 하였음

6. 대검 과학수사운영과의 재감정 결과 국과수의 감정결과와 동일

7. 허위감정 여부에 대한 판단
0 김형영이 허위감정 사실 부인하고 있고
0 이세용이 뇌물공여 동기에 대하여 특가법 위반(공갈)으로 구속되었다가 89. 2. 27. 보석으로 석방되어 주변을 정리하려고 보니 조병길이 위 각서 및 인증촉탁서서가 위조되었다는 감정인 이익주 명의의 감정서를 발급받아 행사하려고 준비하고 있어 그에 대비하기 위하여 이인환을 통하여 김형영을 소개받아 감정의뢰가 있을 경우 제대로 감정을 하여달라는 취지로 금품을 교부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바 이세용의 이와 같은 진술은 기록에 편철되어 있는 위 각서 등에 대한 이익주 명의의 감정서 등에 비추어 수긍이 가며

0 각 감정결과가 국과수 감정결과와 일치하며
0 이건 감정의 대상이 된 문서가 공증서류로서 공증사무소 직원이 법정에서 진정성립을 증언하고 있고
0 국과수 문서감정실에서 감정을 함에 있어 시험은 담당자가 시행하되 그 내용 심의에는 모든 직원이 참여하도록 되어 있으며, 실제 이건 감정의 내용심 의시에 김형영 외 다른 직원 3명도 모두 참여하여 이건 감정결과에 아무런 이의 없이 동의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0 이건 감정은 허위감정이라 할 수 없음.

서울88형제 62783호 임승호에 대한 사문서 위조, 동행사 사건

1. 사건 개요
피해자 강태호에 대한 연대 채무 2,100만원을 담보하기 위하여 타인 액면금 2,100만원권 어음을 강태호에게 보관시키고 보관증을 교부받은 후 보관증의 여백에 필요한 내용을 추가 기재하여 변제하여야 할 잔액채무가 300여만원에 불과한 것처럼 보관증을 변조

2. 쟁점 사항
0 피의자는 강태호 명의의 보관증을 가필하여 변조한 사실이 없다고 변호하는 반면,
0 고소인 강태호는 피의자가 보관증에 내용 일부를 가필하여 채무액이 2,100만원임에도 300여만원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변조하였으며, 원래 보관증을 작성할 당시 보관증 용지 밑에 있던 서면에 나타난 필흔도 자신의 주장에 맞다고 주장

3. 처리 경위
0 89. 9. 9. 고소장 접수
0 90. 1. 31. 불구속 기소
0 90. 9. 5. 법원에서 국과수에 보관증 작성시 밑에 있던 용지에 나타난 필흔이 후에 조작된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감정의뢰
0 90. 9. 15. 위 필흔이 조작된 것이 아니다(보관증이 변조되었다)라는 취지의 감정결과 회시
0 90. 11. 22. 김형영이 감정결과와 동일한 취지의 법정증언
0 91. 7. 3. 1심에서 징역 8월을, 92. 1. 29. 2심에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4. 감정 내용 및 경위
0 검찰에서 고소인과 피의자는 각 결과가 상이한 사설감정소의 감정서 제출(고소인측 감정없음, 한용택, 피의자측 감정인 신찬석)
0 89. 7. 27. 대검 과학수사운영과에 감정의뢰하여 변조되었다는 감정결과 회시 받음

0 89. 10. 19. 국과수에 다시 감정의뢰
0 89. 11. 6. 김형영 실장이 변조가 추정된다는 결과 회시
0 90. 9. 5. 법원에서는 변호인의 신청에 의하여 다시 국과수에 감정의뢰
0 90. 9. 15. 보관증이 변조되었다는 취지의 결과 회시
0 90. 11. 22. 변호사 신청에 의하여 김형영이 증인으로 채택되어 위 감정서와 동일한 취지로 피의자에게 불리한 증언

5. 감정이 사건에 미치는 영향
0 신찬석의 감정은 피의자에게 유리하나
0 국과수 김형영의 감정결과 및 증언내용은 피의자에게 불리한 결과 초래

6. 대검 과학수사운영과의 재감정결과 대검 과학수사운영과의 감정기술로는 감정이 불가능하다고 회시

7. 허위감정 유무에 대한 판단
감정결과가 중피자에게 불리한 점에 점에 비추어 허위감정이라 볼 여지가 없음.

전주지검 91형제 478호 조종섭, 조성영에 대한 사문서 위조 등 사건

1. 사건 개요
0 고소인 : 조혜영(대리인 이귀덕)
) 신분관계
- 피의자 조종섭은 85. 6. 1. 사망한 조종섭의 동생이고, 조성영은 위 조종섭의 이혼한 첫번째 처 사이에 태어난 3남 2녀 중 차남이며,
- 고소 대리인 이귀덕은 위 조종섭의 두번째 처로서 조종섭과 다시 이혼한 사이이고, 고소인은 조종섭과 이귀덕간에 태어난 3녀 중 장녀임
0 범죄사실
- 피의자들은 88. 4. 3.자 "모든 재산을 차남인 조성영에게 상속토록 한다"는 조종섭의 유언장을

근거로 상속등기가 종료된 고소인 등 이귀덕에게서 출생한 3자녀의 상속지분(9/32)등기를 말소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 위 유언장은 위조된 것이므로
- 피의자들의 행위는 사문서 위조, 동행사, 사기미수죄에 해당하고, 위 소송시 유언장이 진정하게 성립되었다고 증언한 조종섭의 행위는 위중에 해당한다는 내용임

2. 쟁점 사항
0 피의자들은 위 유언장이 진정하게 성립되었다고 주장하는 반면,
0 고소인은
- 위 조종섭은 88. 4. 2부터 7.까지 중환자실에서 산소마스크를 쓰고 있었으므로 유언을 할 수 있는 상태에 있지 아니하였고,
- 필체가 조종섭의 필체와 다르며,
- 참여자로 날인된 사람 중 일부는 위 시기에 병원에 온 일이 없어 위 유언장은 위조된 것이 틀림없다고 주장

3. 처리 경위
0 90. 6. 1. 경찰서에 고소장 접수
0 90. 6. 7. 이귀덕은 위 유언서 내의 글씨조차 1인에 의하여 작성되지 않는 등 그 진위가 의심스럽다는 증거로 유언서 내에서 중첩되어 써 있는 '조종섭'이라는 글씨조차 필적이 서로 상이하다는 신찬석 명의의 감정서를 제출
0 90. 7. 10. 위 유언장에 있는 날인과 조종섭의 저금통장 날인의 동일여부를 국과수에 감정의뢰
0 90. 7. 19. 김형영 실장은 두 날인이 동일하다고 감정
0 90. 7. 23. 위 유언장과 조종섭이 과거 법원에 제출 하였던 자필 진정서의 필체감정을 국과수에 의뢰
0 90. 8. 10. 감정 회시(김형영 실장: 감정 불능 통보)
0 90. 8. 23. 경찰은 기소 의견으로 검찰 송치
0 91. 3. 13. 검찰은 위 두 문서를 대검 과학수사운영과에 감정의뢰: 양자가 동일하다는 감정결과 회시
0 91. 5. 7. 모든 피의사실에 대하여 무혐의 결정(피의

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는 고소인 등의 진술은 모두 추측 진술에 불과한 반면 피의자들의 변소 및 그에 부합하는 참고인들의 진술에는 합리성이 있다는 이유로 무혐의 결정)

0 고소인 항고

* 민사소송 1심(91. 11. 8 선고)에서는 위 유언장의 진정성립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고소인측에 승소 판결.

4 감정경위 및 내용

0 인영 감정

- 고소인측은 유언장에 압날된 날인이 조종섭이 평소 사용하던 날인과 다르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의자 등은 위 도장으로 당좌 개설을 한 사실이 있다고 주장하여 위 유언장의 날인과 당좌 개설 등에 사용된 인장의 날인을 비교 감정
- 국과수 김형영 실장은 위 두 날인이 동일하다고 감정하여 피의자측에 유리한 감정

0 필적 감정

- 고소인은 위 유언장이 위조되었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의자들은 위 유언장이 진정하게 성립된 것이라 주장하므로 유언장 작성자로 되어 있는 조종섭이 이귀덕과의 이혼소송시 법원에 제출한 자필 진정서와 위 유언장의 필적을 대조하여 위 유언장이 위조된 것인지 여부를 감정
- 이에 대하여 김형영은 유언장의 필적은 정상기재된 것이 아닌 변화점이 많은 필적인 반면, 진정서는 일관성이 있는 안정된 필적이라 전제한 뒤 양자간에는 운필 구성, 필획간 연결부분, 종필형태 등에서 유사점을 발견할 수 있는 반면, 필의 순서, 방향, 유연한 운필형태 등에서는 차이점이 발견되어 필적감정 불능이라는 회시
- 대검 과학수사운영과에서는 각 자료의 작성시기에 현격한 차이가 있고 건강상태의 변화 등에 의한 차이점으로 인하여 대체적으로 동일 여부 판단이 어려우나 필의 순서, 방향, 유연한 운필형태에 대한 언급없이 운필의 모양 및 특징, 격이는 각도, 획간의

위치, 글씨의 기울어지는 각도 등을 종합하면 상호 동일인의 필적일 가능성이 높다고 감정(다만 필의 순서, 방향, 유연한 운필형태에 대하여는 적시하지 아니함)

5 국과수 감정이 사건에 미친 영향

0 경찰은 이건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으나, 만약 위 국과수의 감정결과 양 문서의 필적이 동일하다는 결론이 나왔으면 그 결론이 뒤집혔을 것으로 사료되는 점에서 영향을 미쳤다고 사료됨

0 그러나

- 대검의 감정결과도 양 문서상 필적의 동일성 여부 감정이 어려움을 전제한 후 동일한 필적일 가능성이 높다는 추정만을 하고 있는 점
- 검찰의 무혐의 결정에 위 감정결과가 참작되기는 하였지만, 결국 주된 무혐의 이유는 증거 부족인 점에 비추어
- 위 국과수의 감정결과가 사건에 미친 영향은 높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됨

4 대검 과학수사운영과의 재감정 결과

0 인영은 동일인영으로 판단되고

0 필적은 동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사료되나 작성시기의 차이, 기재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점을 고려하면 단정이 어렵다고 재감정

7. 허위감정 유무에 대한 판단

- 0 증뢰자의 증뢰 이유는 조사가 되지 아니하여 알 수 없음
- 0 인영감정 결과는 증뢰자 이귀덕에게 불리하고,
- 0 필적감정은 대검의 감정결과와 달라 허위감정인 여부가 문제되나,
- 0 대검의 원 감정결과나 재감정결과 모두 단정적인 감정이 어렵다고 전제한 후 양자가 일치할 가능성이 높다는 정도의 가능성만을 제시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이건 감정 불능이라는 국과수의 감정이 허위감정이라 단정키 어렵고
- 0 검찰의 무혐의 결정도 이건 대검 감정결과에 의거하여 적극적으로 혐의가 없다는 판단을 한 것이 아

니라, 이건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는 대부분 추측진술이거나 전문진술 등이어서 직접 증거가 되지 아니하여 증거부족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고,

- 0 위 검찰의 무혐의 결정 후 이를 재판 자료로 사용한 법원의 민사소송에서는 오히려 이건 유언장의 진정성립을 부인하여 국과수의 감정결과와 가까운 판단을 하고 있으며,
- 0 국과수 문서감정실에서 감정을 함에 있어 시험은 담당자가 시행하되 그 내용심의에는 모든 직원이 참여하도록 되어 있으며, 실제 이건 감정의 내용심 의시에 김형영 외 다른 직원 3명도 모두 참여하여 이건 감정결과에 아무런 이의 없이 동의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 0 이를 허위감정이라 단정할 수 없음.

(공판기록 3675~3647)

* 검찰 증거 제출(국과수 검증기록 중제 26의 각호) <생략>374)

374) 국과수 검증시 제출된 증거와 동일. 자료집 II책 457~515쪽 참조.

자료 A-27 (동아, 92.3.30. 31.)

3.3) 필적 「주관적 판정 인정」

판사 김대화는 재판장 판사 임대화, 판사 윤석중, 판사 부구욱, 법원 사무관 최인기, 피고인 강기훈, 검사 신상규, 변호사 김창국, 박연철, 이석태, 증인 홍성은에 대해, 증거관계 별지와 같음(검사, 피고인 및 변호인) 증거조사 결과에 대한 의견 물음. 증거조사 신청을 할 수 있음을 고지. 별 의견 없으며 신청할 증거도 없다고 진술. 재판장 변론 속행

재판장 전회 공판심리에 관한 주요 사항의 요지를 공판조서에 의하여 고지. 소송관계인 변경하거나 이의할 점이 없다고 각 진술

재판장 증거관계 별지와 같음(검사, 피고인 및 변호인) 증거조사 결과에 대한 의견 물음. 증거조사 신청을 할 수 있음을 고지. 별 의견 없으며 신청할 증거도 없다고 진술. 재판장 변론 속행

1992. 4. 2. 법원 사무관 최인기 재판장 판사 임대화

자료 다-4-1 (공판기록 3648~3649)

서울고등법원
공판 조서

제 4 회

사 건 92 노401 자살방조 등
재판장 판사 임 대 화
판사 윤 석 중
판사 부 구 옥
법원 사무관 최 인 기
피 고 인 강 기 훈
검 사 신상규, 윤석만
변호인 변호사 김창국, 박연철, 이석태
증 인 홍 성 은

기 일 1992. 4. 2. 14:00
장 소 제 309 호 법정
법정의 공개여부 공 개
고지된 다음 기일 1992. 4. 9. 14:00
출 석
각 출 석
각 출 석
불출석

재판장 전회 공판심리에 관한 주요 사항의 요지를 공판조서에 의하여 고지.
소송관계인 변경하거나 이의할 점이 없다고 각 진술
재판장 증거관계 별지와 같음(검사, 피고인 및 변호인) 증거조사 결과에 대한 의견 물음. 증거조사 신청을 할 수 있음을 고지.
소송관계인 별 의견 없으며 신청할 증거도 없다고 진술.
재판장 변론 속행

1992. 4. 2.
법원 사무관 최인기
재판장 판사 임대화

자료 다-4-2 (공판기록 3650)

재판장님, 변호인단체 드리는 글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 지 모르지만 용기를 내어 몇 자 적어봅니다. 벌써 사건이 일어난지도 1년이 다 되어갑니다. 분신사건이 일어난 후 저회집 식구들이 겪은 불편함과 고충은 차치하더라도 이 사건과 직, 간접적으로 관련된 분들의 고충은 말할 수 없이 크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른 탓인지 저회집은 어느 정도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요사이 성은이의 증인소환장에 관하여 재판

장님과 변호인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 공판 때 이미 법정에 출석하여 모든 사실을 알고 있는 한 충실히 증언하였기에 4월 2일 공판에서 성은이의 증인 신문은 별다른 내용이 없으리라 생각되는 바 증인 출석을 하지 않으려 합니다.
부디 재판장님과 변호인께서는 널리 양지하시어 조속히 사건이 잘 마무리되기를 바랍니다.
성은 어미 드림

* 증인 한원석 증인소환장 <생략>
(공판기록 3651~3653)

국科搜 金실장 출투

부인자살방조 등 전민영사회 에 대한 항소심판에 참가한 의 부장 김홍중씨(92-4-1)가 서울고등법원 2심판결(92노401)에 대하여 1심에서 전 부(재판장인 대)를 증인(88)으로 고소하여 전민영사회 전민영사회(88)에 대하여 고소(88)한 사실이 밝혀졌다.

이날 재판장 김대화는 재판장 판사 임대화, 판사 윤석중, 판사 부구욱, 법원 사무관 최인기, 피고인 강기훈, 검사 신상규, 변호사 김창국, 박연철, 이석태, 증인 홍성은에 대해, 증거관계 별지와 같음(검사, 피고인 및 변호인) 증거조사 결과에 대한 의견 물음. 증거조사 신청을 할 수 있음을 고지. 별 의견 없으며 신청할 증거도 없다고 진술. 재판장 변론 속행